

아프리카 · 중동

6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4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터키(서비스·투자) 뿐 아니라 중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을 잇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인 비관세장벽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건수도 2013년에 1,6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2013년 9월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중 FTA 내에 비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였고,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및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와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등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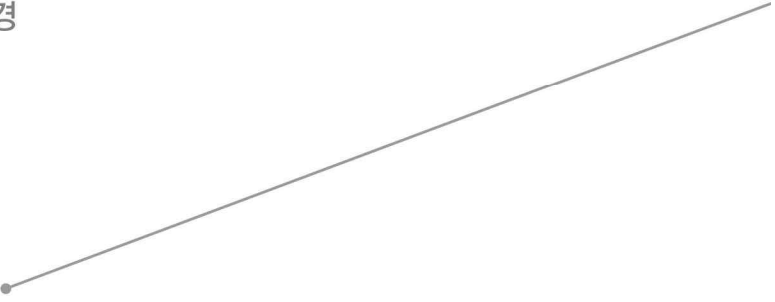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중동



가나	2
나이지리아	24
남아공	54
레바논	73
르완다	105
모로코	122
바레인	141
사우디아라비아	158
수단	189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07
알제리	238
앙골라	267
에티오피아	276
예멘	287
요르단	301
이란	328
이스라엘	352
이집트	375
적도기니	419
카메룬	447
카타르	485
케냐	512
코트디부아르	528
DR콩고	535
쿠웨이트	568
튀니지	592

아프리카·중동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6



가나

가나 경제 구조

GDP 개요

가나의 2013년 GDP는 486.8억불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1년은 가나의 유일한 상업생산 광구인 주빌리 유전의 양산이 시작된 해로, 그에 힘입어 가나 경제가 1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정 집계되었으나, 2012년 들어 주빌리 유전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률이 8.8%로 하향조정되었고, 2013년 들어서는 2012년도에 기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세디화 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2013년도의 1인당 GDP는 1,838불 수준으로 전년도 1,603불보다 상승하였다.(가나 통계청, 2014.4월 발표) 국제 사회는 가나가 2012-13년 동안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하여 앞으로 수년간 6~9% 수준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4.8.6일자 Economist 보도 등)

GDP 구성

가나의 GDP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가나 GDP내 농업 비중이 31.8%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22.0%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2009년 GDP의 19%를 점유했으나, 2013년에는 28.6%로 비중이 상승하였다. GDP의 나머지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송/저장, 공공부문, 무역업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50% 내외(2013년 49.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재정건전성 문제

최근 가나 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통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재정적자의 규모와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에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공공 부문의 임금 지급액수가 대폭 증가하여 2012년 GDP의 12%에 달하는 86.5억 세디의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한 이래, 2013년 가나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10.8%인 95억 세디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입 물량의 감소, 수입물품 가격 하락 및 해외로부터의 재정 지원 감소로 재정수입이 목표인 225억 세디보다 저조한 192억세디를 기록하였고, 공공부문 임금지출, 이자비용 등 지출이 증가하여 당초 목표인 305억 세디보다 증가한 286억 세디를 기록하였다. 높은 재정적자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를 반영, 가나 정부는 2014년 7월 16일 세출기준 32억 세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2014년도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8.8%인 101.3억 세디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목표인 GDP의 8.5%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입 증대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추가경정 세출 증가액 총 32억 세디를 공공부문 임금(2.5억세디), 이자(17.1억 세디), 공공 요금 /유류 보조금(5.7억세디) 등 필수불가결한 지출에 사용할 것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나 정부의 2014년 경제운용 목표 조정>(2014.7.16)

- ◇ 경제성장률 : (기존) 8.0% → (수정) 7.1%
 - * 원유부문 제외시 : (기존) 7.4% → (수정) 6.6%
- ◇ 인플레이션 : (기존) 9.5% ($\pm 2\%$) → (수정) 13.0%($\pm 2\%$)
- ◇ 재정적자 : (기존) GDP의 8.5% → (수정) 8.8%
- ◇ 총외환보유고 : 수입액의 3개월치(기존과 동일)



만성적 무역적자

가나 경제는 수출의 확대를 이끌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보유했다. 대외 경제 통상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원자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수출품인 1차 산품의 수출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가공참치 등 1차 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자본재, 내구 소비재, 음식료품 등이다.

가나의 무역적자는 2010년 29.6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30.5억불, 2012년 42.2억불(수출 135.4억불, 수입 177.6억불), 2013년은 38억불로 소폭 감소하였다.(수출 138억불, 수입 176억불) 2013년도에 무역수지가 개선된 주요인은 가나의 주빌리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생산 증가에 따른 원유수출이 2012년 30억불에서 2013년 39억불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고 감소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3년말 56억불(수입액의 2.6개월분)을 기록한 이후, 2014.3월말 47억불, 2014.6월말 44.7억불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수입액의 2.5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나 정부의 목표인 수입액의 3개월분 확보에 못 미치며, IMF가 가나 경제에 권고하고 있는 수입액의 4개월분 확보 목표에도 미달하여 가나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2014년도 들어 가나 세디화의 급속한 약세를 촉발하여, 2014.1월초부터 9월까지 가나 세디화가 26.9% 평가절하되었다.

IMF 정책협의 개시

대내외 신인도 제고,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개혁을 목표로 표방하며,

8월 1일 Mahama 가나 대통령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IMF 및 기타 개발협력 파트너와 경제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할 것을 선언하였다. IMF는 2014년 4월에도 이미 가나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권고를 발표하며 가나 정부에 대해 재정 및 통화정책 개혁을 권고한 바 있으며(IMF, 2014.4.21),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가나에 IMF팀이 방문하여 가나 정부, 민간 부문, 원조 공여국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과 IMF 지원프로그램을 협의하였다. IMF 지원 프로그램이 확정될 경우 2015년도 가나 예산안에 반영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이며,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가나에 대한 통상환경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디화 하락세 진정

가나 정부가 8월 1일 IMF와의 정책협의 개시방침을 발표한 이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연이어 표명하고, 9월 11일에는 10억불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한편, 2014/15년도 코코아 원두 수출물에 대한 17억불의 코코아 구매 자금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급속한 평가절하를 기록했던 세디화 환율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중순 시중 환전소에서 달러당 한때 3.8 이상으로 거래되던 세디화가 10월초 달러당 3.1 수준으로 거래되면서 가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가나는 WTO(세계무역기구)와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다른 ECOWAS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가나는 관세율을 0%(서적, 의약품 등 사회적 재화), 5%(원자재), 10%(중간재), 20%(완제품) 등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13개 석유 관련 제품의 수



입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관세청(CEPS: Customs, Excise and Preventive Service) 웹사이트(www.graghan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COWAS는 2015년부터 ECOWAS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발효하고 2020년까지 통화동맹(Monetary Union)을 달성하는 한편, ECOWAS 회원국민에게 역내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폐지하고 생체인증 카드(Biometric Identity Card)를 도입하는 등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COWAS 45차 정상회의(가나 아크라 개최, 2014.7.10) 아울러, ECOWAS 44차 정상회의(코트디부아르 개최, 2014.3.28-29)시 일부 회원국의 이견으로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던 EU와의 경제파트너 협정(EPA)에 대해 45차 정상회의시 회원국간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원국별로 서명/발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ECOWAS-EU 경제파트너 협정(EPA)이 발효될 경우, 역외국인 우리 기업의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가나는 상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건강보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수입품,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VAT)는 15.0%, 건강보험세는 2.5%가 부과된다. 가나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정책에 따라 기존에 12.5%였던 부가가치세가 2014년부터 15.0%로 2.5% 포인트 인상되었다. 아울러, 수입업체는 비-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과금(FOB+VAT 금액의 0.5%), 관세망(GCNet) 운영에 따른 부과금(FOB+VAT 금액의 0.4%), 비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개발투자펀드 부과금(FOB+VAT 금액의 0.5%) 등도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1%의 통관비가 부과된다.

■ <참고> 세금, 부과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5 10 20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VAT	15.0	CIF + Import Duty
NHIL	2.5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	CIF
EDIF	0.5	CIF
Processing fee	1	CIF
Examination fee (Used Vehicles)	1	CIF
Import Excise	25	CIF + Import Duty + VAT
Environmental Tax	20	CIF
GCNet Charge	0.4	FOB
Destination Inspection Fee	1	CIF
Witholding Tax (DTRD)	1	CIF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의 1%이다. 현재 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도착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은 수입업체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몰트 음료, 물, 맥주, 담배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5~14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산정·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체가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 팬티, 매트리스,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gold coin), 미가공 다이아몬드, 통신 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를 수입하려면 통신위원회(NCA: National Communication Authority)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나는 수산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가나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중 1~2월에 일정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원(GSB: Ghana Standard Board)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B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GSB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FDB: Food and Drugs Board)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300,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GHC 1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B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labelling 되어야 한다. labelling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품목별 장벽

2014년도 7월까지 對가나 수출액은 130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40% 급감하였으며, 수입액은 19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11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동기간중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19.1백만불), 합성수지(14.6백만불), 화물자동차(16.2백만불), 정밀화학원료(10.9백만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견과류(7.1백만불), 폐건전지(4.1백만불), 연괴 및 스크랩(3.1백만불), 동괴 및 스크랩(2.2백만불)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CIF 금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들어 가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 조세 또는 준조세성 부과금을 도입하여, 2014년말까지 은행(지방은행 제외),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회사, 맥주 제조 회사 등 5개 부문의 기업의 세전 이익에 5%의 재정안정 부과금(fiscal stabilization levy)이 부과된다.

그동안 소비자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되어 왔던 핸드폰, 무선통신기기에 2013년 9월부터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선외 모터(outboard motor), 어망, 농기계(트랙터 등), 착유기(diary and milking machine) 등 기계류, 제분기 에너지 절약 전구 등 수입시 1%의 특별 수입부과금(special import levy)이 부과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가나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경쟁 입찰, 이단계 입찰, 제한 입찰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5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www.ppaghana.org에 게재하고 있다.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무역, 공기업 관련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자격을 가진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금 수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산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도 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



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청(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 회사(CMC)는 아직까지 Cocoa Bean의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e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상표의 등록료는 150달러이다. 특허 신청 및 유지비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25인 이상 고용업체의 특허 신청비용은 GHC 10이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가나에는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4.8월말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2,953만명으로 가나 인구 2,657만명 대비 약 111.16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가나 통신청). MTN의 사용자가 약 1,354만명으로 45.86%의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Vodafone(약 669만명), Tigo(약 402만명), Airtel(약 376만명), Glo(약 140만명), Expresso(약 12만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65%, 13.6%,

12.7%, 4.7%, 0.4%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 광케이블 건설 등 IT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2004년 GIFTEL (Ghana Investment Fund for Telecom)을 설립하였다. GIFTEL은 지역 정보센터 설치·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GIFTEL은 매년 통신사업자의 순익 1%를 출연 받고 있다. 영국, 나이지리아, 가나를 연결하는 2.5 테라바이트급 해저광케이블이 2010년말 설치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카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에서 편지, 100g 미만의 소 규모 소포 등 일반 우편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며 나머지 택배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분야에 진출해 있다.

운송서비스(Transport Services)

가나는 52,100km의 지선도로, 12,600km의 도시 도로, 13,367km의 간선 도로 등 총 78,067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가나의 모든 주요 지역 및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

가나의 철도는 총연장 1,006km로 보크사이트, 망간, 코코아 등 수출품목을 운반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아크라, 쿠마시, 타코라디를 협궤



철도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행중인 구간은 서부지역 340km, 동부지역 329.5km, ECOWAS 구간 336.8km뿐이다.

가나정부는 철도를 1,771km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으며 이는 약 7,740백만불 규모이다. 또한, 서부 및 동부 철도 재건공사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4,530백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나정부는 Tema항과 Takoradi항을 서부아프리카의 관문 상업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테마항과 타코라디항은 가나 수출입 물량의 85%를 처리하고 있는데(테마 48%, 타코라디 37%) 최근 내륙국인 말리, 부르키나 파소 등으로 오고가는 통관화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12월부터 주빌레 유전의 석유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유 운송을 담당할 신항만 건설도 논의되고 있다. 신항만 건설은 아직 구체적 입지, 투자규모, 참여기업 등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나 정부는 신항만 건설을 장기적 과제로 모색하되, 일단 가나 해운물동량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Tema항을 향후 10년간 총공사비 25억불 수준의 공사를 통해 5단계에 걸쳐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관광업은 금, 코코아, 원유, 해외거주자 송금에 이어 다섯 번째 외화수입원이다.

가나 관광청은 2012년에 해외관광객 수가 126만명으로 총 25억불의 외화수입을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동기간 동안 국내 관광객은 약 80만명으로 집계되었다.(2013.11.11, 가나 관광청) 가나 전역에 걸쳐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은 총 2,000여개로 추정되며, 관광부문에 약 38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해변, 축제, 성곽(castle)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 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성~5성급 호텔은 설립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타 서비스: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매년 5만호 이상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그동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왔다. 가나 경제가 매년 6~7%대로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2.5% 포인트)에 따른 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4년초 가나 인프라 펀드(Ghana Infrastructure Fund)를 설치하여, 전략적 인프라 확충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나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 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가나투자진흥센터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가나투자진흥센터(GIPC)에서 담당한다.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가나 정부는 2013년들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며, 기존의 GIPC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5만불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그 금액이 50만불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기존에 1만불 이상 투자하면 진출이 가능했으나, 개정시행된 GIPC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20만불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하다. 유통업에서 조인트 벤처시 외국인은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추후 가나인의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수출업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절차 (법인·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등록청(Registrar General Department)에 회사설립 신고 2)투자진흥센터(GIPC)에 투자승인요청 3)이민국에 이민쿼터 신청(GIPC가 대행) 4)국세청(IRS) 및 VAT사무국 등 세제당

국 신고 5)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은행 등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걸리는 행정 시간은 2~3개월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GIPC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투자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나 가나의 비주력 수출상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업종에 따라 세금 면제(tax holiday)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최대 18년까지 가능하다.

■ 법인세 감액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25%
가나의 비주력 상품 수출업체	8%
호텔	22%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20%

■ 법인세 면제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5년
농촌은행(Rural Bank)	8%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영구 면제
- 소 방목	10년
- 유실수 재배(커피, 팜 오일 등)	10년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5년
- 수산양식업, 가금류	5년
농가공(Agro-processing)	5년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7년
자유무역지대 기업	10년 + 알파(최대 8년)

■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tax rebate)	
- Accra/Tema	없음
- Accra/Tema를 제외한 지역 수도	25%
- 기타 지역	50%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20%
- 북부 3개 지역	0%
- 지역 수도(북부 3개 지역 수도 제외)	10%
- 기타 지역	0%

아울러 가나정부는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Accra, Tema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tax rebate)해주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불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불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이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가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된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족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족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



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외환거래를 규제하여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화 계정에서의 현금 인출 가능 금액을 여행용에 한해 1,000불로 제한하는 등 인위적 규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들어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GHIC 대출이자율이 25~30%에 이르고, 달러 대출이자율도 15% 내외여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실익이 매우 낮다.

세계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 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러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가나 국세청(IRS)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IRS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 당국은 징세 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NCA)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은 석유위원회(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2008년 국제 유가가 폭등하였는데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석유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등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영 테마정유회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2013.2월에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 추세,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석유제품 가격을 15~50% 인상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가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가나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10,000~1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0,000~5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2명, 500,0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투자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 받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가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온 경우 가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에서 규제하고 있다. 현재 26개 시중은행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나이지리아계 6개를 포함하여 13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60백만GHC이다. 외국은행이 가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5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실적 등이 지점 설립 허가 시 고려된다. 은행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2014.9월 현재 가나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9%이며, 국채 수익률은 21~24%,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25~27% 수준이다.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25개 보험사, 37개 브로커사, 2개 재보험사가 활동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시장(Ghana Stock Exchange)을 개장하여 주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하고 있다.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어, 현재 37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21개 증권회사가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11.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50억 가나 세디 수준이다.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Ghana Alternative Market)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Ecobank, GT(Guarantee Trust) Bank, GCBGhana Commercial Bank)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사용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며, 선불카드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금인출기(ATM)은 2013년부터는 VISA Electron 카드도 사용 가능해 진데 이어, 2014년부터는 가나의 17개 은행이 공통전산망을 연결되어 ATM 기기를 통해 은행간 현금인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동화기기의 고장이 잦고, 현금 위주의 현지 거래관행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나이지리아는 니제르델타 치안회복으로 인한 오일 증산(2013년 일산 232만배럴)과 통신, 무역, 은행, 농업, 서비스 부문 등 비오일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평균 7.2%의 빠른 GDP성장률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6.5%(정부 예산서상 목표치는 6.75%)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GDP도 금년 4월 재산정(Re-basing)된 규모는 5,099억불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13년도 GDP인 3,843억불을 넘어 아프리카 1위이자, 세계 26위(종래 36위)를 기록했다. GDP재산정에 의해 커진 경제규모에 대해서는 단순 숫자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커진 경제규모 및 위상에 따라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간 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정부지출 증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간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으나, 이자율 인상 등 강력한 긴축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식료품값의 안정 등으로 2013년에는 8.2%의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했다.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외환보유고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나이지리아는 금년에도 작년과 유사한 경제성장과 한자리수 물가상승률(6~7%)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딘 세계경제 회복 및 불확실성, 유동적인 유가, 끊이지 않는

오일생산 과정의 누수, 북부지역의 혼란(보코하람) 및 치안문제, 거버넌스의 부재, 만연한 부정부패, 복잡한 통관절차 및 과도한 현지화 요구, 줄지 않는 실업 및 빈곤 등은 경제발전을 위해 잘 관리해야 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 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Sur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지불한다.

(1) 수입관세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 Service)은 2008.8.26일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Category 0(관세율 0%):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기초 원자재
- Category 2(관세율 10%):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Category 4(관세율 35%):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관세 이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국내 세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관세의 7%
-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유무역기구 부담금(ETLS): 관세의 0.5%
- 부가가치세(VAT): 관세의 5%
- 선적 및 검역비: FOB의 1%

특히 금년 7.1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물품(부품)별 구체적인 관세는 아래와 같다.

- 완성 승용차 : 70%(duty 35%, levy 35%)
- 완성 상용차 : 35%(duty만 적용)
- 완성 트랙터 : 0%
- 완성 그린카 : 35%(duty만 적용)
- CKD(Completely Knock-Down) 부품 수입 : 0%
- SKD(Semi Knock-Down) I 부품 수입 : 5%
- SKD(Semi Knock-Down) II 부품 수입 : 10%
- 현지 조립 설비 장비 : 0%
- 타이어 수입 : 25%(duty 20%, VAT 5%)
- 타이어 생산 기계·장비 수입 : 0%

(2) 관세장벽 문제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전체 정부수입의 9%)이라 할 수 있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

려는 목적이 강하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밑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valuation)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최대 45일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2013.4.9에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www.nigeriatradehub.gov.ng)라는 포털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는데, 2014.10월 현재 공시되어 있는 24개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 품목

1.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3. 새의 알(계란 등)
4.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 * 아마인유, 아주까리기름, 올리브유는 제외. 식물성 기름 조유(Crude vegetable oil)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코코아(코코아 버터, 분말, 케이크 등)
6. 스파게티, 라면
7. 과일주스(소매포장)
8. 물(생수, 소다수 등), 맥주
 -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9. 포대 시멘트
10.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5개 품목)
11. 폐 의약품
12. 비누 및 세제
13. 모기향
14. 플라스틱 위생용기
 - * 아기용 젖병(baby feeding bottles)은 제외
15. 재생 및 중고 타이어
 -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는 제외
16.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7.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8.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19.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 석유산업, 병원, 소방,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
20.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1. 중고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22.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23.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닛 등은 제외)
24. 볼펜

나이지리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13.10월과 비교하여 카사바와 이쑤시개가 수입 금지품목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총 24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금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예정).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 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전력·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1.31일부터는 이 부문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현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수입 금지품목 지정 및 해제동향과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관련설비 및 원



재료의 수입정책을 유심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수출금지 품목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지정한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양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

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1.1일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9.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 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향평가상의 제약은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 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영석유공사(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 되어 왔다.

그러나 1999.5.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에 관련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거지가 없을 경우 시장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엄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2010.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현지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장비·설비·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산화감시위원회(NCDMB, Nigeria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목표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80%
- ※ 100% 국산화 분야: 강철 합판, 파이프라인, 각종 쓰레기 처리, 운송 서비스, 뱅킹·보험 서비스, 크레인, 감사 서비스, 지질·해양 탐사 등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감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시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지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EU와 미국은 2010년 Local Content Act 제정 후 동법에서 요구하는 국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책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측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재 답변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리,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진흥원(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을 주재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주재국내에서 Local Content 정책은 건설, 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현지화정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법(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어 법적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송강령(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부문의 제한

오일가스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9월 ‘외국인 투자진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자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기간산업 분야도 최근에야 석유화학, 철강, 비료공단을 준공할 정도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외국인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공해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자원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 분야
-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농업, 수자원, 광물, 제조업, 석유·가스, 무역 및 관광 등 7개 중점투자 유망부문을 선정하였는데 거의 전 산업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참고로

현지 각 주정부나 기업인들이 우리와의 합작 요청시 이들의 합작 희망 형태는 대부분이 한국의 설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 농업: 농작물 경작, 가공·처리, 보관, 버터·치즈·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생산, 밀가루 생산
- 수산업: 대규모 내륙 수산업, 해산물, 새우, 어육업
- 광물업: 납·아연·철광석 채굴
- 제조업: 자국광물을 이용한 철강·석회·대리석·세라믹·시멘트 생산, 비철금속 용융정제·합금, 비료·석유화학, IT, 항공부품, 태양광발전, 의약품, 비타민, 모기장, 광산·유정 굴착제품(Baryte, 벤토나이트)

나이지리아 주(States)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나이지리아는 연방공화국으로서 모두 37개의 주(36개주+수도 FCT)가 있다.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89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47위로, 특히 재산권등록과 전력수급(185위), 세금납부(170위), 통관절차(158위), 건설 인허가(151위), 채권회수(136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순위

분류	순위	분류	순위
창업	122	투자자 보호	68
건설인허가	151	세금납부	170
전력수급	185	통관절차	158
재산권 등록	185	채권회수	136
자금조달	13	채무변제	107

4개 분야(사업시작, 건설인허가, 재산등록, 채권회수)별로 평가한 주별 순위는 Katsina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Abia주가 가장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수도인 FCT(Abuja)는 11위, 경제수도인 Lagos주는 31위로 나타났다.



< 참고 : 나이지리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 NIPC 홈페이지 >

- 풍부한 천연자원 : 오일가스, 미네랄, 인적자원 등
- 거대한 시장 : 인구 1억7천만명, 증가하는 중산층
- 정치적 안정 : 민간 정부 탄생 및 평화적 정권이양
- 자유 시장경제 : 시장경제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
- 건실한 사적 영역 : 역동적 사적 영역 보유
- 자유로운 투자 : 국제금융의 자유로운 투자분위기 조성
- 투자 인센티브 :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 급성장하는 금융 : 은행, 금융 제도 정비, 용이한 금융접근성
- 풍부한 인력 : 풍부한 숙련공 및 아프리카에서 가장 싼 임금
- 인프라 : 급성장하고 있는 교통, 통신, 전력, 용수 공급 등

※ 상세내용: www.nipc.gov.ng 참조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30%(오일분야 제외), 처음 5년간은 20% 적용하며, 교육세 2%를 별도로 적용
- 연간자본공제(건물 10%, 플랜트 10%, 가구 10%, 플랜테이션 장비 33%)와 초기년도 자본공제(대중교통자동차 30%, 자동차 · R&D 25%, 플랜트 · 주택 20%, 공장 건물 15%) 혜택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사업초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71개 산업분야에 대해 지정, 투자자는 7년간 세금을 면제
- R&D 투자비용은 120%까지 세금공제(단, 세금공제 R&D투자비용은 총소득의 10%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Free Trade Zone)에 투자하는 경우 구역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
- 오일 가스 자유구역은 개인소득세, 자본금 및 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 보장,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 검열 금지 등 인센티브

- 노동집약적 생산을 위해 1000명 이상 고용하면 15%, 200명이상 고용하면 7%, 100명이상 고용하면 6%의 세금 면제
- 현지 원재료를 최소한도(농업 70%, 엔지니어링 60%, 화학 60%, 석유화학 70%) 이상 사용하는 경우 5년 동안 20%의 세액공제
- 기반시설(접근도로, 전기, 상수도)이 없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20% 투자세액 공제
- 투자인센티브
 - 유자격자를 통한 자유환율(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무제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이익과 배당금 수익의 송금을 보장 받음
 - ※ 유자격자를 통해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 환전 후 48시간 이내에 자본수입증명서(CCI, 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를 발급하도록 함
 - 기업은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음(단, 국가의 이익, 공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
 -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산업부문 인센티브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6,000달러) 이하인 제조업의 경우 운영 시작 후 5년간 최저 세액인 20% 부과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6,000달러) 이하인 제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운영시작 후 5년간 세금면제
 - 석유화학 및 LNG 공장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면제
- 광물부문 인센티브
 - 3~5년간의 세금 면제
 - 법인소득세 20~30% 수준 부과
 - 투자금액과 프로젝트의 전략적 성격에 따라 로열티 부과 연기
 - 광업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 75% 및 2차년도 50%, 투자공제 5% 인정



- 석유부문 인센티브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와 합작회사 설립 또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 기업에 각 사업별(육상광구 5%, 해상 10m 10%, 해상 100-200m 15%, 해상 200m 이상 20%) 세액공제 인센티브
- 가스부문 인센티브
 - 사업초기 4년간 연간 자본공제 20%
 -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5%
 - 육상광구 7%, 해상광구 5%의 로열티
-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 농업부문 인센티브
 - 농업관련 플랜트 및 설비는 50%까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허용
 - 농산물 처리업은 선도사업으로 5년간 세금면제
 - 모든 농업시설, 농기계는 관세 1% 부과
- 전기부문 인센티브
 - 변압기, 계량기, 케이블 등 전력설비투자자는 선도사업으로 인정되며 5~7년간 세금면제
-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

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국산화 및 수출의무 부과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이외의 경우 특기사항 없다.

※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Local Content Act 2010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 강제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3.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 2.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3.10월 현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한, 루마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대만, 중국 및 자메이카 등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투자진흥위원회(NIPC)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윈스탑 투자센터(OSIC)

를 설치하여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선언하고 활동하고 있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78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끔 주정부에서 25년간의 점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점유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고스 주의 경우 3년 이하의 토지 점유의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으나, 점유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다.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 구좌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환율은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되며 암시장이 존재하지만 암시장과 공개시장의 환율차이는 크지 않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해 부가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세청의 대기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1.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관행은 볼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
(우리나라와는 2006.11.6.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3 국회비준을 완료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현재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동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사항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1) 나이지리아 시중은행 21개로 통폐합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말까지 84개가 난립하던 은행을 25개의 대형은행으로 통합하고 14개 은행을 퇴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나이지리아 외환 블랙마켓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와 상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불법 외환시장인 블랙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블랙마켓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 세계금융위기와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각



지대로 인식돼 왔던 나이지리아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상대적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 자본의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하며 미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과 나이지리아 금융기관 간 거래 규모도 매우 미미하여 금융위기로부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8.11월 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2009.9.18일 기준 이자율을 10.25%에서 9.75%로 인하하는 한편, 최소 유동성 비율과 현금 보유율도 각각 40%에서 30%, 4%에서 2%로 낮추는 등 85억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2010년 들어서도 기준이자율을 6%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나이라 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12%까지 높인 바 있다. 이를 통해 2013년 8.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한자리수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당분간 12%의 기준 이자율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이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7.1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은행

들이 온라인·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बैं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International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One-Stop-Shop Investment Center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후진적인 행정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동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2천5백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강력한 경제팀 구성, 각종 개혁정책 추진

조나단 대통령은 2011.4월 당선이후 초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Ngozi Okonzo-Iwala 세계은행 사무총장을 재무부장관 겸 경제조정장관으로 스카웃하였고, Ngozi 장관을 수장으로 한 경제팀은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부펀드조성, 석유보조금 철폐 등의 각종 개혁조치를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국부펀드는 지방주지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낭비되는 단점이 있는 기존의 잉여원유계정을 대체하는 연방정부 주도 펀드로 국제유가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책정한 기준유가보다 높게 형성된 부문만큼의 오일 수입을 별도의 펀드로 적립하여 연방정부가 목표로 하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 예치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달성에 활용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정유시설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원유를 수출하는 대신 값 비싼 정유를 수입하는 실정으로 수입 정유에는 국가가 석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총액은 2011년 90억불에 달했던 것이 2013년 기준으로 52억달러에 달하며 정부예산 총액의 1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보조금을 철폐하여 이를 사회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당장의 물가상승, 서민부담 과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히 실패하였다.

2012.1월초 조나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석유보조금을 철폐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노조의 전국적인 총파업사태에 직면,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보조금을 낮추는 수준에서 갈등사태를 마무리 하였다.

향후에도 조나단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노조와 지방주지사 등 기득권 세력들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들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조나단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Transformation Agenda)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의 자국화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자유치노력도 병행

2010.4.22.일 발효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은 현지 인력의 채용 및 교육, 현지 원자재의 활용 등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산업법안(PIB, Petroleum Industry Bill)은 기존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재검토, 비용에 대한 감시 강화, 세율 및 로열티 인상 등 외국인 투자자의 미래투자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 PIB 법안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수년간 국회처리가 지연되어 온 바, 2012.7월에는 행정부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조정한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상·하원 모두 2회독을 완료하고 각기 지방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내년 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최종입법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 PIB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가. NNPC 기능 변화

- NNPC는 정부 대행기능에서 순수한 NOC의 모습으로 대체
- 독자적으로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운용, 타 석유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로열티와 세금을 납부
- 3년 이내에 나이지리아 시장(NSE) 개방
- National Petroleum Asset Management Corporation(NPAMC)가 상류사업의 정부투자를 관장, 현재 NAPIMS 기능과 유사함, 석유장관이 Chairman 역할을 함

나. 주요 조직 및 기능

- 석유부 : 석유산업 총괄, 석유 관련기관 지도감독
- 국영석유자산관리회사(NPAMC) : 상류부문 투자
- 국영석유회사(NOC) : 법인 JV 등 기존 NNPC 오일 자산 관리



- 국영가스회사(NGC) : 법인 JV 등 NNPC 가스 자산 관리

다. 광권부여 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각 라이선스의 권한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대통령의 광권 부여를 인정함

라. 주요 Fiscal term(오일기준)

- 체세금 : 심해의 경우 NHT 25%, CIT 30%로 총 55%(기존 PPT 50%)
- Royalty, fee, rental등을 석유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모든 석유산업 법인은 순수익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신설(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가 2005.8월 분양받은 해상광구 탐사권을 일방적으로 무효화(2009.1.9)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에 따른 신뢰를 보장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자원을 이용하여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와 병행하여 조나단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초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내걸고 제조업 활성화, 전력부문 개혁,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수산업 및 광물부문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확충 위해 전력구조개편 추진

나이지리아의 전력사정은 심각한 상황으로 제조업의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전력시설용량은 6,000MW이나 실제 전력생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취임한 아라두아 대통령은 전력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9년 말까지 전력생산 6,000MW를 약속한 바 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0.5월 대통령 지위를 승계한 조나단 대통령도 2010.8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40,000MW의 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오일메이저 등을 통한 독립발전소(IPP)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의 관료화되고 부패한 국영전력공사(PHCN)로는 전력부문 개혁조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력한 민영화 시책을 추진하여 5개의 발전소와 10개의 배전회사를 민간기업에 매각 완료하고 2013.9.30일 조나단 대통령이 직접 동 전력시설 주식증서를 민간기업에 공식 인도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PHCN으로부터 독립하여 건설한 10개의 NIPP(National Independent Power Project) 발전소의 민영화도 금년 6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7개 발전소에 대해 금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는 주식매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남아공

통상환경 개관

남아공은 199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 동참 및 각종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은 경제 대국으로, 2013년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3,506억 달러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GDP의 약 21.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남아공 대세계 교역 개요

WTO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남아공은 대세계 수출 959.4억달러, 대세계 수입 1,263.5억달러를 기록하여 약 30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남아공 통상산업부에서 집계한 2013년도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보츠와나 및 독일이며, 총 수출액 대비 대중국 수출 12.6%, 미국 7.2%, 일본 5.8%, 보츠와나 4.8%, 독일 4.5%를 차지하였다.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국가는 중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및 인도 순서이며, 총 수입액 대비 대중국 수입 15.5%, 독일 10.4%, 사우디아라비아 7.8%, 미국 6.3%, 인도 5.2%를 차지하여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편, 남아공의 교역 개방정도(GDP대비 상품·서비스 수출입 비중)는 2008년 75.4%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래 점차 감소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남아공 교역 개방정도(%)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
56.5	62.4	53.8	53.4	55.2	62.2	65.8	75.4	56.3	55.0	58.2	58.8	61.9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자원으로, 2013년 대세계 수출 상위 5위 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백금, 철광, 가공하지 않은 금, 석탄 및 합금철이 차지하였으며, 수출 상위 5대 품목이 총 수출액의 34.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한편, 2013년 남아공의 대세계 주요 수입품은 석유(원유, 정제유),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로, 상위 5대 수입품목이 총 수입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한-남아공 교역관계

2013년도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수출은 27억달러, 수입은 17.3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약 10억불 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휴대전화 등을 남아공에 주로 수출했으며, 남아공으로부터 광물(철광, 백금, 동, 알루미늄)을 주로 수입했다(무역협회 통계).

양국간 교역규모는 외교관계가 수립된 1992년 8.4억달러에서 2013년 44.3억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양국 수교 21년만에 한국은 남아공의 교역대상 아시아지역 국가중 네 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고 남아공은 한국의 교역대상 아프리카 국가중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남아공의 다자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카인 그룹(African Group)의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국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통화지역(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토 및 스와질랜드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랜드(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된다.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의 특혜무역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하여, 2012년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86%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남아공-EU간 TDCA는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명시된 SACU 회원국간의 역외공동관세 적용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남아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EU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목표로 SADC 일부회원국과 EU간 협상중이던 경제동반자 협정(EPA)에 2007년부터 합류, SADC 일부회원국(SACU 5개 회원국 및 모잠비크)과 EU간 EPA 협상이 2014.7월 타결되었다. EU와의 EPA 협상 타결로, 남아공은 기존의 TDCA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에 대한 시장접근,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남아공이 속해있는 SACU는 EFTA와의 FTA를 2008년에 발효하였으며, Mercosur와의 특혜무역협정(PTA)을 2009년 서명하였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SADC-동아프리카공동체(EAC)-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3자 자유무역협정

(T-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아공은 SACU-인도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중이나, SADC-EAC-COMESA FTA 에 비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제도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994년 민주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12년 7.4%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 비중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38.5%, 비농산물 수입액의 73.3%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 남아공 관세율 현황

품 목	평균 양허관세율	평균 실행관세율
농산물	39.6%	8.4%
비농산물	15.8%	7.4%
전체	19.0%	7.6%

주: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관세)은 2012년 기준
자료원: WTO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 2013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13.3월 남아공 양계협회는 저가의 수입 닭고기 급증에 따른 국내 양계업계의 재정난을 근거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일부 닭고기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건의하였다. 이후 국제무역행정위원회와 통상산업부가 양계업계의 건의를 검토, 냉동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 총 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WTO 양허세율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2013.9월부터 냉동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 총 5개 품목의 관세가 최대 82%까지 인상된 사례가 있다.

한편,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기존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수입자, 나머지 10%는 흑인경제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요건 해당 종사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수입규제 및 금지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도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통관분류 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이며, 구체적인 품목리스트는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규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 남아공 수입규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중고품(전자제품 의류기기, 항공기)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방사성 화학물질	국민보건
신품 압축타이어	안전기준
총기/무기	국민안전
사행성 도박기기	사회적 질서 유지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UN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 국세청 홈페이지(www.sars.gov.za)는 항공 화물통관은 약 1일, 해운 화물통관은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 지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세관은 수입 화물이 남아공 표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반출대기 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특정 공정,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이나, 수출용으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며, 산업개발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 유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남아공에 수입되는 물품중 SAC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보세구역이나 세관통제구역에서 사용될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세관수입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 직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불필요한 전수검사, 과도한 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관세법의 의하면 남아공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WTO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식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4년 상반기 기준, 남아공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에 대한 반덤핑관세 19.7%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중 폴리에틸렌 수지용기를 포함한 총 3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또는 반덤핑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4.2월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종료되었고, 2014.4월에는 연선,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이 종료되었다.

■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반덤핑	'00.4 (조사개시)	'11.3.4 (일몰제심)	화학	- 반덤핑관세율: 19.7% - 5년간 관세부과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2014.6월 WTO에 통보된 남아공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중국(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의 순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 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 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제기관 홈페이지(www.nrsc.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위생·검역

농축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벨링,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2014.2월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대상 품목에 대한 규제는 2015.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남아공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남아공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로,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 자동차는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 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관세환급 등의 관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자동차산업개발계획은 2013년부터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되었다. 자동차 생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특혜관세 적용, ②자동차 조립시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무관세 혜택, ③생산장려정책 및 ④자동차 분야 활발한 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아공산 제품 사용비율 및 생산장려정책 등의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남아공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년까지 시행된 MIDP 보다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식재산권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에서 명시하는 보호대상 지식재산의



범주는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에 의해 2013년 서명된 지식재산권 개정법은 전통지식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은 통상산업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등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식재산 소유자 대다수의 경우는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모조품과 해적판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등으로 적발된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참고로,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에만 가입하고 있고, WCT 및 WPPT에 대해서는 서명만 한 상태이다.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이 독점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공 통신부는 3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공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 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으로 분류된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흑인경제육성정책(BEE: Black Economy Empowerment) 위원회를 1998년 발족시켰다.

흑인경제육성위원회의 2년여 간의 연구조사 결과 끝에,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BBBEE: Broad- 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2004.1월 공표되었고, BBBEE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모범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이 2007. 2월 발효되어, 총 7개 요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였다.

※ 7개 요건 : 소유권, 경영권, 고용평등, 기술발전, 조달의 특혜, 기업개발, 사회경제발전

이후, 남아공내 기업의 흑인경제 육성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한층 강화시킨 BB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이 2013.10월 발표되어, 2015.5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BB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총 5개 요건에 배점을 부여하며, 각 요건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배점
흑인의 지분소유권	25
경영권(기존의 고용평등 포함)	15
기술발전	20
기업 및 공급자 개발(기존의 조달의 특혜 포함)	40
사회·경제적 발전	5
총점	105

개정된 BBBEE 모범실천규약은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기본 3개 요소, 즉, 흑인의 지분소유권, 기술향상, 기업 및 공급자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우선 달성 3개 요소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소규모 기업(연매출 1,000만~5,000만 랜드)은 흑인의 지분소유권을 의무적으로, 기술향상과 기업 및 공급자 개발 가운데 1개 요소를 선택하여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조정되며, 소규모 기업은 한 단계 하향조정되는바, 정부조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 있어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

부조달시장 참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BBBEE 점수표에 따라 흑인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남아공은 2000년도에 정부입찰법을 제정해 정부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 법은 200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제정된 BBBEE의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흑인기업에 대해 더욱 많은 특혜가 부여되는 반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정부입찰법에 따르면 1백만랜드 이하의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의 20%는 반드시 BBBEE 관련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1백만랜드를 초과하는 입찰의 경우 10%가 BBBEE관련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1996년에 제정된 국가산업참여프로그램에 따라 남아공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천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물량의 3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남아공 국내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이 아니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BEE는 민간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가 없으나,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게 BBBEE는 필수 고려조건이 되었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 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2015.5월부터 전면 적용될 BB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흑인의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BBBEE는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남아공 시장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BBBEE는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아공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으며,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후 송금이 가능하다.

개인은 총액 75만 랜드를 초과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남아공 중앙은

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는 20억 랜드,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10억 랜드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다. 다만,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 자회사의 이익 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Commercial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해야 한다.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중앙은행(SARB)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영기술 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경쟁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시 축구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 15개사의 담합 사례에 대해 총 146억 랜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환경 정책

국립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까지 남아공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매년 6억 랜드 규모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6년에 도입한다고 2014.2월 발표하였다.

전자상거래정책

남아공 전자통신거래법이 전자상거래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에 대한 정부 승인 요구, 기업에 대해 “-.za”로 끝나는 인터넷 도메인 할당시 정부 규제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많은 내용을 약관으로 표기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사항이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이 2013.11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징역(범칙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범칙금)으로 처벌한다.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통상산업부 산하 국가브랜드 위원회(Brand SA)가 2014.4월 발표한 투자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의 남아공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3대 요인으로 높은 범죄율, 정부부패 및 불안한 치안이 지목된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대다수의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경험 미숙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건설 인허가 절차

남아공내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상이한 건축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인허가 취득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여,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정 이민법

2014.5월 공포된 남아공 개정 이민법은 남아공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인의 비자 발급이 기존에 비해 엄격해졌으며, 개정 이민법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민법은 비자 신청인이 남아공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전환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였으나 주재원 비자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이민법에는 없었던 내용인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파견회사 본사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가 의무 요건이 되었다.

한편, 비즈니스 비자는 통상산업부의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통상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 분야가 남아공에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비즈니스 비자발급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선택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통상산업부에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후 그 결과를 남아공 이민국에 통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며, 이는 남아공 투자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바논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10,452km²)에 약 4백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거리적 이격감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미터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15백만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2013년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다. 2014년도에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공공부채, 인플레이 등 불안요소 감안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7.1월 개최된 Paris III원조국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76억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레바논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개혁, 사회부문 개혁, 재정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신중환통화 및 환율정책,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등 모두 6개 부문에 걸친 개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정부의 숙원이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불을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력선(270MW)이 도입되어 전력 공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하루에 몇 시간씩 단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주재국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데, 매장량 규모는 노르웨이 PSG사의 조사에 의하면 180억배럴, 영국계 Spectrum Energy and Information Technology사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4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4월에 사전적격심사 통과 업체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 입찰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에 우리나라는 레바논에 대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연간 3억7천만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으나, 수입은 6천6백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입품목 대부분은 동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서 기타 제품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레바논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상품이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 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레바논에 진출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레바논 정부 대표단이 협의하였으나 동 협정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 협력 관계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없다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달러)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고,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4.10월 현재 삼성전자가 지점 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06.1월초에 한국전력이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하여 현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하여 2011.2월까지 디아르 아마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주춤하여 2013년도 2%에 그치었고 2014년도에도 2% 이내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지역정세 및 정국이 안정되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인프라의 복구 등 전후 재건 복구 프로젝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바논 정부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경우, 동 사업 및 재건 복구 프로젝트 내 틈새시장으로 IT 및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5.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재에 대해서는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산업체에 기계류, 부품류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 자재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레바논-시리아 양국은 1999.1.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낮춰, 2005년부터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관세 징수액이 정부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23.2%다. 그러나 관세제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관세율표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HS Code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무역통계, 무역관련 규정, 관세법 등이 서비스된다.

-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lb
- 수록 정보: 관세율,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무역통계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1) 통관절차

가. 수출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는 편이다. 경제통상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 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나. 수입절차

경제통상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



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과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입자의 외화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베이루트항 개발청은 통관시 관세와 인지세 외에 소액의 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란산 카페트, 중고 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중고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당 500만 레바논파운드(3,267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다.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 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5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한편, Under Value 혹은 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 value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수입규제

(1) 규제제도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제정 운영하고 있다.

유로-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터키 및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 관계 협정으로서 동협정에 의거 양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되며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마약류
 -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 공업성 승인품목 : 가공 안된 원피, 가공 안된 실크, 종이, 카르보드, 누에고치, 타르
 - 농업성 승인품목 :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레바논은 현지 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2) 대한수입규제 동향

현재 규정상 수입규제 및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의 경우 보통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담당자가 특정기업과 결탁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스라엘 보이콧 조항이 있어서 자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도 이스라엘 항구에서 기항한 경우 레바논으로 입항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제나 금지품목 이외에, 특별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간,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전문가(약학자와 의사 등)로 하여금 수입 기기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레바논 정부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지적 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013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감시대상국명단」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기업들의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논의 해적판 서적은 인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수출하는 등 불법적인 CD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적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총 손실은 2010년 49백만달러에서 2011년도에는 52백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다기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 적발시 벌금은 5백만 내지 5천만레바논파운드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3개월에서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1924.1.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 디자인 권을 규정.
- 1946.1.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198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지식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701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 받게 됨.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1955.3.8일 체결한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1960.1.25일 경제무역부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1999.4.3일 법령 75/99호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0.8.7일 법령 240/2000호로 특허법 시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IIPO가 보호,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O에 등록하고 공식간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미 법체계와 달리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O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투자 장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강요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단, 토지소유에는 제한이 있어 구입은 가능하나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4.3일 개정된 법 제 296호에 따른다. 이 개정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사이에 차별을 폐지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논 전국토의 3%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도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2.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세로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전한 상황인데다 인프라 시설(전기, 상수도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시리아 등 주변 정세의 악화로 투자에 필요한 ‘안전도(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400만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상지역으로는 그리 적합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레바논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4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중 80% 이상이 왕복 2차선인데다 도로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7~8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거 개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2012년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레바논은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일인

당 국민소득이 2012년말 기준 14,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생산여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판매여건: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제품 판매 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수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레바논 투자청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2013년 28.3억불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對레바논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6~2010년 매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49억불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억불이 감소하여 35억불이었다. 2012년도의 투자액에 대한 WORLD BANK의 자료는 없으나 레바논 투자청(IDAL)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투자액은 37.9억불이며, 2013년도에는 28.3억불이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달러)를 수주, 공사완료 후 철수한 이래 현지 지상사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 KT&G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2014.10월 현재 삼성전자가 지점 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02.2~2011.2월까지 5년간 한국전력이 레바논 북부 및 남부 발전소를 운영 한 바 있다.

레바논은 적은 인구나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신고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나, 최근 주재국에서 추진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에 한국 석유 공사 및 가스 공사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한국과의 투자관계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아국업체의 철수 이후 한·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자 협력 관계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5.1.27일에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정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5.5일에는 한·레바논 투자보장협정(The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바 있다.

(2) 對레바논 투자진출전략

한국 기업으로서의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거점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사태의 악화 및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

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직은 전화 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 인프라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레바논 진출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40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만km²에 불과하여 등 시장이 협소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제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적인 제조업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중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 인프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이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 인센티브

레바논의 투자 인센티브는 레바논 투자청(IDAL)에 의해 부여된다. 레바논은 3개 지역으로 국토를 구분하여 각각 인센티브를 달리하고 있다.

Category

A Category(지중해 연안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

B Category(내륙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5년간 소득세(법인세) 및 배당세 50% 감면



C Category(남부 및 북부 산악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10년간 소득세(법인세) 및 배당세 50% 감면

한편, 레바논 정부(IDAL)가 지정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시 ‘패키지 딜 콘트랙트’(Package Deal Contract)라고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는 레바논 투자청(IDAL) 이사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 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에 대한 노동허가
-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소요비용의 50% 감면
- 패키지 딜 콘트랙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회 이사진의 레바논 자국인 지명 의무조항면제
- 프로젝트를 위해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가수수료의 50% 감면
- 부동산 등기소 토지등기 수수료, 임대차 계약관련 등록비 등의 면제
- Package Deal Contract 적용대상 분야
 - 제조업, IT분야, 농업, 기술, 통신, 관광업, 언론출판 등

(2) 투자관련 정부기관

레바논은 특별법인 투자법 제360호(2001.12월)에 따라 총리직속 독립정부기관으로서 IDAL(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을 설립하고 1995년에 Decree 5887호(1994.10.11)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투자유치담당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여 2002.7월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인의 레바논 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진출형태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과 지사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등록 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수수료 100,000레바논파운드(약 67달러)를 포함한 벌과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 General Security와 노동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자법 LAW NO. 제360호(2001.8.16) 및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됨.
- 레바논의 상법상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ship)의 등록으로 구분됨.
-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기관이 있음(예: 베이루트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427793).
-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 정관을 요약(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 회사 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주사무소 위치 또는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연도 및 영업기간 등



- 등록 3개월 후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 허가를 득함.
-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자기 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다. 세금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소득세 의무가 없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라.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 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마. 기타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 모회사로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음.
-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2) 지사(Branch) 설립

가. 지사설치 절차

-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설립과 연락 사무소(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음.
-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경제통상부(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함.

나. 등록 구비서류

- 경제통상부 Trade Department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논대사관(주한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이 된 서류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 지시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이사회 결의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 소요기간: 7일(경제통상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서가 구비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통상부에 제출
-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라인당 5,000LL, 약 3.33달러)해야 하며 경제통상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함.
- 등록비용: 1,200달러



다. 사업자 등록(TRADE REGISTER) 확정

- 경제통상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통상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됨.
- 등록비: 600달러

라. 소득세: 순수익의 15% 세금 납부

마. 국립투자보장회사(NIGC)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바. 투자보장협정 체결

-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음.

사. 사유재산 보호

-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레바논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함.

아. 세금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부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자.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차.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 외국 회사가 레바논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함.
- 단, 이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음.
- 대기업의 해외 주재 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함으로써 레바논의 제세금 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음.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 소요비용: 총 2,000달러가량 소요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1,200불
 - 관보 게재: 약 200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600달러
-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최저 200달러에서 1,000달러 가량함.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 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세금 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4) 타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 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시 요령은 상기 언급한 1번과 2번의 요령과 동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소 형태가 용이함.

(5) 비자 관련 사항

-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 개설차 입국하는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의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레바논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한 근무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에 제출함으로써 추후 1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함. 단, 현지 주재 지상사 또는 업체 장기 근무를 위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2013년도 출입국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입국전 사전에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장기 워킹비자를 취득하여야 함.

○ 노동허가

- 입국 후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함으로써 처음에 발부 받은, 통상 2개월 유효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음. 이 기간 중 체류허가(이까마)를 획득하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 레바논 장기체류 시(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 현지 노동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 받을 수 있음.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모회사의 대표부 임명장(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에서 공증(CERTIFIED)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지사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1,000달러) 증서 등을 구비 제출해야 함.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1,000달러(LL 1,500,000)

○ 체류허가(이까마) 취득 절차

-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7일
- 소요비용: 1,200.00달러(LL 1,800,000)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 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였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 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Banking Secrecy)을 철저히 보장 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19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레바논의 금융시장은 아랍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보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다. 레바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 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년 레바논 은행 1개와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이 도산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일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90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내전종식 후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활력을 되찾으며 2009-2010년에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였으나,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금융권 총자산인구는 2011년 기준 약 21,000명이며 레바논 중앙은행 추산, 금융권 총자산(Consolidated Assets) 규모는 2013년 6월말 현재 약 1,579억달러이며, 자산규모에 의거한 은행순위는 Banque Audi, BLOM, Byblos Bank 순이다.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만불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53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000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하다. 2013년 상반기 보험 발행액은 전년에 비하여 7% 증가한 739백만불로 나타났다.

시장 환경

시장 특성

(1) 소비자 특성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



적 약자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2)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와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슈퍼체인점 등)의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 house)를 갖고 있고 소매영업은 하지 않고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소매를 겸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이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 판매하거나 현찰 판매 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쉽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소비자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쉽을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태로 경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이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종의 바이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트쉽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전트쉽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이 400만 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채고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 중의 하나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 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세일즈 출장 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유망 상품

- 전자통신장비: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성수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중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MP3, USB)
- 산업용 원자재: 철강제품(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라스, 보안장비, 섬유 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품, 난방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용 소모품 등),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식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4)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가. 일반적 유의사항

- 레바논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을 선호하는 편임. 따라서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
-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로서 상업, 서비스 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바논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높아 정보가 빠른 편이며,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상인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편임.

나. 건설시장 진출상의 문제점

- 낮은 응찰가
 -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레바논 공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주요공사들이 초저가 응찰업체들에게 낙찰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들은 너무 낮은 가격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
-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 선호
 - 레바논 발주처들의 신용도 향상으로 합작투자사업보다는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을 선호한다는 점이 레바논에 진출한 외국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
- BOT공사 발주 증가
 -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들여 완공한 후 운영까지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비용을 상환받는 BOT공사 발주가 늘고 있음.



- 법규의 완화
 - 지난 20년간 지속된 건설법규들이 완화되어 심지어 건설진행중에도 설계변경이 잦음.
- 공사대금 지불지연
 -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다. 경쟁국 진출현황 및 동향

- 레바논 시장은 미국, 이태리, 중국, 프랑스, 독일, 터키 순임
- 전통적으로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강세에서 최근에는 중국의 진출이 급신장하며 레바논 수입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 한국은 1.3%임.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시장진출 장벽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Agent를 통한 문제점 파악
- 레바논 내 각종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구매단 방한의 적극 유지
- 양국 간 민간상공회의소 지원, 동 협회를 통한 기업진출 도모
- 레바논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국제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각종 정보를 신속히 확보, 제공

르완다

르완다 경제 현황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26,338 km²)에 약 11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고, 제조업이 열악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2013년 1인당 국민소득 723미불)이다.

르완다경제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구의 81%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노동력의 80%,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활동도 산악지형과 낙후된 재배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극히 낮으며 커피 및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적 농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건설 및 광업 포함)은 GDP의 15%에 불과하며,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높은 교역비용, 해외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원료 수입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이다.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高에너지 비용, 여신(credit) 부족, 농업작물의 다변화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이 르완다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르완다경제는 1994년 제노사이드 당시 대부분의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이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침체에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 8.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르완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농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했던 해외원조 중단으로 인한 2013년 르완다 경제의 성장률 저하(4.7%)는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 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318백만불 → 2013년 848백만불)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58백만불 적자에서 2012년 705백만불(GDP의 9.9%) 적자로 급증하였으나, 2013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따라 538백만불(GDP의 7.2%)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자본수지는 2013년 773백만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르완다는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2013년 229백만불 흑자)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EU, 스위스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2005년 14백만불에서 2013년 163백만불로 급증하였으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낮은 수준(GDP의 2%)이며, 누적 투자액도 2010년 기준 883백만불에 불과한 상황이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제조업 및 광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서비스 분야에 80%가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에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경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목표를 밝히고 있다.

르완다는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세계경쟁력지

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위,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4)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2위를 차지(전체 32위)하였다.

르완다 통상 정책

르완다 통상 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부(MINICOM)이며, 재정경제 기획부(MINECOFIN), 외교부(MINAFFET), 농업부(MINAGRI), 동아시아공동체부(MINEAC),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 등도 통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정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NDTPF(National Development and Trade Policy Forum)을 통해 르완다 통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고위급 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 위원회를 갖춘 국가통상정책포럼(National Trade Policy Forum)을 설립할 예정이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와 중기 국가전략인 EDPRS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2013년 르완다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증대, ④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① 기존 수출품의 가치 증대,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수출대상지 다변화, ③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증대, ④ 민간 분야 육성 환경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르완다는 또한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CEPGL)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몸바사 및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7월 EAC(동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MFN 실행관세(MFN applied rate)로서 적용하고 있다.

■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품목	관세율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0%	37.4%
중간재	10%	22.1%
완제품	25%	39.3%
민감품목(58개)	35%-100%	1.1%

EAC 회원국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수입규제

르완다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 규제는 르완다 표준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2012.10월 기준 르완다 규제 품목의 더 자세한 리스트는 다음의 르완다 표준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wanda-standards.org/~rbs/main-nav/quality-assurance/prohibited-and-restricted-goods.html>

르완다의 주요 수출 금지 품목으로는 화학폐기물, 석면, 마약류, EAS 377-2:2005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 프레온가스, 위조화폐, 음란물, FDA 지정 금지품, EAC 국가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수품, 정유 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증류주, 폴리에틸렌 가방, 로테르담 협약에 규정된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러나 르완다환경관리청(REMA)의 허가를 받은 경우, 폴리에틸렌 가방의 생산, 사용, 수입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

수입 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 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 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certain products)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제는 시행 가능하다.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①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02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국(RBA: Rwanda Bureau of Standards)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절히 적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 및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과 각각 528개 및 304개 분야에서 표준 일치가 이루어졌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제적 최적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s)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개발 절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르완다의 기술규정은 농업, 건설, 전기, 환경, 위생 등의 담당 부처 및 르완다환경관리청, 르완다공공시설규제청, 르완다개발청, 르완다표준국 등의 다양한 규제 기구에 의해 개발·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르완다표준국의 Instruction No.02/ 2005에 따라 르완다는 식료품, 물, 주류, 곡물, 커피,

차, 우유 등을 포함하는 67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 표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wandastandards.org/~rbs/fileadmin/user_upload/files/RBS_catalogue_fina2.pdf

②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국은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 전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르완다표준국은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부 하의 국가농업수출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은 차, 커피 및 타 수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③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 화물 또는 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국이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일주일 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물품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국은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



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현재 르완다 정부의 위생 및 검역 정책 체제는 보건부, 농업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르완다투자청은 단일 위생 및 검역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위생 및 검역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부, 농업부, 산업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국가식품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rema.gov.r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79&Itemid=146&lang=en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 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 하여서는 르완다개발청에 문의하여 르완다 환경관리국과 르완다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르완다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에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르완다의 정부조달은 국내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①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07년)과 2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외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기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②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Single-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기업에게 10%의 가격특혜가 허용되나, 중소기업에 어떠한 특혜가 주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③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조달청(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게재된다. 국내입찰자는 반드시 르완다어로 입찰서를 작성하고 국제입찰자는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야 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④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6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야 한다. 심리 요청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 접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기관으로 심사단은 모든 행정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0/2011에 79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46개는 심사부적격 기각, 12개는 입찰자에게 유리한 결정, 21개는 조달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경쟁정책

현재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동 법령은 국내 교역은 경쟁과 자유시장

원리를 준수해야 하며, 재화와 용역 가격은 반드시 자유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독과점 발견시 이에 개입할 수 있으며, 위반시 2만-2백만 르완다 프랑(RF)의 벌금형 및 최대 3개월의 사업등록증 정지가 가능하다.

르완다 정부는 현재의 국내교역법이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경쟁정책서 및 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채택하였다. 경쟁정책서에 따르면, 통상산업부 내에 경쟁 및 소비자보호 기관이 설치되며, 동 기관이 반경쟁행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도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10월 발효)하고, 지적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11월)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특허는 114건에 불과하다.

르완다 통상산업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 개발청은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



을 고수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지 않는 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르완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인받은 산업재산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청과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르완다 기업이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 14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9개가 공동출자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민영화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민영화기술위원회와 민영화사무국과 함께 민영화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무역장벽

①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약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매출량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② 인프라 부족

2005.11월, 무역통합진단연구(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가 통합 체계 프로그램(Integrated Framework program) 하에 실시되었고,

2009년 업데이트 된 연구에서는 에너지와 교통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인프라가 르완다의 무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간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의 국가 전기 발전량은 2012년 상반기 기준 96MW로 한국 발전용량인 79,432MW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10.8%의 인구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고 에너지 비용은 18.24 USD로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르완다의 도로 밀도는 0.53 km/km²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구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키갈리 국제공항의 운송량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한 키갈리 국제공항 확장 사업과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철도를 항구에 접해있는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과 수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르완다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투자매력도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32위(2005년 이후 평가 개선 세계 2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이는 주변국가(우간다 120위, 케냐 121위, 탄자니아 134위, 부룬디 159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62위(사하라 이남 국가 중 남아공과 모리셔스를 이어 3위, 동아프리카에서는 1위)로 평가하였다. 2013.10



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Rating
르완다	N/A	B/B	B+

이 중 르완다의 국가 신용도를 B+로 평가한 Fitch Rating은 르완다가 우수한 빈곤 감소 기록과 부정부패 관리 능력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central scenario)했다.

투자 제도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및 수출 진흥 촉진법’(Law No.26/2005)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동 법은 외국인의 경우 25만미불 이상의 자본 출자, 르완다인과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소속 국가의 국민인 경우 10만미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투자자로 인정하며, 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 이미 발표했다. 2012년 도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Investment, UNCTAD)의 지원을 받아 종합투자법의 개정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종합투자법에서는 세금 혜택, 기타 이익, 이민 제한 및 노동 허가증 발급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2008년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이 설립되어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완다개발청은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청 내의 원스탑센터(One-stop center)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이용과 공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약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르완다이지만 르완다는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연료와 전기의 가격은 운송비와 높은 수요로 인해 주변국인 탄자니아, 우간다 등 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비용이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접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도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의 여파로 아직까지 숙련된 노동인구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르완다 로컬시장의 규모 역시 미미한 상태로, 농산물은 커피, 차, 제조제를 제외하면 전부 자급자족을 위한 물품이며, 서비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관광 대국인 주변국(케냐, 탄자니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등이 발굴되고 있다.

투자관련 인센티브

해외직접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투자세액 공제는 운영 최초 1년에 한해 투자 금액의 30%를 공제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인 키갈리와 그 외 지역의 신규, 혹은 기존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준이 다르다(키갈리 40%, 기타지역 50%).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소액금융에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승인 받은 기간부터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한다.
- 훈련, 연구 및 제품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항목이 있으면 과세소득항목에서 추가 50%의 세금 감면을 한다.



- 투자자가 자유수출경제구(Free export economic zone) 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지역까지의 인프라 제공 경비를 상쇄(offset)하고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 매겨진 관세를 환불한다.
- R&D 비용을 100% 제한다.

전략 산업 부문에는 부가가치 창출, 기술 이전 및 우선순위 산업 투자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수출가공구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세제혜택이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하는데, 고용 창출 인원에 따라 세금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용인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경우인 2% 부터 시작해 901명 이상 고용 시 7% 감면).고용 창출 인원 대상은 르완다 인으로, 최소 6개월 간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법적으로 소득 세율이 0%가 아닌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종합투자법에서는 사업의 특수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르완다 정부 내각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투자관련 분쟁해결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 4. 21일 서명했으며 1979. 11. 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 3. 18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 7. 16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kiac.org.rw>)는 2012.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한·르완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013년 현재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1,144만불(수출 1,083만불, 수입 61만불)에 불과하고, 우리의 투자진출도 2012년 기준 10건 40만불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체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하여 최혜국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2014.9월 기준 상반기 적자가 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출 진흥 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밀(73%), 설탕(60%) 등과 같은 농산품 및 기초 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으로 진행한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

년 이후 추가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 철폐가 완료 되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모로코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2010년부터 모로코-캐나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했으며 2014년 7월, 5차 협의의 개최를 연기하고 개최 일시를 차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3차 협의 이후 양국 간 합의 내용에서 모로코 농업 및 공공사업부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요구되는 등 협상 내용의 일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모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오고 있다. 또한 모로코 정부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에 의해 경산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3.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08.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연합(EU)에 대하여 누리고 있다. 또한 2013년 시작된 유럽연합(EU)과 모로코간 심화·확대된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구성을 위해 2014년 4월 4차 협상을 마쳤고 5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 투자 보호, 국가조달, 비관세 장벽 철폐 등과 함께 양국 간 제도적 근접성을 확보하여 모로코가 EU 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 공업 표준 등의 일원화와 같은 안전



이 논의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효된 농산물 협정은 유럽에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로코산 농산품을 유럽으로 수량 제한 없이 수출 허용한다는 조항과 향후 10년간 유럽에 대해 모로코 식품류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6.15일 타결되어 2006.1.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현 양국 간 교역량은 2005년에 비해 약 3,000% 증가 했으며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 기계, 건설장비, 화학, 섬유 의류 등이 이 협정 체결이후 모로코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06.1.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터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철폐될 예정이다. 터키는 세계 2위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에는 대(對) 터키 수입 총액이 13억 달러, 수출 총액이 3억 8천 달러를 기록하여 각각 20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이 2004.2.25일 체결한 ‘아가딜 협정(Agadir Agreement)’은 2006.7.6일 발효되었다. 발효 즉시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수입부과금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투자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에는 농업용 기기, 농·축산물, 어망, 파라핀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낮게 부과되었던 수

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도착서류(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제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금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 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물품검사는 송장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 수량, 품목, 규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견본(Sample)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가격조작(Undervalue)에 대한 세관당국의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추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에서 HS코드를 통해 관세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http://www.douane.gov.ma/adil/>)와 수출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http://badr.douane.gov.ma>)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모로코에는 수입 규제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업 분야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 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 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2012년 8월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해 25%, 2013년 12월 미국산 PVC에 최대 56.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유럽 및 터키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 대외무역부의 반덤핑조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며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면서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무역구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6월에는 2012년 이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유럽 및 터키산 열연 철강판에 대해 자국 철강기업 Maghreb Steel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탄원서에 따라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기업에 따라 11-1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는 기술표준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의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O/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붙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 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 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2.9월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당국은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2015년에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은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10.19일 발효된 정부조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해 투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하청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담당 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관행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 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 이미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 선택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관심사는 어떤 기업 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기업 과 손잡을 경우 자신의 부가 증가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진 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하는 영어권 국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 고 있다.

2014년 9월 산업·상업·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국방부, 인광석공사 (OCP), 모로코항공(RAM), 철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모로코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 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

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마지막 개최 2012.5.23~24일)을 열어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은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OMPIC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침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천 8백 달러에서 최고 5만 7천 달러가 부과된다.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금융기관의 성격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M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스페인은 Santusa Holding이 Attijariwafa 지분 5.27%, OCP가 Banque Populaire 지분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CitiBank가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모로코 최대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의 Etisalat(53%)이며, France Telecom은 Meditel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의 지분 31%는 쿠웨이트 Zain Al Ajial이 2010년 매입한 바 있다.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수출에 이어 모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11.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관광의 질 향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가지 세부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개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Biladi)이며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는 등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
이 촉진돼 모로코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 될 것이나, 외국 여행사가
모로코 지사 설치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
코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며 밀
수품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
타, 멜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
스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와즈(Rawaj) 계획을 2007.6월 발표하여, 2020년까지 유
통산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통
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2013년 기준 15%에 불과
하지만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모로코 투자진흥청은 2013년
말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국가 총 생산(GDP)의 11%를 차지했고,
노동가능인구의 12.8%를 고용했다고 보고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지속
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이었던 종합 식품 매장 수는 2014년 3월 기준
15개의 대형 마트(hypermarket)와 154개의 슈퍼마켓(supermarket)으
로 늘어났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

랑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Atacado Maroc 및 터키 BIM 등이 체인 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프랑스 Casino가 Monoprix를 런칭하여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투자 장벽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를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업,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억 3천 5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는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모로코 투자 진흥 공사(AMD: 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는 컨퍼런스, 회의 등 약 75개 행사를 통해 모로코에 진출해 있는 약 350개 투자자들과 접촉해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진출 기업 접촉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로코 투자를 위해서는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의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은 자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고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이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현지법인

(1-1) 유한회사(SARL)

최소 1인에서 최대 50명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1-2)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5인 이상의 주주와 최소납입자본금(상장사는 3,000,000디람, 비상장사는 300,000디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 액면가는 최소 100디람이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로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1-3) 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 출자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책임사와 원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로 구분된다.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모회사의 명의로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으며 상업행위와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법인세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로젝트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6.7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계약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으로 고용),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부씩 소지해야 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유효하다. 고용 후 고용자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 연합(UMT), 모로코 노동연맹(UGTM) 등 전국적으로 3,4개가 존재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질적 권익 주장이 미약해진 측면이 있다.

경쟁 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물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 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실례로 국내 빵 가격 급등으로 2012.10.1일부터 밀가루에 대한 관세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2013)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한 58.3점을 획득하여 평가대상 178개국 중 103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3계단 하락한 순위이다. 금융자유화 41위, 비즈니스 환경 44위, 투자자유화 46위 등 비즈니스 및 투자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노동 자유화 176위), 재정 자유도(134위), 무역 자유도(164위), 재산권보호(70위) 등은 개선해야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무역 자유도가 40위나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 투명성제고,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인 최혜국(MFN) 실행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공산품 품목별로 관세율이 2.5~7.5% 포인트 인하되어 우리 상품의 對 모로코 시장접근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밀수품의 유입을 막아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거래의 확대, 유통 구조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진행으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경공업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은 가격 시장으로 굳어져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쉽지 않은 반면, 유럽산 제품을 대신할 기술 제품은 한국산 제품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바레인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비준했다. 2014년 현재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과 종교적 이유로 술에는 1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담배에는 110%의 관세를 부과한다. 2008년 GCC 보건부장관들이 모여 담배에 ‘보건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까지 세금을 인상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부정적 여론 때문에 현재까지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무관세	428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료품)
5% 수입관세	428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110% 수입관세	담배
1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의 회원국으로서 GCC 내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추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 국가들은 GCC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통일된 수입관련 규칙들을 마련, GCC내에 수입되는 물품들에 한해 첫 진입국가에서만 수입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Import Customs Declaration Form; CDF)
- 화물인도 지시서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3부
- 포장 명세서(중량, 물품 분류 등) 2부
- 원산지 증명서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 선하 증권(B/L) 원본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를 완료하면 관세 지불,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료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수입 물품이 GCC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 지불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인 OFOQ라는 온라인 세관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통관절차가 용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랍어 혹은 영어로 된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방사선조사식품(irradiated food product)
- 무기류(특별허가서가 있을 경우 제외)
-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 야생동물
- 양식진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그 나라의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아랍연맹의 회원국으로서 바레인은 이스라엘 제품의 일차적 보이콧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는 느슨한 편이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레인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화를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바레인이 만드는 새로운 표준안은 걸프 표준화와 국제 표준화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걸프 표준화로서 바레인이 따르는 표준은 1,685개(2014년 11월 기준)이며 현재 645개의 새로운 표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 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제한된 화학제품 수입과 산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는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입찰절차가 투명하지 않았으며, 입찰가격, 기술적 이점에 의해 계약이 결정되지 않고 미리 내정된 기업들에게 프로젝트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는 입찰청이 BD10,000 이상의 모든 입찰 결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련 유력인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적으로 BD10,000 미만의 입찰은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찰 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입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업체가 발표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특허, 산업디자인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산권은 상공부의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산업재산국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



된 산업재산 사무소 중 하나이며, 국제적 인지도 또한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또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5월 바레인은 파리협약, 니스협약, 비엔나 협약, 특허협력 협약, 상표법 협약, 마드리드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로마 협약 등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바레인정부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2005년 WIPO 저작권 협약(WIPO Copyright Treaty, WCT)과 WIPO 실연·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에 가입, 동 조약은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다.

서비스 장벽

중동지역의 보험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2004년 이후로 보험회사 지분의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투자 장벽

투자여건·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자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

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는 제 2의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바레인은 항만 인프라 11위, 도로 인프라 24위, 항공운수 인프라 25위에 선정되는 등 국가 인프라 부문에서 전체 148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바레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대역 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전자상거래, 기업 간 IT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는 바레인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바레인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 부문 185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으며,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이 주관하는 경제자유지표에서는 185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바레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연수 서비스, 관광, 금융서비스, 보건 서비스와 석유화학 분야에 새로운 민간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 자국민/외국인 모두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 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금지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 용도로의 사용
- 제1종 우편(바레인우체국Bahrain Post만 독점)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어업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 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포함 GCC 국민들과 GCC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옴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홍신소(commercial agency)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GCC기업이나 GCC국민들은 바레인 기업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외 외국인들은 바레인 기업의 49% 이내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새로 설립된 회사나 외국회사의 자회사 혹은 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로컬 스폰서 없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100% 외국인 소유 기업의 경우 바레인 내수시장이 아닌 GCC 역내 시장진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석유 추출 관련 투자의 경우에는 BAPCO와 생산·분배 합의 하에서 허용된다.

다음은 바레인인 파트너나 바레인인의 지분소유가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이다.

- 무역(판매, 구매, 수입, 수출 포함): 최소 바레인인의 51% 지분이 필요하며, GCC 회사의 경우 바레인인 사업파트너가 필요
- 관광, 여행사무소: 바레인인 사업파트너가 필요
- 의료 클리닉, 의료 센터: 의료사업 라이선스는 의사자격을 갖춘 바레인인이나 바레인 거주 GCC국민에게만 발급(병원 제외)
- 약국: 자본의 50% 이상을 바레인인 약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바레인 국민과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1년 이후부터 비GCC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일부지역에 한정된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의 경우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정해진 지역의 상업, 관광, 금융, 보건, 교육 및 연수 센터 등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비GCC 외국인이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hmed Al-Fateh(Juffair) 지역
- Hoorā 지역
- Bu Ghazal 지역
- Seef 지역
- Diplomatic Area를 포함한 북쪽 마나마지역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² 면적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이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상업용 소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 대출의 모기지(mortgage) 개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할 시에 해당 채권을 대출기관이나 타인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적 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2015년 2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상업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

(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지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2011년 1월에는 상공부 장관이 산업부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산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산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2014년 기준)

산업용 부지	년간 \$3.90/m ²
산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 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 ²

■ 사무실 임대료(2014년 기준)

마나마 중심가 혹은 Diplomatic Area의 고급 사무실	월 \$15-\$40/m ² 와 그 외 서비스 요금 추가
중급 사무실(80-120m ²)	월 \$450-\$950

■ 상가 임대료(2014년 기준)

평균(제공 미터 당)	월 BD 16
시프몰(제공 미터 당)	월 BD 20

■ 주거 임대료(2014년 기준)

고급빌라(Saar 및 Busaytin 지역)	\$2650 이상
방1개 아파트	\$650 이상
방2개 아파트	\$1000 이상

■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2014년 기준)

종류	산업용	주거용
전기	BD 0.016시간당 kw (공업용 BD 0.012시간당 kw)	첫 2000 유닛: BD 0.006/unit
		그다음 3000 유닛까지: BD 0.012/unit
		그 이상 추가 유닛: BD 0.016/unit
수도	450m ³ 까지: BD 0.300/m ³	450m ³ 까지: BD 0.300/m ³
	그 이상 추가: BD 0.400/m ³	그 이상 추가: BD 0.400/m ³



금융상 제한

바레인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CBB)은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국제적 회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바레인 내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외환관리 제한(exchange control restriction)이 전혀 없으며, 100% 송금을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되어있다(BD 1=\$2.6596).

세제상 제한

세제 관련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자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하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 바레인은 가스 및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 바레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D 70,000까지는 부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D 70,001에서 BD 120,000까지는 2%, B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부동산(사무실, 주택 등) 임차료에는 10%의 지방세가 부과되며, 임차인이 부담한다.
- 사회보장세 :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외국인 노동자세 :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10BD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기관(LMRA: Labour Market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Tamkeen이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현지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실제 시행을 계속 유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3.4.26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금부담이 완화되었다.

-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는 5% 제한세율을 매긴다.
-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와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Mumtalakt Holding은



바레인 정부의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바레인 기업들 내 정부 지분율을 50%이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타 장벽

노동관련

1.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 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5~30%의 Bahrainization률이 적용된다.

- 주요산업 자국인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0~25%), 부동산(10~40%), 금융(30~50%)

2. 최저임금제도

2014년 8월, 숙박업계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BD 300로 보장(단, 바레인 국적자에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BD 300) 보장 법안은 2014년 1월 하원의 투표만 거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레인은 학사학위 이상은 BD 400, 그 이하는 BD 300의 최저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바레인 노동조합은 바레인 국적 외 외국인들에게도 최저임금 보장 제도를 적용하여 외국인 노동력 착취를 금지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최저임금 보장 제도가 실시되면, 바레인은 GCC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3.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마 단 기간 중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
- (근무중 휴식) 30분 정도의 중간 휴식 없이 연속으로 6시간 이상 일 하지 않는다.
- (연차)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매달 2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년 30일(근무일 기준)이 주어진다.
- (병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간은 임금 100%가 지불되고, 이후 20일간은 임금 50%가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병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 60일간 임금 100%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바레인 진출과 관련된 사항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동의 금융허브

- 2014년 9월 현재 바레인에는 404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융 분야는 전체 GDP의 약 17%를 차지하며, 금융자산 규모는 1930억달러, 금융종사자는 14,000명(이 중 2/3은 바레인인)으로,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아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 2년 연속 이슬람 금융 시장 부분 세계 2위에 오른 바레인은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3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이슬람 금융자산은 254억 달러로 바레인 총 금융자산의 13.3%를 차지한다(2012.8).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장하는 보험 산업

-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보험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건강 보험 등 일반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이슬람 보험인 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보험 시장 종사자는 2013년 기준 약 1,700여명(이중 2/3는 바레인인)으로 금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36개의 보험 회사가 바레인에서 영업 중이며, 이 중 8개가 이슬람 보험사(Takaful 및 Re-Takaful)이다.

4. 바레인의 금융기관

-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
 - 중앙은행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바레인 중앙은행은 종속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지

불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 증권거래소

-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였으며 바레인 중앙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다가,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되었으며, 2011년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현재 50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AUB (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도매 은행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GIB (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AAIO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보험사	Bahrain National Insurance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은 12%로 책정된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

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06년부터 사우디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6~25% 수준이었던 식음료제품, 건축자재 및 일부 소비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8년 4월 1일부터 3년간 0~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9년 6월 동 품목을 포함 총 8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하 또는 면제했으며, 2010년 12월 11일 화학제품, 향수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제품 등 총 122개 품목의 관세도 7.6%~25%에서 5.5%~6%로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 당국은 2011년 4월에 수입관세 검토 후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율 변경 또는 인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 한시적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인하 내역(%)	중전 : 6~25 현행 : 0~5	중전 : 15~25 현행 : 5	중전 : 7~20 현행 : 5
대상 품목	냉동소고기, 냉동양고기, 가금류, 유제품, 냉동감자, 밀, 밀가루, 식물성식용유, 소시지, 파스타, 땅콩버터, 과실쥬스, 생수 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제외), 합성세제, 화장지, 플라스틱유아 수영병, 기저귀 등	석고, 산소, 페인트 및 바니쉬,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및 연결기구, 전기스위치, 자동차단기, 조립식 건축물

자료원: 사우디 관세청(www.customs.gov.sa)



계절관세

사우디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기존 관세
애호박	6월 1일 ~ 7월	2개월	25%	0%
아욱	6월 1일 ~ 8월	3개월	25%	0%
감자(파종용 제외)	1월 1일 ~ 5월	5개월	25%	0%
토마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식용 양파(파종용 제외)	6월 1일 ~ 10월	5개월	25%	0%
당근, 순무	2월 1일 ~ 5월	4개월	25%	0%
오이(피클용 오이 포함)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수박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머스크 멜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자료원: 사우디 관세청

수입부과금

수입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 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 /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 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 제한 등 일부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무기, 아스베스토 등 ▲관련 부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가축, 책·잡지, 오디오 및 동영상물, 의약품, 화학품, 향료 등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무선장비 등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2009.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 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우디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품인증제도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 한국기술표준원-G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 체결 본격적으로 추진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걸프 지역 표준화기



구(GSO)를 방문하여 6개 걸프 국가들과 예멘에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을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이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양측 대표는 KATS와 GSO의 MRP 체결을 조속한 시일 내로 체결할 것을 다짐했다. MRP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 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식경제부(2013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하여,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기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출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



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판물부(MOP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판물 생산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12월부터 중단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 제약

사우디는 2005.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액의 일정비율의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으며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공부에 현지회사로서 등록절차를 마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 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사우디 석유공사),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EC(사우디 전력공사), STC(사우디 통신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자국인화정책(Saudization), 사우디 채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자국산 기초군수물자 구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1조에 의거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The Law on Patents):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정보부
- 상표법(Trademarks Law): 상공부



* 상표권 신청 시 사우디 국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는 2010.2월 그간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2월과 2012.2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에 재 등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였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하였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은 60%까지 허용). 2008년말 25개 외국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였다.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는 10개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한편, 2004.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는 행 및 중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

유한도를 60%까지로 제한하였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였다.

2008.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2014.7월 각료회의에서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울)을 제3국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당국(CMA)은 2015년에 외국인 투자기관에 대해 점진적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사우디 주식시장은 자국민 및 GCC회원국 투자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투자는 ETFs(Exchange-Traded Funds 교환-거래)를 경유하여 국제투자은행이 만든 스왑거래를 통해서 사우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투자 장벽

사우디 정부는 1956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전면으로 개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개정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2000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 외국기업 단독 투자시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 이용 가능
- 수익과 자본의 자유송금 보장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그러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현지 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무니 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절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서비스 분야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관측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보험업은 60%, 금융·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상한을 확대하였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리얄,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리얄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리얄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함).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성격과 심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 공장 설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명시한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산업
- 상업
- 농업
- 계약수주업
- 부동산중개업
- 전문 서비스
- 자문 서비스
- 외식산업
- 경공업

□ 법인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사우디 회사법(The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8개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4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 지사(Branch)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지사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동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으며,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외교부에 의해 승인된 합동증명서(Incorporation Certificate)와 회사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해당 회사 설립 국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검증한 뒤,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랍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고 상업 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시 지사는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수 있다.

□ 연락 사무소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법인 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와 사우디 자본이 20% 이상 참여하는 합작투자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비 할인, 생산 원자재 및 설비의 면세통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선호한다.

지사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쉽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

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나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득시 대지 및 건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리얄을 초과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우디 무슬림은 2년간 동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금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총세율은 이익의 14.5%로 세율이 낮은 편이다. 사우디에는 또한 자카트(Zakat)라고 불리는 종교세가 있는데 사우디 내국인에 한해서 순 수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우디의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다 ▲은행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본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경쟁정책

제9차 5개년 개발계획(2009~2014)

사우디 정부는 2010.8월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사상 최대 규모인 3,850억 달러의 제9차 5개년 개발계획(2010~2014)을 승인했다. 사우디 당국은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정책목표로 경제다변화, 인적자원 개발,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인력 개발 및 고용 확대, 민간·외국인투자 촉진, 금융 부문 안전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주요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약 3,300억 달러가량을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관련 분야에 투입하기로 예정했다. 특히 교육 1,863억 달러, 의료 647억 달러, 수자원 434억

달러, 운송인프라 271억 달러 등의 분야에 대규모 예산투입이 계획되었다.

2014년도 예산 내역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예산은 총지출 8,550억 사우디 리알(2,280억 달러), 총수입 8,550억 사우디 리알(2,280억 달러)로 균형예산이 편성됐다. 2014년 예산편성은 교육, 의료분야 집중투자 및 균형적인 예산분배를 통해 산업다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부문별 예산은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 2,480억 사우디 리알(661억 달러), 교육 2,100억 사우디 리알(560억 달러), 보건 및 사회복지 1,080억 사우디 리알(288억 달러), 지방자치 산업 390억 사우디 리알(104억 달러) 교통 및 운송 666억 사우디 리알(178억 달러), 수자원·산업 및 농업 분야 610억 사우디 리알(163억 달러) 등으로 배정됐다.

□ 교육부문

총 2,100억 사우디 리알(560억 달러) 지출이 예상되며, 이는 2014년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3년 책정액에 비해서는 3% 증가한 금액이다. 사우디 정부는 지식 기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인적 자원 개발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465개 학교 신축에 30억 사우디 리알(8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기존 1,500개 학교의 교실 증축 및 개보수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여자 대학교 건설, 8개 대학 신설, 교직원 숙소 건축에 투자가 계획돼 있으며, 전문대학 및 기술기관 신설에 52억 사우디 리알(13.9억 달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도 추가 예산 5억 사우디 리알(1억3,330 달러)가 편성됐다. 그 결과 현재 지관, 바하, 나즈란, 타부크, 주프, 샤크라, 마즈마, 타이바, 카심, 타이프 그리고 카리지 지역에 총 18개의 고등교육 도시와 교육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다. 또한 리야드에서는 이맘 무함마드 빈 사우드 이슬람 대학 내에 여학생을 위한 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교육도시, 킹 사우드 내의 여학생 호텔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메카에서는 움 알-쿠라 대학이 신설될 예정이다.



게다가 사우디 정부는 국비지원 해외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기에 쓰인 금액은 약 220억 사우디 리알(59억 달러)에 달하며 현재까지 18만 5천명(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양가족 포함)이 넘는 해외 유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다.

□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

총 1,080억 사우디 리알(288억 달러)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금액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기초 진료센터 설립을 포함, 11개 신규 병원, 2개 의료단지, 11개의 의료센터, 10개의 종합클리닉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33,75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132개의 병원, 6,20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의료도시를 건설 중이다. 사회복지부문에는 20개 도시에 스포츠 경기장 및 관련 시설 건축, 16개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사무소 건립 등과 장애인 지원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인프라, 교통 및 운송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인프라, 교통 및 운송에 총 666억 사우디 리알(178억 달러) 책정, 전년 대비 2.5% 증가한 금액을 배정했다. 3,500 km 도로 신설, 기존 항구 증축 및 현대화, 정박시설 증축, 주바일·안부·라스 알 카이르 산업도시의 인프라 프로젝트, 국내 및 국제선 공항과 철도 개보수 등에 402억 사우디 리알(107억 달러)투자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33.7% 증가한 금액이다.

□ 수자원, 농업, 산업, 기타 자원

총 610억 사우디 리알(163억 달러) 배정,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댐 건설, 담수화, 대수층 개발(지하수), 수처리 및 관개 네트워크 개선 등에 총 330억 사우디 리알(88억 달러)투입 예정이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 및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도시에 착수될 예정이다.

곡물 저장고 신축 및 증축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 특별 금융지원기관 및 정부금융 프로그램

일자리 확대 및 미래성장 촉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펀드, 사우디산업 개발펀드(SIDF), 저축은행, 농업 개발펀드, 공공투자펀드, 정부대출 프로그램 등에 853억 사우디 리알(227.5억 달러) 투자 예정이다. 위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대출금액은 현재까지 약 5,375억 사우디 리알(1,433억 달러)에 달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 가속화

사우디 정부는 70년대에 발발한 1, 2차 오일쇼크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었지만, 이를 비계획적, 비효율적 집행으로 낭비했다.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풍부한 재정을 확보한 사우디 정부는 과거를 교훈 삼아 유가 하락 및 석유 고갈 대비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존 ‘석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존 산업의 다변화(diversification)’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은 석유화학산업에 투자, 기존 원유수출 위주의 단순 산업에서 원유정제 및 공정 추가를 통해 석유제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켜 수출을 증대에 기여하고, 자국 내 2차 산업과 연계해 2차 생산품으로 만들어내는 석유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2004년에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된 바 있다.



또한 산업 다변화 정책은 오일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투자, 발전, 담수, 화학 및 제조 등 기간산업, 그리고 의료, 금융, 교육, IT 등 신성장 산업과 더불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 장기적으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으로 인해 자금의 사용처가 많아지자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발전이나 담수, 수 처리, 화학 등 기간산업분야는 주로 BOT형식의 민자사업이나 혹은 민간정부 합작형태인 PPP형태로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하고 있으며 신성장분야 등은 정부에서 직접 재원을 확보 집행하는 이원화 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제조업 등 비석유부문 투자 확대

현지 여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초점을 맞추게 될 2014년 주요 달성 과제는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생산성 향상, 산업·경제구조의 다변화인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3분기 즈음부터 사우디 정부는 인프라 구축, 광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인프라 구축, 지식기반 경제사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교육 시스템 개선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ICT부문 투자 확대

압둘라 국왕의 인재육성정책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교육시장은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임에 따라 2014년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학력 전문가를 요구하는 지식기반 경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들

은 심도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이러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등교육 학습 희망자를 수용하는 데 현재 교육시설 수가 부족한 상황에 이러닝 콘텐츠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 Technology)가 IT산업을 국가개발계획 중에서 과학, 기술혁신분야 개발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ICT 분야에 대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인프라 확충

사우디아라비아는 도로, 교량, 철도 건설 포함하는 총 77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다. 리야드 메트로 건설과 도시 간 고속 열차망 구축이 이 프로젝트 해당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CC 전체의 인프라 개발 규모인 1090억 달러의 70%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2014년 경제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장벽

자국인화 정책(Saudization)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란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약 600만 명으로 2013년 기준 전체 노동 인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상이하지만 최대 75%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우디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 성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9월, 사우디인을 고용하지 않는 레드 존(red-zone) 기업 17,000개사에 대한 캠페인 계획하며, 그린 존(Green-zone), 플래티넘 존(Platinum-Zone)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레드 존(Red-zone) 기업에 대한 조치로, 이를 통해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사우디 내 레드 존(red-zone)에는 총 17,314개사가 외국인 노동자 241,5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000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적발된 상태이다. 또한 2014년 10월 25일부터, 옐로우 존(Yellow Zone) 소속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민간부문에서 외국인 고용비율을 줄이고 사우디인 고용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옐로우 존(Yellow Zone)에 속하는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시, 비자, 스폰서십, 취업허가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블루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두 달에 한번이상 노동부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 및 채용 가능 ○두 달에 한번 외국인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기업등록(OR) 등 각종 면허갱신 1년간 유예
그린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두 달에 한번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 가능 ○외국인근로자 이카마(Iqama, 장기체류증)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갱신 가능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옐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옐로우 기업 선정후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6년 이상 근무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불가
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스카우트 및 채용직종 변경 불가 ○CR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 행위(Visa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이까마 취득) 및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스폰서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외국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스폰서 관련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단행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고용자까지 불이익을 받는 등 그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프로젝트 진출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스폰서 관련 정책 및 정부 방침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 또는 비 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수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까마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 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2년 - SAR 80 / 5년 - SAR 200 / 10년 - SAR 400의 금액을 ATM기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색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료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또 다른 운전 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면허증 신청을 완료 후 면허시험을 치르고 다시 등록 건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종종 운전면허증 신청시 공무원이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준다. 이 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정도이며, 주중 3시~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하다.



개선실적

사우디 운전면허 취득 개선

그동안 사우디는 우리나라 남성의 운전면허를 사우디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각 지방 교통국(Traffic Dept.)의 재량에 따라 그 교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한 결과, 일부 지방의 경우 운전면허 교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사우디 교통청과의 교섭을 통해 2011.3월부터 사우디 전국의 모든 지방 교통국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신청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세부규정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수단

수단 경제 개요

경제 개요

수단은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유전수입의 70-80%를 상실한 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3.2%(2011년), -6.4%(2012년)을 기록하였고, 2013년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바, 3.9%(2013년), 2.7%(2014년)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IMF 전망) 환율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표방하지만 중앙은행의 대달러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사실상 고정 고시체제이며, 2011년 1달러 대비 2.7 수단파운드이던 환율은 5.8파운드(2012년)를 기록하고 2014년 10월 현재 6.0파운드로 지속 상승중이다. 참고로 암시장에서는 9파운드선에 달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인플레이션은 환율인상 및 조세인상으로 35%(2012년), 40.3%(2013)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왔으며, 2014년에도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 17%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약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 프로그램(2012-2014)에 따른 정부지출 및 수입축소와 수출증대 프로그램에 의거,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부족한 외환보유고와 외환수입원 부족 및 각종



경제제재, 부패 등이 수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외교역 현황

대외교역의 경우, 아랍국이 최대 수출국(76%), 중국이 최대 수입국 (18%)이며, 교역규모는 아래와 같다.

■ 수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3분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96.9	-17.8	33.6	-65.3	50.1	8.4
수입	92.4	-8.3	94.8	2.6	74.9	-4.1
수지	4.5		-61.2		-24.8	

출처: 수단통계청, 2013년은 전년 동기 대비

산업구조

수단 정부는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중점육성하려 하고 있다. 산업구조를 보다 들여다 보면 농업이 약 49%, 제조업 16%, 서비스산업이 35%를 각자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오일머니 상실 후 광업 및 농업이 수단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바, 산동물·가축/고기, 참깨 및 면화 등의 농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금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단은 2014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크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표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약을 받고 있다. 농산물과 非 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인데 반해 非 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 품목별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최대 관세율(%)	수입 비중(%)
Animal Products	36.9	40	0.1
Dairy Products	39.3	40	0.4
Fruit, vegetables, plants	36.2	40	0.5
Coffee, Tea	30.8	40	0.1
Cereals & Preparations	25.4	40	2.7
Oilseeds, fats & Oils	28.5	40	2.7
Sugars & Confectionery	25.3	40	0.8
Beverages & Tobacco	40.0	40	0.4
Cotton	3.0	10	0.0
Other agricultural products	24.8	40	0.1
Fish & Fish products	39.2	40	0.0
Minerals & metals	23.4	40	6.1
Petroleum	9.7	10	0.3
Chemicals	6.2	40	10.7
Wood, Paper, etc.	22.9	40	4.2
Textiles	23.3	40	1.8
Clothing	40.0	40	1.4
Leather, footwear, etc.	25.6	40	2.9
Non-electrical Machinery	7.8	40	25.4
Electrical Machinery	16.3	40	18.8
Transport Equipment	12.9	40	18.0
Manufactures, n.e.s.	22.4	40	4.9



수단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의 창설 멤버로서 COMESA 회원국 간의 모든 수출입 거래는 무관세 대상이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과 수출에 대해 모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세는 1%에서 20% 사이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서 12%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사치품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높은 부가세 적용을 통해 수입을 금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수입 부과금 등으로 명목적으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최고관세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관세 및 부과금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수시로 변화하는 지침 등의 이유로 실제 부과되는 관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예: 중고 자동차, 담배 등).

통관

수입업자는 통관시 im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역허가서(quarantine license, 필요시),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SSMO) 제출 요구 서류(필요시), 은행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및 부과금을 완납하면 수입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단의 통관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통일된 규정의 미비로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책정을 위한 제품의 기준 가격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또한, 관세 양허를 통해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검사 절차와 더딘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간접 부대비용으로 면세 효과가 반감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투명한 세관 행정 절차 및 처리 지연은 각종 수입 규제와 함께 수단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장 개설 통제 및 외환 통제

수단에서는 심각한 외환 부족과 무역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3년 품목별 연불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는 지침이 통과 되었다. 연불 신용장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수단 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수입 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수입품의 가격이 미화 10,000달러 이상 일 때에는 은행을 통해 매 건당 import license를 승인 받아야 한다(단, 1만 달러 이하이고 기계부품으로 항공 화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수단 수입업자들이 발행한 신용장 개설에 따른 어려움과 열악한 외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 내 수출업자들은 물품 선적에 앞서 수출 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현금 거래를 하거나, 신용이 우수한 제3국 은행이 보증한 신용장을 근거로 수단 측 업자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을 통해 수출 대금 관련 금융 사고를 예방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국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수단은 WTO 비회원국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에 명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단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제품인 알코올 음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및 중고의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은 대표적 6가지 종류의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 위조 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 이스라엘에서 반입되는 물품들
-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 2014년 기준 수단의 수입제한 품목 리스트

수입제한품목(HS CODE 6단위 기준)			
HS Code	품목명	HS Code	품목명
220300~220890	모든 술 제품	901811	중고 의료기기
930110~930690	모든 무기류	901812	
950430	도박용 제품	901813	
950490			
360410	화약류	901814	
870120~870590	중고차(*)	901819	
847130	중고 전자제품	901841	
850811		901849	
850940		901850	
850980		901920	
851711		902212	
851712		902213	
852580		902214	
852712		902219	
852713		902221	
852791		902229	
852792		902230	
852841, 852851			
852871,852872, 852893			

* 중고차는 당해 제작년도만 일부 수입가능

또한 수단 관세법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식품, 의약품 등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단 정부는 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로 2010년 9월부터 당해년도에 제작되지 않은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1년 1월에는 플라스틱 제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물 제품,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수,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트, 가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제품, 실크 및 관련 제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품 및 다용도 분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 수입 자유화 발표가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인증제도

특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유럽의 CE마크, 또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상이하다. 프로젝트 수주 또는 정부 입찰 시에는 ISO획득 여부 해당 품목별 주요 인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 담당관리 부처

- 기관명: 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 (SSMO)
- 주소: P.O. Box 13573 Khartoum Sudan/ Baladia Street, Khartoum, Sudan
- 전화: +249-1-8377-5247
- 팩스: +249-1-8377-4852
- 이메일: info@ssmo.gov.sd
- 홈페이지: www.ssmo.gov.sd



투자 장벽

수단은 남북 수단 분리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생활 환경 등 진출 여건이 극히 열악한 편이다. 수단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농산물 가공품, 수산업 등 기본 생필품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투자유치 정책은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웃의 이집트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정책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제약, 호텔, 섬유 등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대규모 투자 진출이 없었다. 미국의 금융제재 및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수단은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또는 특수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내수시장을 위한 소규모 투자 진출을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이 투자 대상지로는 위험 지역에 해당되고 있다.

수단은 아직 세제 체제 및 세무서 행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투자시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 일부 소규모 자영업 수준의 투자 및 플랜트, 발전소, 정유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 또는 프로젝트 진출 정도가 가능한 정도이다. 지금은 정권투쟁의 향배, 미국 및 국제기구의 정치경제적 제재 해제 여부, 다르푸르 지역 안정과 남부 2개주(South Kordofan, Blue Nile)의 무력충돌 추이, 국내 치안 상황, 기투자한 기업의 영업정상화 여부 등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원유개발이나 대규모 사회 간접시설 프로젝트,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단의 투자환경은 아직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제약 요건과 많은 위험 부담이 있으며 경쟁국에 비해 투자 유치 여건이 극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다.

-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 미 국무부는 여전히 수단의 물자 및 자본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 중임. 따라서 우리 기업의 진출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재원의 부족: 원유수출로 외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쟁수행과 이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부진함. 다만 석유 생산이나 채굴권을 담보로 대형 프로젝트 진출 여지는 남아 있음.
- 건설자 자본조달 방식: 수단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건설자 자본조달방식(BOOT)으로 Project Financing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이 참가하는데 제약이 있음
- 금융조달의 어려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의 지급 또는 수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렇다 할 금융조달 방법이 없으며 외환통제가 심함

참고로,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한 ‘Doing Business Report 2014’에 의하면 조사 대상 189개국 중 153위를 차지하여 투자환경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Doing Business 는 수단의 2015년 투자 환경은 현재보다 7위가 떨어진 160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전력허가 부분에서 2014년 115위에서 21단계 하락하여 2014년 136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수투자자보호와 계약강행부문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국외무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는 랭킹 하락을 예상한다. 랭킹에 포함된 189개국중 건설허가와 소수투자자보호, 국외무역, 채무해결, 계약강행, 자금조달 등이 특히 최하위며, 재산등록(45위(2014), 46위(2015))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100위 밖에 있다.

사회보장제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상관없이 공영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액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단 내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체를 수령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 노동유연성

저개발 국가의 진출 시 이점의 하나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자원, 상대



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노동정책 등이나, 수단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으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노동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진출 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문화적 차이, 축적된 경험 미흡 등의 이유로 낮은 노동 생산성

- 근로자 위주의 노동관계법 및 운영으로 낮은 노동유연성
- 해고 시 1개월의 통상임금 및 6개월의 기본급+생활수당 지급
- 최저 15일의 연차휴가(통상적으로 22일의 연차휴가)
- 병가의 통제 곤란으로 근로의 연속성 문제

* 해외인력의 취업

현지 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해외 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내국인의 취업보장을 장려하고 있어 해외인력의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분 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법률상 지분 소유 제한은 없으나, 투자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지분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있어 투자법이 아닌 관련기관(Ministry of Foreign Trade)의 내부규정에 의한 외국인 규제가 존재한다.

수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지분이 51%를 넘어야 하고, 외국인이 지배 주주(51%)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수입 업무라 함은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체가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사·사무소의 설치상의 제한

설치상의 제한은 없으나, 활동상의 제한이 있다. 지사·사무소의 설립은 특정 프로젝트 이행 기간 동안만 활동 가능하며, 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Ministry of Foreign Trade로부터 수출입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 지사의 내국인 지분이 51%를 넘지 않을 경우 관행상 설립허가가 어렵다.

국산화 의무 부과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수단의 경우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 취득에 통상 평균적으로 271일 소요되며 이는 세계 평균 218일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규정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 허가 당국과 관계가 좋은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단기간 내에 허가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촉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낮은 가격에 정부소유의 산업단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지를 설계도와 함께 제출하면 투자청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부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고, 투자청에서 몇 곳의 후보지를 제시하면 이 중에서 최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타 부지 불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세 제도

수단은 2007년부터 기업 설립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산정 방식도 국세청 자체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에서 2007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 자체 신고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무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가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가 있다. 세율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수단 이지만 아직 세무 행정 데이터의 전산화 부족 및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법인 부과 세금 요약표(연간 기준)

세제	과세기준	세율
Business Profit Tax	순이익	15%
Zakat	(유동자산-유동부채) X 무슬림 Share	2.579%
Local Dues	소유 건물 등	0.5~0.6 SDG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하 되었으며 인하 배경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광업, 석유개발 및 유통기업은 35%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2007년 세법개정시 세율 15%로 인하 및 부과납세제도에서 Self Assessment라는 자진신고제도로 변경, 시행 중인데 변경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수단 내 기업의 자체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이에 따라 작성한 법인세 신고서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손금부인항목을 가산하여 계산한 Taxable Income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 세액을 산정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누락된 과세표준 적발시 3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슬람 세제는 회사 주주 중 무슬림이 있을 경우 내는 세금으로 주주 중 무슬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세율은 2.579%이다. Zakat은 아래 2가지 계산 방법 중 금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산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통상 ①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세무 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①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text{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times 2.579\%$

② $[\text{자본금} + \text{이익잉여금} + \text{준비금} + \text{충당금} - \text{순자산}] \times$
 $\text{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times 2.579\%$

지방세는 사업장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m²당 0.5-0.6SDG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17%이나 의약품 등의 생활 필수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단은 신용카드 사용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하고 현금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 많은 편이다.

개인 소득세는 15%이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10%이다. 사회보장세는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성격으로 근로자 및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기본급여(Basic Salary) 및 각종 수당을 과세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개인이 각각 17%, 8%를 부담한다. 이슬람세인 Zakat은 무슬림에게 부과되고 계산방식은 $\text{SDG } 400 \text{ 이상 급여} \times \text{무슬림 Share} \times 0.257\%$ 로 산정되나, 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인지세(stamp duty)는 회사가 부담하며 월별 근로자 1인당 0.2수단 파운드를 부과한다. 아울러 회사의 노조 설립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조합세를 부담하며 월별 근로자 1인당 1수단파운드씩 부과한다.

수단 세무행정의 문제점으로는 세금신고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의 서류처리가 수기로 처리되고 있어 서류 보관처나 관리가 소홀하여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많다. 따라서, 세무 분쟁



방지를 위해 제출 서류의 철저한 보관이 필요하다. 담당자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세무서를 찾아갈 때 마다 담당자가 변경되어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수단의 세법은 법규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극도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상기에서 기술한 각종 세율 및 종류는 수단 투자기업의 실무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개괄적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세무사를 통해 꼼꼼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장벽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1566, 1591)는 다르푸르 지역 반군, 수단정부 및 교전 단체에 대한 무기금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이 수단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방산물자수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對수단 방산물자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수단 내 주요인사에 대한 자산동결을 시행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따른 제한

미국의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는 크게 2007.12월 SADA(Sudan Accountability Divestment Act)에 따른 제재와 그 이전 각종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각종 행정명령(13067,13400,13412)을 통해 미국 국적자가 아닌 개인이(non-U.S. persons) 사전 승인없이 미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수단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단이 원산지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미국 내 수입, 혹은 제3국을 통한 미국 내 수입 시 美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외국인과 거래시 동 외국인이 수단의 통제 하에 있거나, 수단을 대신하여 거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기업은 수단을 대신하여 미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행정명령은 수단의 미국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수단 측 은행과 거래할 경우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금융 거래비용 증가 부담이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상기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 제재를 자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비추어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2014년10월 24일 Obama 미국 대통령은 수단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거한 對수단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 제정된 SADA(Sudan Accountability Divestment Act)는 수단 내 발전(power production activities), 광산채굴(탐사, 추출, 공정, 운송, 도매, 교역 포함) 석유 관련 활동(원유 수출, 추출, 생산, 정제, 공정, 탐사, 운반, 판매, 교역 등 상류 및 하류 부분 활동은 물론, 건설, 유지, 송유관 운영, 정제, 기타 유전 인프라 관련 활동 포괄), 군용 물자 생산 등 특정분야 사업을 행하거나(수단 국가전력청이나 유사 정부단체에서 위임받은 사업을 포함) 동 사업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미 州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투자 자산 회수 및 투자 금지를 승인하는 한편, 미 연방 정부 조달 계약 수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중 미국의 州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일 경우 SADA에 따라 미국내 활동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지재권

수단은 UN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으로 각종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인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특히, 상표권 침해가 다반사이나 수단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수단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Law No.58/1971), 상표법(Law No. 8/1964), 저작권법(Law No. 49/1974)이 있으며 산업 디자인 관련 법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부패 문제

수단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7개국 중 174위를 차지할 만큼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정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한다.

수단의 경우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타 장벽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구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며, 주택 임대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을 꺼린다.

수단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주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 전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에 거주비자를 취득하면 된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이 불가하며, 한국운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을 거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지 경찰의 무지로 필기시험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수단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거래 비용이 높은 편인데 특히 미 달러화의 해외 송·출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수단 내 은행들은 계좌에 달러화가 입금되더라도 달러화 부족을 이유로 현지화로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09년 수단의 한 상업은행은 우리 무역업체에 대한 신용장(L/C) 대금을 국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지급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수단 국내 은행들이 극심한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급 거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수출업자들은 수단 은행 개설 신용장 접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주요 호텔, 상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남수단 분리 독립에 따른 경제 위기 심화

2011.7월 9일 수단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70-80%를 차지하는 남수단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수단 재정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던 원유 판매 수입 비중도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환율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 긴축 재정 실시에 따른 생필품 보조금 삭감 등이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에 투자코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주수단 한국 대사관이나 주수단 KOTRA 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정보를 파악 후 신중하게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및 세계 7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 공급국인 UAE의 경제는 세계 유가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하여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UAE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Safe-haven)이라는 인식에 따라 자본유입이 강화되고 있으며,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현행 미비한 법체계를 보완하고, 기업 및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경쟁법(Competition Law), 원산지증명서법(Certificate of Origin Rules Law), 중재법(Arbitration Law)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법(Small & Medium Enterprises Law)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49%인 외국인 소유지분을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UAE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산업영역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과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외국인 소유지분을 상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무역동향

IMF에 따르면 UAE의 2013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3,790억달러로 추정되었다. 주요 수출 증가 요인은 비석유부문의 수출 호조와 유가 상승이다. 수입은 2,420억달러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다.

IMF는 2013년도 UAE의 가스를 포함한 석유 부문의 수출은 1,230억달러, 비석유 부문 수출 및 재수출은 각각 1,080억달러 및 1,480억달러로 추정하였다.

■ UAE의 교역동향

(단위: 억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2,119	10.3	3,020	42.5	3,490	15.6	3,790	8.6
수입	1,656	5.5	1,950	17.8	2,170	11.3	2,420	11.5
수지	462	31.3	1,070	131.6	1,320	23.4	1,370	3.8

출처: IMF, UAE 경제협의회보고서(2014.7월)

한편, WTO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세계 교역에서 UAE는 수출 20위, 수입 25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도에 UAE의 수입 대상국은 1위가 인도이며, 이어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로부터는 69억달러를 수입하여 UAE의 수입국가 중 7위를 기록하였다. 인도의 대 UAE 수출은 귀금속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다.

■ 2012년 UAE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1	인도	20,491	11.27
2	미국	18,518	10.19
3	중국	15,945	8.77
4	독일	9,971	5.49
5	일본	9,643	5.31
6	터키	8,868	4.88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7	한국	6,683	3.68
8	이탈리아	6,398	3.52
9	영국	5,589	3.08
10	스위스	5,145	2.83

출처: UAE 연방통계청, 1달러≒3.67디르함 적용 환산치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지역 2위 수출대상국이다. 이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와 자동차, 모바일 폰, TV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 우리나라의 對UAE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5,487	10.2	7,268	32.5	6,862	-5.6	5,738	-16.4
수입	12,170	30.7	14,759	21.3	15,115	2.4	18,123	19.9
수지	-6,683	54.2	-7,492	12.1	-8,254	10.2	-5,215	-36.8

자료: KOTIS

무역제도

1996.4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UAE의 무역제도는 국제무역규범에 따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경제부는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절차는 관련 부처의 입법안이 연방평의회(FNC)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최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프리 존(Free Zone)이 UAE의 수출



중심지로서, 수출 및 재수출 기업에게 물류, 행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프리 존의 기업들은 UAE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라이선스, 스폰서 고용 등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편, 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통용된다. 단, 자동차, 에어컨 등은 GCC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며, 식료품 및 의약품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유통 승인을 받아야 한다.

UAE를 포함하여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할랄 인증은 공인된 이슬람협회에서 발행되며, 발행된 증명서는 세계 각국의 UAE대사관, GCC 또는 무슬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에서의 할랄 인증 공인 이슬람협회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이다.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며, 담배는 100%, 주류는 50%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한 후, 관세 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최소한 51% 소유)만이 자격이 있다. 수입 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 2단계: Bill of Entry(BE)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Delivery Order(D.O.)
 - Bill of Landing(B.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를 날인
- 5단계: 반출 확인서(Out Gate Pass) 및 운송차량 통과증(Vehicle Pass) 발급
- 6단계: 반출



수입규제

UAE의 경우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은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 부과료가 있으며,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예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업체나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

지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 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International Tender)과 국내입찰(Local Tender)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UAE의 정부조달 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UAE내 생산제품으로서 UAE 국적인의 자본이 51% 이상이고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경우에 외국제품에 비해 응찰가격의 10%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점과,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은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 상표권(Trademark):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상표권 보호 기간: 10년
- 저작권(Copyright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단, 응용 미술(applied art) 및 방송용 저작물의 경우 인쇄 및 방송일로부터 각각 25년 및 20년
-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보호 기간: 특허 20년, 실용실안 10년, 의장 10년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Commercial Crime De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간·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 이상 1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투자여건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진출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관세제도, 세금제도 및 무역장벽의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환경 하에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 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 존은 면허, 외국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민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두바이를 중심으로 프리 존이 크게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 존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제·개정, 카르텔 방지 등에 관한 경쟁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두바이 경제 위기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을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UAE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과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소유지분을 상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Bilateral Preferential Agreements)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11월), 요르단(2001.3월), 레바논(2002.3월), 모로코(2002.3월) 및 이라크(2002.4월)와 체결했으나, 현재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현재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1월 발효, PAFTA), 싱가포르(2008.12월 서명), EFTA(2009.6월 서명), 뉴질랜드(2009.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일본·호주·EU·인도·터키·파키스탄·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가.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Business Licensing)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프리 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Silent Partner)/파트너 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를 선임할지는 사업면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업기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스폰서(회사 또는 개인)의 경험, 인지도 및 보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들어 UAE는 인접한 바레인, 쿠웨이트의 스폰서 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아 동 스폰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당분간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나.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소유권

- 최소 2명, 최대 50명의 유한책임을 가진 주주로 구성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 매니저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허용(단,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함)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내에서 별도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UAE 로컬 스폰서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함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⑧ Sole Proprietorship/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⑨ Civil Company/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다. 프리 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 존은 독립된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리 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 존에서는 UAE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 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룸
- 프리 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 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이상 창출될 때 허용
- 프리 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License)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 이 License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 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 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License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License임

라. 제3기관의 각종 인·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한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탈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Social Affairs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Environment & Water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에미리트)

마.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차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가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법인의 증명서
-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본사)의 정관
-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의소 및 주한 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로, 두바이에서 중견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DIFC에서 작성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른 회사설립 절차별 소요시간이다.

단계	추진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1단계	회사명에 대한 승인_DED	1일	AED 100
2단계	정관의 공증_DED	1일	자본의 0.25% 페이지당 AED5
3단계	경제개발부(DED)에 신청서 제출 및 Trade License 획득	6일	부동산 계약금액의 5%+AED 1,000~3,000의 Waste Fee+ AED 480 회사등록비+ AED500 회사명패 승인비
4단계	상공회의소에 등록	2일	AED 1,200
5단계	회사명패 제작	2일	AED 1,000
6단계	노동부 등록	1일	AED 2,000
7단계	현지인 인력 노동부 등록	1일	-
8단계	현지인 인력 General Authority for Pension and Social Security에 등록	1일	-

회계제도

가.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 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ESCA를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다.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



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Review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 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 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Free Zone 과 Dubai Air Port Free Zone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의 경우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가.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소득세는 오일관련 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소득세

□ 개인소득세

UAE에서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아래의 오일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소득세－오일회사

UAE에서 생산되는 오일, 오일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래하는 회사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됨

세율은 일반적으로 5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적인 납부세액

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사와 해당 에미리트와의 사업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인소득세-외국은행의 지점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대체적으로 20%이며, 이 세율은 에미리트마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

두바이, 샤자, 후자이라는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세칙을 가지고 있으나, 아부다비를 비롯한 기타 에미리트에는 외국은행의 지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기타 조세

□ 관세

2003.1.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그러나 프리 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음

□ Social security and pension payments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6)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함

고용인 : 12.5%, 피고용인 : 5%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 부동산 관련 세금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부동산 취득 시 권리의 이전 및 등록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의 2% 세금을 부과함(매수자: 1.5%, 매도자 0.5%)

주거 및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각각 5% 및 10%의 Municipi-



pality Tax를 부과함(현재까지는 두바이에서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천징수세

UAE에서는 이자, 배당, 로열티, 사업소득 등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음

□ 자본이득세

UAE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없음

□ 부가가치세(VAT)

UAE에서는 최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장애,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혼란 등으로 구체적인 도입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세율의 안은 3% 또는 5%의 비교적 낮은 단일 세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예외규정 : 매출 US\$ 1백만 미만, Health and Education Sector 등이 논의되고 있음

UAE의 VAT제도는 GCC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UAE에 도입되면 곧 바로 GCC 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큼

□ 호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호텔 및 호텔아파트(Serviced Apartment)의 객실수입 및 부대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준조세임

Tourism Fee(Municipality Tax) 5~10%(아부다비 6%, 두바이 10%, 라스알카이마 10%, 후자이라 10% 등)에 추가하여 Service charge 10%를 부과함

라.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수입 및 자본의 투자 또는 흐름으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등 현재까지 약 49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3.9월에 체결하였다.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관리

가.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15%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2020년까지 갈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점차 자국민 고용우선 원칙(Emiratization)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도 커 민간부문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향후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향후 UAE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인력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을 일부 직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 은행부문에서는 1998년도부터 매년 4%씩의 UAE 자국민 고용증대를 통해 10년 내 은행업종에서는 UAE 자국민 비율이 40%를 점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내에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국민의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1986)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Ministry of Labour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서 분쟁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현실에서, 저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나. 노동법의 주요내용

□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뉘 수 있다. 무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의 통지

(Notice)를 주고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이 우선한다.

□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Total Wage)으로 나눈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저녁 9시~새벽 4시) 중에 근무한 경우 정상근무시간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한다.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 및 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현재 노동법원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



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 계약 종료(Termination)

고용 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기간 동안에도 고용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무통지 즉결해고(Termination without notice)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불 혹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퇴직금(Gratuity)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2) 근무 6년째부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근로자 연금 제도(Pension & Social Security)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인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 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담액은 15%이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분쟁 조정(Dispute Settlement)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안은 노동법원(Court)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Maid,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급여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대학졸업 후 금융 및 Engineering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국민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4월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초등학교 졸업: 월 3,000디르함
- 중학교 졸업: 월 4,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Maid)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6,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중 사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 및 2년에 1회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중재와 청산 제도

가. 중재 (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1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정함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적과도 같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자의 수, 중재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 조항에는 패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사법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과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중재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경제부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중재법(Arbitration Law)의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오고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참고로, UAE 정부가 제정중인 새로운 중재법안은 국제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나. 청산(Exit)

연방법 No. 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제도가 잘 정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회사들의 청산작업이 수년에 걸쳐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인적·물적 자산의 재배치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부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청산에 관한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해당회사의 채권자들은 감히 부도 또는 회생절차를 시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동의 절차, 청산사실 공개 절차, 노동부·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고지하고, 채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 국내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달 내에 등록하면 된다.
- 파산법원 판사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법원 결정으로 채무변제금액과 기일을 다시 정하여 그에 따라 정리한다.
- 파산기업인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알리지 않고는 UAE를 떠날 수 없다.

알제리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경상GDP(십억\$)		199.2	207.8	208.8	226.0
실질GDP성장율(%)		2.4	2.5	2.7	2.8
물가상승율(CPI,%)		4.5	8.9	3.2	2.7
실업율(평균,%)		10.0	11.0	9.8	9.7
이자율(여신,%)		8.0	8.0	8.0	8.0
인구(백만명)		36.7	37.5	38.3	39.1
경상수지(백만\$)		17,766	12,302	763	-822
	무역수지(백만\$, FOB)	25,961	20,167	9,321	7,959
	상품수출(백만\$, FOB)	72,888	71,736	64,383	62,049
	상품수입(백만\$, FOB)	46,927	51,569	55,061	54,090
서비스수지(백만\$)		△8,805	△7,126	△6,817	△7,210
純이전거래(백만\$)		2,649	3,169	2,800	2,919
외환보유고(백만\$)		183,122	191,597	195,013	196,659
대외채무(백만\$)		6,045	5,643	5,282	4,975
GDP대비順공공부채비율(%)		8.4	8.1	7.1	8.1
통화증가율 (%)	통화(M1)	24.1	7.6	7.4	9.5
	총통화(M2)	19.9	10.9	8.4	9.2

* 자료 : EIU, 「Country Report(Algeria)」, 2014.9월, (e) 전망치

일반 경제 현황

알제리의 2013년 실질 GDP는 2.7%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GDP(PPP 기준)도 2010년 8,093\$로부터 2013년 8,773\$로 증가하였다.

소비자 물가도 알제리 정부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인플레이 억제정책의 효과로 2012년 8.9%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13년 3.2%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최근에는 10%대 이내로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무역현황을 보면, 알제리의 2013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48.5% 감소(2012년 215억불→2013년 111억불)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규모 감소의 원인은 전체 수출의 96.7%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 수출 감소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수출은 659억\$로 2012년 대비 8.3% 감소하고, 수입은 549억\$로 2012년 대비 8.9%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3년 석유가스 수출은 638억\$로 전년 대비 8.7%가 감소하였다. 석유가스 수출 감소는 주요 시장인 유럽의 경기침체 및 수요 감소는 물론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확대로 인해 대미국 석유가스 수출이 대폭 감소(12년 119억불→13년 53억불)한 것이 원인이다.

2013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50% 가까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부채도 지속 감소하는 등 대외 지불 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었다.

그동안 WTO 가입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간의 의견차이가 큰 대표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최근에는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14.3.31)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제11차 작업반회의(13.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4선 도전에 성공한 Bouteflika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5.7)에서 알제리가 WTO 가입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으며, 신임 Benyounes 통상장관도 통상부의 최고 우선과제로 WTO 가입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어 이전보다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제리-EU 제후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일정 연기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

유무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분야>

- 25가지의 해당 농산물 의무수입 할당제 취소
- 우유, 마가린, 치즈 등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의무수입할당제 추가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당초 협정안의 36개 농산물 의무수입할당제 폐지

<공산품 분야>

- 2012.9월 관세철폐 예정이던 1058개 공산품에 대한 재검토
- 자동차·부품 등 82개 민감품목의 부분적 관세복원 및 철폐 시기도 4년을 연기하여 2009년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절단기,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사 시기 2년간 유예
- 페인트류, 삼푸, 플라스틱, 목재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2071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 부분적 관세 복원
- 화장품, 종이, 의류, 신발 등 617개 품목 관세인하를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3년 유보

또한, 협정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에 상주하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수입 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규제는 2005.9월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1월 이후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에 도입한 추가임시세(droit ad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 도부터 매년 12%씩 세율을 낮추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對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 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만 디나르(약28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 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조세

세 목	세 율	비 고
관세(tarif douanier)	0%, 5%, 15%, 30%	원자재 5%, 반제품 15%, 완제품 30%
특별소비세(TIC)	10~100%	추가특별세(TSA)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목적
부가가치세(TVA)	7%, 17%	식량 7%, 차량·전자제품 등 17%

주: 세관수수료(RD) 및 세관서류양식세(RFD)는 2004년부터 폐지

통 관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소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 및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



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송연 100개피 또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향수	○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 품목이 아닐 것 ○ 알제리내 반입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 100mg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 모든 외화는 입출국시 신고의무화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휴대품	통관기준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무기·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반입 가능 ○미풍양속 저해 물품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및 악세사리, 화장품, 보석류, 빗·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필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통조림 포함), 도자기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류·필름·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시설·살충제 및 동물의약품(농업부·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식물 수입 :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 보건당국의 허가
- 화학약품 수입 :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역 방안
- 정기간행물·특별간행물 :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모든 무기류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개정법 시행 이후 2009.10.26일 상무부 장관 El Hachemi Djaaboub의 발언에 의하면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11.2일부로 알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이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선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screen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80% 정도는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출 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의도한대로 통관 시 screening이 정상적으로 될 지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 규제

2009.7.26일 대통령 칙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정 재정법(2009.7.26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등 상품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제품 품질검사

알제리는 2005.10.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의 원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 거절증을 발급하고 알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수입업자는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될 경우 2005.10.12일 행정명령 제 05-467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로 수입업자는 알제리 각 시도의 상업 집행부에 수입거절 통지를 받은 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입거절 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입거절 취소결정이 유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2단계로 알제리 지역 사업집행부에 부적합 판정제품의 용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3단계로 알제리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기타 표준·검사Labeling

현재 표준·검사·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만 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No.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의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No. 90-240 du 4/08/90). 식품류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투자촉진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그동안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1994년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 법령: Ordinance No. 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No. 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Official Bulletin of Patent(Bulletin Officiel des Brevets)를 통해 공표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No. 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No. 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 디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적·예술적 재산권(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No. 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National Office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ONDA)에서 관리한다(www.onda.dz).

외국인 투자 환경 및 관련 제도

투자 여건

투자관련 법령은 ‘Ordinance No. 01-03 of August 20, 2001’이며, 투자의 정의는 제4조에 그리고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제14조에는 내국민대우 조항을 규정한 외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투자국과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추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해 수입시 L/C 제출 의무화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외국인 투자시 합작투자 의무화(자국 기업 51% 지분 보장), 공공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 인센티브를 1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 자국 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 보호

상기 투자법령 제15조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법의 개정 및 폐지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제16조는 징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의한 징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fair and equitable compensation)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와 알제리 정부와의 분쟁발생시 재판 관할권은 알제리 법원에 있으나, Legislative Decree No. 93-09 of April 25, 1993에 의해 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다음 협약에 가입하였다.

- Convention of June 18, 1965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rtaining to investments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s of other



countries(Ordinance No. 95-04 of January 21, 1995)

- Convention of September 1986 pertaining to the cre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Ordinance No. 95-05 of January 21, 1995)

과실 송금

Ordinance No. 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 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에서 포착된다. 부테플리카 현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시장 개방, 폭넓은 투자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왔으나 Djazzy사의 제3국 매각 등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제리 국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지나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알제리 내 산업생산을 장려하고자 2009년에 이어 2010년 추가재정법(LFC)에서 보호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치들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 검증서를 발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구입, 서비스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수단 및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건설기기에 대한 특별 종량세 부과

2010.9.1일자로 알제리로 수입되는 건설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4,054~9,459달러의 특별 소비 종량세가 부과된다.

* 특별소비 종량세

-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소비자가 품목별로 약 4,000~9,000 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담을 규정

- 과세액 30만 디나르(약 4,054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841370	
기타펌프	841380	관세 30%
수지식취관	846810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846820	
납땜용, 용접용의 기기	846880	
납땜용, 용접용의 부분품	84689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04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8515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870540	



- 과세액 50만 디나르(약 6,757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증기,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84243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원치	842531, 842539	
타워 크레인	84262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842630	
기타 크레인	842641, 842649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1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20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31~9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2840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 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84286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842890	
항타기와 항발기	84301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우	843020	
시추기	843049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끼기, 형입기, 성형기 등	8474	
셀매	871680	관세 30%

- 과세액 70만 디나르(약 9,459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842919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20	
스크레이퍼	842930	
탐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4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기계	842952	
기타 메커니컬 셔블	842959	
탐핑용, 콤팩팅용 기계	843061	

*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
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 VAT 17%

(3)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1월부로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Djamel Ould Abbas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동 규제는 대통령령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몇몇 조치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 기구를 설립하고 의약품 전문가와의 면담 강화를 통한 실제 의약품 시장상황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알제리 의약품시장을 보다 더 잘 조직화하기 위한 보건부 산하 의약품 총괄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곧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국내 생산 및 조달을 목표로 한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금융혜택 마련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수입금지 품목 다변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자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4.28일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제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규제의 구체적인 적용 절차 등 이행규정은 재무부와 상무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동 투자 방식과 관련하여, 당해 입찰 사업 수주후 시공과정에서 조인트 벤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나, 수주 사업과 별개의 투자 사업을 동일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댐 입찰의 경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댐 공사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포함되지 않는 댐 관련 자재 생산 등을 위한 투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향후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투자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카테고리의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목적으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TVA)를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투자 이행 단계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의 이행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적용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10.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항이 신설되었다.



투자촉진 기관

(1)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stissement)

총리가 주재하며 투자관련 부서(재무부, 통상부, 산업투자부, 관련 지자체 등)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진흥 전략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관련 인센티브 선행조건 수립
- 특별 인센티브 등 투자지원과 촉진을 위한 결정 및 조치를 제안

국가투자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구는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투자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는 투자개발청(ANDI)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위원회의 구성·조직·임무는 Decree No. 01-281 September 21, 2001에 규정되어 있다.

(2) 투자개발청(ANDI)

ANDI는 법인격과 독립재정을 가진 기관으로 총리 산하기관이었으나 최근 산업 및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투자촉진부(Ministère de l'Industrie et de la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다.

AND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개발·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3)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월라

야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하였다. 이것은 AND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 번째로, 지방의 단일 창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두 번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 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 한다. 세 번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 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ND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No. 95-22 of August 26, 1995가 제정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Ordinance No. 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영화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축소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No. 01-04 of August 20, 2001의 제17조는 ‘공기업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업



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prises)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중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영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투자촉진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서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회사인 Sa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개 기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민영화 대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주식거래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을 입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업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되고, 500명이 넘는 기업의 경우는 산업투자촉진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에서 제안의 수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baosem.com>

(에너지·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자원을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9.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지역, 전기·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흥구역, 문화·고고학적 보호구역

또한, 추가재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행정명령 조항을 보충하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증명서 발급의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기한 한 달 내에 공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내·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고용

알제리 진출 기업 및 기관이 알제리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소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추천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기금(CNSS)에 가입 후 현지 고용인을 등록해야 한다.

현지 고용인에 대해서는 3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가 25%, 피고용자가 9%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2) 외국인 고용

기업 및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먼저 주(Wilaya) 노동국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현지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 또는 임시노동허가(3개월 이내 근로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블록비자→취업허가→노동비자→노동허가 등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 사업장 설치 근거서류(상업등기부 등), 사회보장세(CNAS) 및 조세 납부관련 서류, 고용예정인 현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자격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블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블록비자 발급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근로자의 자격 및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발급기간은 3~6주가 소요된다.



3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자국 소재 알제리대사관에 취업허가서, 고용계약서, 본국귀환 보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제리에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단계로 근로자는 사진, 건강검진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여권과 은행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허가신청시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타의 경우 거주허가신청 사유서 및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 취득은 양국 주재대사관의 긴밀한 협조로 1주일 내에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알제리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9월 ‘평화 및

국민화합 현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테러세력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방 이동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랑스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8%를 석유·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상품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알제리 에너지광물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알제리 통상부 산하 공기관인 알제리 수출진흥기관(PROMEX)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기능을 확대 개편중에 있다.

■ 무역·투자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부 (Ministère du Commerce)	www.min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PROMEX)	www.algexport.com www.prom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개발청(ANDI)	www.and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nergie et des Mines)	www.mem-algeria.org	원유가스 산업정책 국제입찰
국영석유회사 (SONATRACH)	www.sonatrach-dz.com	원유·가스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http://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lexalgeria.net/>

<http://www.joradp.dz/HFR/Index.htm>

앙골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부(Ministério do Comé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무역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기 위해 무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앙골라는 2002년 내전 종식 이후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2002~2004년 동안 평균 17%에 이르던 수입관세를 14%까지 인하하였으며 수출관세도 대부분 폐지했다. 이와 함께 2005.1월 시행된 신관세법을 통해 관세장벽 제거를 가속화하고 있다.

앙골라는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앙골라 정부는 2005.1월 신규 관세제도를 발표(같은 해 4월부터 발효)했다. 앙골라 수입관세는 2%, 5%, 10%, 15%, 20%, 30% 등 6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관세법을 재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특히 △ 맥주, △ 과일주스, △ 토마토, 양파, 마늘, 콩, 감자 등 야채 및 △ 벽돌, 지붕 자재 등 건축 자재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동시에 앙골라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입부과금

수입부과금으로는 clearing cost(2%), 소비세(2~30%), 수입인지세(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있다.

통관절차상 장벽

(1) 수입 절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2) 통관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1000미불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현재 앙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터미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는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선적전 검사 법령을 13.6.11일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 하였다. 선적전 의무 검사는 7.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 수출에 관계 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약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검사절차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공개 부족,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대부분의 정부입찰공고는 관영신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가맹국이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관할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앙골라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대양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양골라투자청(ANIP)에 투자신청서류를 제출, 양골라투자청(ANIP)과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양골라 시장 진입할 수 있다. 동 투자 계약 체결시 ANIP 및 투자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인센티브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으며, 백만 미불이상 5백만 미불미만 투자의 경우 내각장관회의, 5백만 미불이상 투자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대통령주재)의 승인 필요하다.

양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포르노관련제품, 도박장비, 유독성제품, 의약품 등이다.

양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암묵적 제한

2011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골라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해외투자 기업은 100만 불 이상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 법인을 설립하거나, 양골라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세워야 진출이 가능하다.

(2)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양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



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3)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현지 관행상 일정 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앙골라 투자법상의 투자승인기간은 백만~5백만 미불 투자의 경우 최대 60일간의 심사를 걸쳐 앙골라투자청(ANIP)에서, 5백만 미불 이상의 경우 최대 75일간 심사를 걸쳐 내각회의에서 투자승인이 나와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100만 미불 미만 투자는 2011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종종 본국으로의 외환 송금에 이유 없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앙골라 현지의 외환사정에 따른 제한으로 현지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왕왕 발생한다. 또한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의해 확인을 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시장 접근이 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로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화되어 전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바,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기 및 식수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 국내 제조업은 음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부품 및 중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앙골라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의 주택임차료가 월 10,000달러 이상 수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및 사무실 유지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종식 후 안정적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정 개정, 투명성 확보, 부패 척결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노력 중이며, 통화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물가수준도 2012년 이후 한자리수로 안정화 추세이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개관

에티오피아는 3,000여년 전부터 독립국가를 유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의 전쟁, 이후 멩게스투 정권 당시(1974~1991년)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시장 경제가 많이 악화된 상태이다. 이후 멜레스 제나위 총리(1991~2012년)의 체위 기간 동안 강력한 시장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구대국(나이지리아에 이은, 2013년 기준 9,387만명)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그 시장 규모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환율절하 및 물가상승(연 약 20%)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유화 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2011년 7.3%, 2012년 8%, 2013년 7.1%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정치적인 문제도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2015년까지 연평균 11%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에티오피아 국가성장전략인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를 발표(2010년)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II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건축자재, 의약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9,400만 달러 규모를 에티오피아에 수출하였으며, 커피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2,500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커피 원산지로서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늘고 있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이점과 2013.6월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 개설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참여 동향

에티오피아는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교역 원칙 (Everything But Arms)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및 쿼터 제외를 보장한 원칙에 가입하여 유럽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s, AGO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역이 용이하다. 또한 2013.8월 AGOA 포럼이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어 이 법이 연장되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가 적용되기도 한다. 관세 면제 대상 기계/장비는 아래와 같다.

■ 관세면제 대상 기계 및 장비

농업 투자사업	최초농지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 및 농로 건설을 위한 중토 이동장비 토지 조성 또는 정지에서 작물 수확까지 운영, 농업 상품의 분리 또는 세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농공산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 이하의 예비 부품
제조 투자사업	상품 및 부대용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해당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공장 건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철골 구조 및 재료
건설 투자사업	건설공사, 건설기계 임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 해당 건설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호텔 및 관광 서비스업	공원 및 사적지에 소재한 특급호텔과 산장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는 투자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 서비스 사업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교육서비스와 기숙학교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
공공의료 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환자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

운송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투자	내륙 수로로 승객과 상품 수송을 위한 선박 및 소형 선박, 20인 승까지의 항공기, 항공을 위한 기타 장비 및 부대용품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창고, 크레인 및 차량내부에 설치되는 서비스 및 공기냉각 장비와 장비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엔지니어링 및 기술자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엔지니어링, 기술 자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측량, 설계, 사진 측량, 지도제작 및 기타 장비와 부대용품
폐기물처리 서비스에 대한 투자활동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들어 올리고 운송하는데 필요한 차량 및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발전 및 석유정제에 대한 투자	발전, 송전 및 배전과 석유 정제를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공업단지 설립에 대한 투자	공업단지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공업단지의 건물 건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재료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사업	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와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사업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

자료: 에티오피아 투자청

한편, 다음의 투자 분야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호텔(특급호텔 제외), 모텔, 커피숍, 바, 나이트클럽 및 식당(국제적이고 특화된 식당 제외)/ 도매, 소매 및 수입거래/ 유지보수 서비스/ 상업용 도로 운송 및 차량서비스/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부동산 개발/ 경영관리 컨설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영화 촬영 및 유사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극장 및 영화관 운영/ 통관 서비스/ 세탁 서비스/ 여행사, 부대 무역 및 티켓 판매서비스/ 복권사업과 기타 유사 사업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가 100% 환급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



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20여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CIF기준)에는 관세, Excise Tax, 부가가치세, SURTAX, With-holding Tax(WHT)가 있다.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 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에 명시한 특별한 경우(가령 종교적, 교육적 목적 등)를 제외하면 15%가 부과된다. Surtax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의 10%가 부과된다. Withholding tax는 CIF금액의 3%를 부과한다.

또한 세관 통과에는 약 한달 가량 소요된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 자동차 세금 규정

배기량 1000~1300 cc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800 cc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3000 cc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10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 cc 이하의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500 cc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화물자동차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15 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디젤)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에티오피아에는 현재 자동차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루머가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이 1970년에 설립되어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고, 이 QSAE는 다음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OIML)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ARSO)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식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관리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QSAE, <http://www.qsae.org>)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피아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CRGE)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를 목표로 국가발전 방안 및 투자방안이 검토되어 진다.

지식재산권 보호

2003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 관리소(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IPO)를 설립하고 상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등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비롯하여 여러 지적 재산권 관련 기구 가입 및 조항 서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표준보다는 국내 또는 지역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 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과 남수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간다. 전체 면적은 1,127,127 km²이며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이다. 볼리비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알래스카 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분이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9천만명이 넘는 인구(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내 2위)와 인구 성장으로 인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과 많은 인구가 만들어내는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직접적인 항구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국가인 지부티 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 내에 Modjo 등 내륙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MESA, AGOA, EBD 등의 회원국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불어서, 인근국가인 케냐, 소말리아, 수단 등에 비해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고,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과 UN Economic Commission to Africa(UNECA) 본부가 있는 등 정치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도로와 철도가 건설 중이다.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는 현재 경전철 공사가 한창이고, 주요 항구인 지부티와 아디스아바바를 잇는 철도 공사, 아디스아바바에서 주요 도시로 뻗어가는 도로도 공사 중이다.

전력사정이 현재 열악한 편이지만, 에티오피아는 콩고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약 45,000MW) 현



재 잠재력의 4.4% 정도가 개발되었다. 또한 지열발전의 잠재력은 약 5,000MW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약 2,000MW만 발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33%만이 전력소비가 가능하다. 이중 1,980MW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전력 생산 능력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타 저소득국가 대비 전력 생산에서 뒤져있다. 현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나일강 유역의 르네상스댐 등이 완공되면 에티오피아 성장계획인 GTP에 명시된 75% 전력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4 순위에서 에티오피아는 185개 조사대상국 중 125위에 랭크되어 인근국인 케냐(129위)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에티오피아는 현재 산업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2013년말 Bole- Lemi 산업단지를 완공하였고, 섬유산업 업체 등이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한 Bole-Lemi 산업단지 옆에 2단계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Bole-Lemi 산업단지 이외에도 Dire Dawa, Kombolcha, Amhara Regional State; Shinelle, Somali Regional State; Hawassa, Southern Regional State, Akaki Kality 등의 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며 5,130헥타르 가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 산업단지들에는 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렴한 토지 리스 비용, 건물 임차 비용, 세금혜택, 수도세 및 전기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 발전과 기술 이전, 실업을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Agency, EIA) 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법인세는 과세이익에 따라 0~3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15%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하고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법률, 재래 의학, 광고,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상의 제한

현재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외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 통제가 심한 편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한다는 증명(여권 및 항공권 등)을 하고 미화 3,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외환의 부족으로 어려운 편이다.

노동법 관계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45일 동안 수습생(probationer)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이 필요하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전, 9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개월 전, 9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금 관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 2013.9월 현재 대졸 신입사원 사무직의 경우 미화 약 200달러 수준의 급여를 준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15%씩을 퇴직연금(PF)으로 납부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의료보험이 없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 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 에티오피아 경제개황

구분	내용
위치	아프리카 동북부, Horn of Africa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과 국경 접하고 있음
면적	1,104천km ² (경작 가능지: 68%, 삼림율: 3%) 한반도의 5배
인구	9,387만 (2013)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New Flower의 뜻) 연평균 기온 20℃(우기에는 5~10℃까지 떨어지기도 함), 위도 9°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3위 고도 기록 면적: 530.14km ² (서울, 605.3km ² 의 0.9배) 인구: 약 5백만명(서울, 약 1천만명의 0.5배)
언어	암하릭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GDP	412억달러(2013년)
1인당 GDP (PPP기준)	1,176달러(2013년)
GDP 성장률	7.1%(2013년)
인플레이션	18.1% (1999~2010년 평균)
수출입 (2012년)	수출: 35.9억달러(커피, 깨, 화훼 등) 수입: 118.2억달러(원유, 덤프트럭, 의약품 등)
외환보유고	37억달러(2013년)
외채	132억달러(2013년)
환율	USD 1 = 20.08 ETB (2014.11월)

예멘

통상환경 일반

2011년 반정부시위사태 이후, 2014.10월 현재까지 과도정부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대·총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 중이다. 2014.6월 WTO 공식 가입국이 되어 향후 통상환경 개선이 예상되고 있으나, 과도정부의 특성 상 경제 개혁을 위한 신규 제도·정책 수립이 제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세 불안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상품교역 관련 무역장벽

외국인의 무역업 종사 권리

외국인도 예멘 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를 통해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예멘 정부는 외국인의 예멘 내 무역회사 설립시 투자지분 상한(45%)을 철폐한바 외국인도 예멘인과의 합작 없이 예멘 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멘에 수입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및 위생검역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관세

2010년에 제정된 새로운 관세법(Law No.12)은 관세면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며 밀수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산업투자와 관련된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의 관세 인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예멘 상세 관세 정보는 예멘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v).



y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개인물품, 기증품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어야 한다.

예멘은 원산지 판정시 '상당한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을 적용,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하고, 이를 사우디 및 이라크와의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고 있어 사우디에 생산기지를 두고 예멘에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빈국특혜관세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통령령(2013.1월 개정)으로 UN이 지정한 최빈개발도상국(LDC)에 해당하는 예멘 원산지 다수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타 특혜를 부여하며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평가

수입업자는 예멘 당국의 관세평가(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가격 결정)에 대해 서면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부여된다.

수입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멘 관세청 및 수입업자를 각각 대리하는 2인 전문가 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부, 관세청, 예멘 상공회의소가 임명하는 3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수입품 국내 판매세

수입품(서비스 포함)에는 예멘 국산품과 동일하게 일부 품목(서비스)을 제외하고 5%의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과된다.

- 담배(90%), 카트(20%), 총기 및 탄환(20%), 금가공품(2-3%), 이동통신서비스(10%), 국제전화서비스(10%)의 경우 별도의 세율이 적용
- 밀 및 밀가루, 쌀, 의약품, 금원광, 여행객 소지품, 지폐 및 동전, 수출품은 판매세가 면제
- 금융, 보험, 의료, 교육, NGO, 내륙육상운송, 부동산 임대, 상하수도, 전력, 역사유적지 복구, 청소·환경미화, 순례, 하급 숙박업 및 수출서비스도 판매세가 면제
- 예멘은 부가가치세제를 갖고 있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음.

예멘 상공회의소는 판매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판매세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멘 정부는 역사유적 보전 및 문화발전, 청소년 체육, 장애인 및 재활, 도시 관리 등의 기금조성 목적으로 국산 및 수입품에 구별 없이 우유, 과즙, 생수, 음료수, 담배, 시멘트, 기초식료품 등에 국내세를 부과한다.
(예멘 국세청 : www.tax.gov.ye)

기술 및 위생 장벽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정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Yemen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예멘 표준계량기구(YSMO: Yemen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는 정합성검사 대상품목을 웹사이트(www.ysmo.org)에 게시하고 있다.

YSMO는 2014.1월 기준 2,474개 수입 물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자체 품질 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계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계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정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서비스 분야 규정

법률 서비스

법률 소송의 제기에는 예멘인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외국인 변호사는 예멘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연 2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무부의 허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이 또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국가의 변호사에 대해서만 상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멘에는 대규모 법무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규모의 법률사무소들만이 영업하고 있다.

회계감사 서비스

외국인에 의한 회계·감사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나 1인 이상의 예멘인 회계사와 공동(파트너)설립해야 하고 모든 파트너는 예멘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임원 중 1명 이상이 예멘인이어야 하고 기타 직원의 3분의 2가 예멘인이어야 하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유명 외국계 회계법인들이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이 허용된다.

전화통신 서비스

외국인은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 개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입법규제가 없으나, 국제전화서비스는 정부(TeleYemen)가 독점 공급자이며 유선통신망(Public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및 국

제·국내 위성통신망도 정부(TeleYemen, Public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가 독점 공급한다.

2014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독립적 규제기관 설치 및 전화통신 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제도 수립 중이다.

은행·보험 서비스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를 4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 은행이 예멘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60억 리알을 지점 및 사무소에 송금하고 중기 운영계획을 예멘중앙은행에 제출, 중앙은행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노동·고용 제도

1995년 제정된 노동법(Labour Code, Act No.5)에 의해 예멘 내 노동 및 고용이 규제된다. 제1조 3항에 의해 규정된 공공분야의 고용인, 외교·영사 관련 파견자, 군사·보안 담당자 등 10개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 인도 동일하게 법률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은 예멘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전체 노동법 영문 번역본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웹사이트(www.ilo.org/aids/legislation/WCMS_125896/lang-en/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체류비자는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나 매년 12,000리알(6만원 상당)의 수수료 지불로 5년 간 갱신이 가능하다. (2.5만원 상당의 기술훈련기금 지불도 필요).

입찰 제도

2009년 제정된 입찰·경매법(Law No.52)에 의해 예멘 내 입찰이 진행되며, 고등입찰위원회(High Tender Board)에 의해 총괄된다. 2014.10월



기준, 입찰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서비스 관련 동향

예멘은 WTO 가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비스 분야 양허안에서 총 155개 하위 분야 중 57개 분야에서만 양허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허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건설과 유통 분야는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사업서비스 및 운송서비스에서도 양허수준이 낮다.

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투자 법률

예멘은 2010년 투자법(Law No.15)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투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예멘 투자청(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무기 및 폭발물 제조업을 제외한 국가경제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게 투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 가스, 광물, 은행, 외환, 수출입 및 소매업은 해당 분야 개별법의 규제를 받으며 이 법은 기타 일반 산업 및 상업 분야의 투자에 적용된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분야의 투자 또는 영업 활동이 금지됨은 당연하다.

예멘은 외국 투자자에 대해 투자분야 선정, 합작투자 규제 등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투자법에 의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의 매매, 임대차 등이 허용되며, 외환송금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한다. 외국국적의 피고용자도 송금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한, 이 법은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법은 원칙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또는 그 자산의 국유화 또는 몰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국유화가 필요한 경우 비차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국유화시 보상액은 예멘 정부와 투자자간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멘상업법원을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보상액은 국유화 발표시점에 투자 프로젝트 및 자산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은 18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투자자는 자산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예멘 정부는 외국투자자가 지급받은 보상액의 외환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법은 투자분쟁 해결 조항도 갖추고 있다. 원칙적으로 투자분쟁은 예멘 상업법원에서 해결하며,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도 있다. 중재 시에는 여타 국가 또는 지역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을 원용할 수도 있으며, UNCITRAL의 중재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2014.10월 기준,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법(Law No.15)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절차

예멘 투자청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청에 투자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투자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무역부 등 관련부처의 영업허가 서류도 필요하다. 투자청은 신청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신청이 이루어지면 15일 이내 심사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투자 절차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현지 전문가와 협조할 필요가 있다. 투자 절차 및 투자 관련 상세 내용은 투자청 웹사이트



(investinyemen.org)에 게시되어 있다.

국산화의무 및 수출의무

예멘은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 사항은 없다.

세제상의 혜택

예멘은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산물, 가축 및 농업 생산과 관련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그 이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관세를 50% 감축해 주고 있다.

면세기간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 예멘인의 지분 보유 정도 및 국산화 비율에 따라 7~16년으로 상이하며 국산화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2년의 추가적인 면세 기간이 부여된다.

아덴 자유무역지대

1993년 자유무역지대법(Law No.4)에 의해 지정된 아덴 자유무역지대(Aden Free zone)는 예멘 남부의 대표적 전략항구인 아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으로 수입되거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 지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입세, 수출세, 생산세 및 기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아덴 자유무역지대청(Aden Free Zone Authority) 웹사이트(www.adenfreezone.com)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한 기업과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15년 동안 면제되며 이러한 면세 혜택은 정부 각료회의 승인 시 10년간 연장된다.

자유무역지대 근무 외국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환통제가 없으며 과실송금 등이 자유롭고 국

산품 사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이 예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관세와 세금 부과 등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같은 제반 세관 절차가 진행된다.

예멘 정부가 수립한 2012-2014 중단기 재건계획(TPSD, Transitional Program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프로젝트 목록에는 2천3백만불 규모의 아덴 자유무역지대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호테이다 공업지대

2005년 대통령령에 따라 호테이다 공업지대 투자자는 예멘정부의 투자 보호를 받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기존 여타지역에 설립된 공장이 동 공업지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신규투자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공업지대가 설립 및 개발되었으며, 2009년 이슬람개발은행과 터키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2013.7월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어 해당지역 개발이 추진 중이다.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정보는 중동북아프리카변화자금(MENA Transition Fund) 웹사이트(www.menatransition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운영 및 세금 제도

비즈니스 환경 개요

세계은행은 2014년 Doing Business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개괄적인 예멘 비즈니스 환경을 133위(총 189개국 중)로 발표하였다. 보고서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yemen)에 게시되어 있다.



법인세

2010년 제정된 새로운 법인세법(Law No.17)은 기본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 세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 적용된다.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업에 대해서는 50%, 국제 통화 서비스 공급업, 담배제조 및 수입업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며,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탐사단계에서 3%의 고정세율이 부과된다.

종업원 3-9명을 고용하는 연매출 150만 리알 이상 2천만 리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10-20%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연매출 150만 리알 미만의 소규모 기업(종업원 3명 미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천징수세

예멘국민에 대한 배당금과 예멘 중앙은행의 승인을 득한 해외은행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지만, 미승인 해외은행의 이자와 예멘국민이 아닌 경우의 배당금, 수수료, 상표, 특허 등 사용료, 기술료 등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세

예멘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별도 노동허가를 득한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 지급 기준에 해당되며, 개인 소득 2만 리알에 1천 리알 세금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의 소득 84만 리알에 10만2천 리알의 세금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소득세로 책정된다.

사회보장세

고용주는 내외국인 급여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회보장공사

(General Corporation for Social Security)에 지급해야 하며, 고용인은 6%를 지급한다.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10.7월 협정문 가서명 후 2014.10월 기준 국내절차 진행 중이다.

외국인의 회사 및 지점 설립 등록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은행업, 항만·공항·공공시설 및 주거단지 건설사업, 석유·광물·산업·농축산 및 어업 투자, 관광 및 숙박업, 기술자문 서비스, 기타 내각에 의해 승인된 분야 등이다.

영업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상업등록부, 법인설립 증명서류, 전년도 회사재무상태 입증서류, 외국 소재 본사 경영자의 대리권 위임 서류, 예멘 내 관련 부서의 승인서류, 예멘 내 은행에 3만 달러 이상의 예치금 입금서류 등이 요구되나, 여전히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확한 구비서류는 정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업허가 절차

우선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에는 회사명칭, 주요 영업분야, 자본금 및 예멘 내 사무소 주소, 관리자 성명 및 직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된다. 산업무역부의 외국기업 등록 담당자는 동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련 부처에 이송하여 검토토록 한다.

관련 부처의 검토가 완료되면 산업무역부는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신청서의 규정합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신청서가 규정에 합치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허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적 검토의견과 함께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영업허가가 발급되면 등록비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산업무역부는 법무부(Ministry of Legal Affairs)에 영업허가 사본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하여 법무부 발간 관보에 영업허가 사실을 등재토록 한다. 아울러, 영업허가가 발급된 회사 지점에 대한 정보를 내부 등록하고 관련 기록부에 등재한다.

외국인이 예멘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멘 산업무역부에 등록(비용이 약 35만원 소요되며 5년간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매년 등록 갱신에 약 10만원 소요),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연간회비 약 55만원), 사무소 소재 지방청에 등록(약 25만원 소요),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예멘 정부 부처에 등록(약 25만원 소요)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예멘은 외국인의 토지와 건물 소유를 2009년 외국인 부동산소유법(Law No.23)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은 동 법에 따라 예멘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부동산으로서는 외교공관,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 및 주거지, 문화 및 교육 시설 등이며, 이렇게 허용된 부동산에 근거하는 일정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종교적 장소, 국경지역, 무인도, 또는 기타 예멘국민들의 토지소유가 금지된 역사적, 자연적 유산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주요 도시에 한정되며 일정한 건축 및 투자, 관광, 주거 프로젝트의 요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소유될 수 없다. 특정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관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해당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 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특정 허용활동이나 주거 용도 부동산이 아닌 투자 또는 자유무역지대 관련 부동산은 해당 투자 법률 또는 자유무역지대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된다. 국유지는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수 없다. 공공복리, 국가경제적 이유,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허가한 경우에는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5천만 리알(약 2억5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은 예멘 입국허가 및 2년의 거주허가가 발부된다. 이 거주허가는 갱신가능하며 부동산 소유 등 원사유가 소멸할 경우 거주허가도 함께 소멸한다.

WTO 가입

예멘은 2014년 6월 공식 WTO 가입국이 되었지만 국내 정세로 인해 통신 분야 등에서 WTO 가입에 따른 이행조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예멘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예멘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산업기계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실행관세(5%~10%)가 예멘 경제여건에 따라 양허관세(20~25%) 이상으로 인상되지 못하는 국제무역규범상 안정성이 확보되며,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수입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장벽이 가입 즉시 또는 일정기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철폐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수입부과금

각종 기금 조성 명목으로 건별 또는 박스별로 부과되던 수입부과금도 수입가격의 0.25%로 단일 부과다가 일정 이행 기간을 거쳐 철폐될 예정이며, 국내 생산품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던 수입 관련 수수료도 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수입금지 조치 철폐 및 수입제한조치 완화

커피, 망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토마토, 감자, 상추, 당근, 오렌지, 레몬, 포도, 메론 등에 대한 계절별 수입금지 조치도 가입과 함께 철폐될 예정이다.

종자 및 비료수입, 의료장비 및 의약품, 화약류 등에 대한 수입허가서 발급 수수료도 기존의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던 것을 검역,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고정 요금으로 부과되고, 살충제 수출허가에 대한 종가세도 고정요금으로 변경,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무역관련 국내정책

해외투자와 관련 국내산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세금 및 관세감면 정책도 2010.9월 신 투자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도 가입과 함께 철폐토록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2010년 이후 특허(Law No.2, 2011), 산업디자인(Law No.28, 2010), 상표 및 지리정보(Law No.23, 2010) 관련 법을 마련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 별로 WTO/TRIPS 등 국제 지적재산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입법, 행정 및 민·형사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웹사이트(www.wipo.int/wipolex/en/profile.jsp?code=YE)에 게시되어 있다.

국영기업

유전전화, 국제전화, 상하수도, 석유천연가스 관련 국영기업은 WTO 국영기업 관련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요르단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 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악화,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 등의 악재 속에 경제성장 폭이 크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국가
- 2000년대 : 강력한 경제개혁·개방정책, 세제·투자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어 2010년 2.3%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 2013년부터는 3%대 성장을 달성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 달러 수혜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20%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 2013년 분야별 GDP 기여도 (*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 제조업: 19.2%, 농수산업: 3.4%, 광업: 3.8%, 금융·부동산: 19.1%, 운송·통신: 13.9%, 호텔·도소매: 10.5%, 정부 및 기타 서비스: 18.2%, 건설 5.5%, 전기·용수 2.3%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재외 국민의 본국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가성칼리(potash) 매장량도 풍부하다.

반면,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치안 및 국공채 이자비용 등으로 정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에는 GDP의 10%를 기록하였다. 2012년 발생한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중단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IMF 긴급자금 공여와 보조금 감축 등 긴축정책을 낳았으며,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8.7%로 줄였다. 각종 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전기세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맞물린다면 2018년에는 GDP의 5.6%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연 평균 40억 달러),

② 관광수입(연 평균 10억 달러), ③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연 평균 7억 달러 내외)로 경상수지 균형 유지하고 있다.

- 관광수입은 GDP의 7~10% 점유
-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는 연 평균 6~7억 달러를 기록

최근 경제 동향

(1) 성장 및 산업 생산

요르단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2.3%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요르단 경제는 중동정세 악화로 인한 관광감소와 해외수요 감소에 의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통화확장정책과 걸프연안국(GCC)에 의해 지원된 재정을 사용한 정책들을 통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2014년 성장률은 3.5%(재무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전망)
실질GDP성장률	2.3	2.6	2.7	3.0	3.5

*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

(2) 소비자 물가

요르단 물가는 2008년 국제 유가 급등과 유가 보조금 전면 철폐,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3.9%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0.7% 물가가 하락하였다.

2010년 반등세를 보이던 물가는 2011년에는 정부의 빈곤층 지원 정책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의 효과로 다시 3.3%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7.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유류 보조금 지급 중단 정책과 2013년 7월에 시행된 세율 증가 정책에 의한 효과로 2013년 소비자물가는 2.7%로 하락하였다. 수입품 가격상승과 수입의 증가로 인해 2014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된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비 증감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예상)
13.9	-0.7	6.1	3.3	7.2	2.7	3.5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e Bulletin

(3) 고용

2004년 12.5%로 최저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이후 13~14%의 고실업을 기조를 유지하다 2008년에 12%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인구 증가율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취약 등으로 인해 지표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다. 2013년 이후는 시리아 난민 등의 노동시장 유입 등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현 내각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 실업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예상)
12.7	12.9	12.5	12.9	12.2	12.6	13.1

자료 : Ministry of Finance of Jordan

수출입

■ 요르단의 수출입 및 수지 동향

(단위: JD백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순수출	3183.7	4431.1	3579.2	4216.9	4805.9	6708.5	6786.4
재수출	879.9	1201.9	947.2	773.2	878.7	1200.4	1146.6
총수출	4063.6	5633.0	4526.3	4990.1	5684.6	7908.9	7933.0
수입	9722.2	12060.9	10107.7	10840.0	13440.2	18457.0	19601.0
무역수지	-5658.6	-6427.9	-5581.4	-5849.9	-7755.6	-10548.1	-11668.0

참고 : US\$ 1 = JD 0.708

자료 : 요르단 통계청 Website

■ 2013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의류·섬유, 가성칼리, 의약품, 인산염, 야채, 비료
- 수입 : 원유, 교통장비·부품(자동차 등), 석유제품, 철강, 직물, 의약품

■ 우리나라 대 요르단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1,019	1,266	1,224	1,396	1,317
수입	31	36	74	69	67
수지	988	1,230	1,150	1,327	1,250

투자 동향

(1) 총 투자

2007년도 요르단 투자 규모는 총 31억4천만 달러를 기록, 2005년 중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내는 전년비 증감률)

연도	외국인투자	국내 투자	총 투자
2003	118	250	368(13.2%)
2004	192	398	590(+60.3%)
2005	389	668	1,057(+79.2%)
2006	1,191	1,393	2,584(+144.5%)
2007	1,946	1,191	3,137(+21.4%)
2008	1,118	2,085	3,203(+2.1%)
2009	1,025	1,600	2,625(-18.0%)
2010	315	1,229.2	1,628.8

자료: 요르단 투자청 (JIB)

한편, 요르단 투자청 자료(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총 1,448건에 13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레저/리조트, 호텔, 병원, 물류/수자원/가스 및 오일, 해운/철도, 농업 순이었다.

2006년-2010년 원천국별 요르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US\$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비중(%)
사우디	792	146	128	228	200	1,494	29.1
바레인	0	414	21	303	0	738	14.4
영국	0	19	333	175	0	527	10.3
이라크	126	97	94	33	40	390	7.6
UAE	53	8	165	85	35	346	6.7
미국	30	118	6	34	12	200	3.9
쿠웨이트	94	9	2	72	14	191	3.7
카타르	0	71	2	0	0	73	1.4
인도	0	44	0	24	0	68	1.3
중국	0	44	0	0	0	44	0.9
팔레스타인	0	20	16	5	6	47	0.9
프랑스	0	0	12	0	0	12	0.2
한국	0	0	0	7	0	7	0.1
기타	96	492	339	59	8	994	19.4
소계	1,191	1,482	1,118	1,025	315	5,131	100.0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2) 우리나라 對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지만 투자 금액 기준 0.22%, 2006년부터 투자 건수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양국간 투자보증협약 및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연도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8	2	1	5,007	1	5,000
2009	5	1	651	1	320
2010	6	2	1,846	2	78
2011	-	-	-	-	-
2002	2	1	71	1	71
2013	7	1	879	3	279
요르단 전체	46	20	28,958	36	15,957
우리나라 전체	4,312	1,475	11,651,483	6,887	6,970,85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형태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현지법인	18	12	24845	27	13,057
지점	9	1	711	1	50
지사	19	7	3,402	7	2,850
총계	46	20	28,958	36	15,957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업종별 소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46	20	28,958	36	15,957
198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1981	건설업	1	0	0	0	0
1991	제조업	1	1	1,054	1	1,054
	사업시설관리	2	1	0	1	0
1992	제조업	1	1	1,415	1	1,415
1993	운수업	1	1	2,200	1	288
1996	제조업	1	0	6,000	0	0
1997	제조업	0	0	0	0	0
1998	제조업	1	1	271	1	271
1999	운수업	1	1	70	1	63
2000	제조업	1	1	2,000	1	990
2001	제조업	1	0	1,000	5	2,000
2002	제조업	2	0	3,000	5	2,919
2003	제조업	2	1	1,746	5	314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04	도매 및 소매업	1	1	580	1	580
2006	제조업	2	1	52	1	52
	도매 및 소매업	0	0	0	0	0
2007	도매 및 소매업	1	1	1,000	3	212
2008	제조업	0	0	0	0	0
	건설업	1	0	7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5,000	1	5,000
	운수업	0	0	0	0	0
2009	제조업	2	0	256	0	0
	전기,가스,수도	1	1	320	1	320
2010	시설관리	2	0	75	0	0
	제조업	1	0	120	0	0
	건설업	3	2	1,635	2	78
	도매 및 소매업	1	0	91	0	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12	광업	1	1	71	1	71
	기타	1	0	0	0	0
2013	플랜트건설업	1	1	222	1	222
	제조업	1	0	300	0	0
	건설업	1	0	0	0	0
	운수업	1	1	50	1	50
	송전, 배전업	1	1	28	1	7
	기타	2	0	279	0	0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제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출입공고 제도가 없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거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제한수입규제 품목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페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품, ②원유 및 정제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어, 무기 등 방산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한된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후협정(1998), 아랍자유무역지대협정(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랍자유무역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후로도 아가디르 협정(Agadir FTA, 요르단-튀니지-이집트-모로코-팔레스타인 등이 참여 중)에 참여하고, 이라크,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동 중개무역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주한요르단명예영사



관(현대해상화재) 또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 주재 걸프국가 대사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 2010.10월 주한요르단 상주대사관 설치)

(2) 세이프 가드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실적은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 3회로 발동실적이 미미하다.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4) 환경관련 규제

2007.1.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제도

1997.3.2일부터 통합 관세법을 발효하여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율을 인하하는 수입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7월 전 품목의 가중평균 세율은 13% 수준이다. 2000.4월 WTO 가입에 따라 최고 수입관세율을 35%에서 30%로, 2005년에는 25%로 재인하하였고 WTO와의 관세양허 일정에 의해 2010년까지 담배, 술 등 특별 소비용품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20%까지 인하하였다.

수출용 원자재, 생산요소인 원부자재, 의료용품, 긴급 생필품의 경우 면세되며, 일반 소비 용품에는 보통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된 후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 일반판매세율
- 과거 일반판매세율은 10%였으나 99년부터 관세인하로 인해 야기될 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6%로 인상
- 다만, 일부 농산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극히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50%, 주류는 85%, 담배는 10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한 통관절차가 없으며 국제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

영사인증제도

(1) 개요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제도 도입 배경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 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년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제도 운영 주체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한다.



(4)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

(5) 수수료 부과 기준

법령 제20호(관세법) 제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WTO 회원국 : 송장 건별로 수수료 부과 (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수준)
- WTO 비회원국 :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인증 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 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 할 수 있다.

(6) 기타 조항

2005.1.1일부 범아랍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가입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대사관(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요르단명예영사(현대화재해상보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 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4) 검사 방법

요르단 수입 세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5) 운영 주체

- JSMO (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 Call center : 962-6-550-6060
 - E-Mail : jsmo@jsmo.gov.jo

(6) 검사 절차

-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때
 - 라벨링 기준을 적용
-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구비 시: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 허가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 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 승인여부 결정
 -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 결정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채택한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 22가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발간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는 재발간할 수 있다.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개요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 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3 Index)에서 59.75점을 획득하며 189개국 중 119번째를 기록하였다.

■ 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보험, 은행, 통신, 농업부문 투자에 대해 50% 실링 (제한) 해제 - 최소 투자금액 한도 인하: JD 100,000 → JD 50,000 ○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과 뛰어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Z, Free zone ○ 양질의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문맹률(9%),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5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5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인당 물소비량 90리터(세계 평균의 1/15)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주요 투자법 내용

□ 투자촉진법 개요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고 2014년 현재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 IT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지분을 100% 허용하였고, 2014년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촉진법을 계속 손질 중이며, 곧 선진국 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관련 대표기구로는 투자촉진 최고회의(The Higher Council for Investment)와 투자청(Jordan Investment Board) 등 2개 기관이 있다.

□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투자진흥공사”에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 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투자
진흥공사 요청 시 제공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
세기간은 잔여기간까지 적용
 - 투자가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투자진흥위원회”의 승
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아울러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투자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타인
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투자진흥공사가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 분쟁해결
 - 투자가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 분쟁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르단
사법당국이나 “국제 투자분쟁 중재위원회(The Int’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해결 의뢰 가능
- 투자진출 절차
 - 투자등록 신청 : 소정 양식에 의거 투자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
청 시 투자자금의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현물 출자 시 통관서류 등
을 첨부
 - 변호사의 고용 :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의하여 투자등록 신청으
로 부터 3개월간 변호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를 통해
투자 진출절차 완료
 - 투자등록 승인 : 산업통상부가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
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 상호 등록 : 산업통상부



- 회원등록 : 공업회의소 회원 등록
- 지방행정기관에의 등록 : 공장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회사설
립 등록
- 거주증 취득 : 외교부
- 노동허가서 취득 : 노동부

□ 투자시 세제 혜택

- 신규투자 시 법인세의 감면
 -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를 시행할 경우 공장이 설립된
위치의 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차등 감면
 - A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25%
 - B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50%
 - C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75%
- 추가투자 시 법인세 감면
 - 기존 사업 확장 시에는 25%의 법인세를 A급지의 경우 2년, B급지
의 경우 3년, C급지의 경우 4년간 감면
- 기타 법인세 감면
 - 직원주택 건립 : 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주택의 건립 시 소요
비용은 납부대상 법인세의 10%까지 감면
 - 교육비 및 연구비 : 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 교육비 및 연구
조사비는 연간 JD25,000(약 35,000달러)의 범위 이내에서 납부대
상 법인세 감면
- 수입 관세특혜
 - 고정자산 취득 시 : 공장 건립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수입 시 투자
승인 이후 3년간은 관세가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의 준비가 반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년간 면세
 - 부품 수입 시 : 기 수입한 고정자산의 부품 수입 시엔 당해 고정자
산 가액의 15%까지 수입 관세 면제

□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 장려분야

분야	산업 상황
전자 및 가정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5년간 200% 수출신장 (2005년 수출액 6억 달러) - 이라크, 시리아가 주요 타깃 시장 - 2005년 8월,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표준 규정 채택
자동차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운영 중 (버스와 군용 사륜구동 차량) - 8개의 부품공장 (라디에이터, 배터리, 유리, 필터 등) 운영 중
섬유 및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요르단 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 분야 - 고용인력 5만 명, 수출 13억 달러 - 최근 수년간 수출 200%. 고용 20% 신장, 주요시장에 무관세 수출 - 요르단에서 소싱 중인 주요 바이어 : JC Penney, Levi's, Liz Claiborne, Gap, Gloria, Vanderbilt, Victoria's Secret 등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관광객 708만 명, 관광수익 28.9억 달러 - 기독교 성지, 와디럼, 사해, Petra 등 세계적인 관광지 다수 - 의료 및 국제회의와의 연계 관광 확대 전망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규모 4억 달러 - 아랍 최고의 수출규모 (2005년 3억 달러, 2010년 10억 달러 수출 전망) - 16개 제약회사에서 5,200명의 우수인력 고용 - 훌륭한 인프라 (약학 전문학교 8개, 연구소 4개, 병원 96개) - 연구개발 투자 장려 (Clinical Trial Law)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국가 중 최고의 의료 경쟁력(Arab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5) - 최우수 분야 : 심장외과, 콩팥이식, 안과 등 -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22.4명 - 연간 의료 관광객 수 10만 명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개의 기업에서 1만 6천명 고용 - 최고 투자신장률 기록 분야(2000년 이후 총 15억 달러 투자) - 2008년 수출 2.26억 달러 -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2004년 통신업종 완전 자유화 - 투자유망 분야 : Call Center, Education platforms, e-learning, Arabic language content, Animation



○ 제한 및 금지 분야

- 100% 허용업종 : IT산업, 리스, 은행금융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 50% 허용업종 :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서비스 등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 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의 육상 운송 서비스

□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

□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인들의 현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

에서 자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은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

경쟁정책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의 경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외환관리 및 조달

□ 개관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 금융관련 제도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업은행(9), 이슬람계 은행(2), 투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 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 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들 3개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 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 현지금융 및 과실송금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 가능하다.

노무관리

□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 노동법의 주요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유망 분야 시장동향

건설 플랜트

2007년 말 요르단의 전체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약 6억 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현재 발주 중인 건을 모두 포함하고, 또한 요르단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아카바 자유무역지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시장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원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히 않는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부의 차관, 원조 자금, BOT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극히 미미하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극히 미미하여 제조업 플랜트 시장 형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된 섬유생산 공장의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광물 개발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인 비산유국이다. 원유는 이라크 국경에 면한 Azraq Shishan 인근의



Hamza 유전에서 일일 600배럴 규모를 생산 중이나 국내 소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가스는 이라크 국경지역인 Risheh District 3개 공구에서 연 21백만 큐빅피트를 생산 중이나 이 또한 국내 소비 비해 크게 부족하다.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 ; 세계 3위)과 가성칼리(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셀(암반유 약 600~700억톤) 및 우라늄도 다량 매장(약 18만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 추계에 따르면, 2013년말 전 세계에서 오일셀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총 1.2조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어 브라질과 요르단, 모로코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의 오일셀 추정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배에 이르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감안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라늄의 경우, 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약 18만톤(확인+잠재 매장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규모는 2006년 말 전 세계 우라늄 확인 매장량(393만톤)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별 비중 면에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국별 우라늄 매장량 : 호주(30%), 카자흐스탄(17%), 남아공(12%)
나미비아(8%), 러시아 및 브라질(각 3%)

한편,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 West Bank와 가자지구 등과 함께 세계 5대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물 소비량은 1,376백만 큐빅미터인데 비해 생산량은 815백만 큐빅미터에 불과, 연 561백만 큐빅미터가 부족하고 인구 증가,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 큐빅미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공급은 1,276백만 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협력 사업(세계은행 주관) 으로서 홍해-사해간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디시-암만간 Water Conveyer 건설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홍해-사해간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총 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수로 관로 건설, 원자력 발전소 및 담수시설,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프로젝트로서 요르단이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사업자(Master Developer)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6.3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이거나 유찰을 거듭해 오다, 지난 2007.10월 터키의 Gama Energy에 낙찰되었다.(BOT ; 2008.8월초 공사 개시, 2013.7월 완공 예정)

이외에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에너지 전략계획’에서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8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체 에너지원 중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분별 투자예상 금액

(2007-2020년, 단위 : 백만달러)

부문	투자 예상금액	부문	투자예상 금액
Power Sector	4,800-5,800	Oil Shale Exploration	1,400-3,800
Oil Sector	3,400	Renewable Energy	1,400-2,100
Natural Gas	2,400	Improving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80-150

2010년 말 요르단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이며, 에너지 수입액의 GDP 대비 비중은 21%로서 에너지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개요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이후 급격히 감소, 매년 1건 정도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걸프자금의 요르단 유입으로 건설·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7년부터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진출 현황

□ 발전분야

- 알 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한전)
 - 2008.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2009.9월 정식 계약 서명
 - 4.5억 달러가 투입되는 373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 발전분야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삼라발전소 3단계 프로젝트(한화)
 - 2억 달러가 투입되는 285메가와트 규모의 2개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업체로 선정, 정식 계약 서명(2009.10.21)
- Amman East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두산중공업, 약 2억 달러)
 - 2008.7월, 2억 달러 규모의 1단계 공사 완료
 - 조만간 발주 예정인 2단계 공사 참여 준비 중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대우건설, 1.5억 달러)
 -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수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 5메가와트급, 2015년 완공 예정

- 알 마나커 중유화력발전소(디젤발전소, 한전)
 - 2012년 수주, 2013년 착공, 573MW 규모
 - 한전이 60%의 지분투자 및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미쓰비시 상사(일본), 바르젤라(핀란드) 등이 컨소시엄 참여

□ 건설·플랜트 분야

- 알카트라나 시멘트 공장 건설 프로젝트(STX, 2천만 달러 규모)
 - STX 중공업이 수주하여, 2008.10월 현장 사무소 설치
- 요르단 정유공장 LPG 저장탱크 건설(롯데, 4천만 달러 규모)
 - 롯데건설이 수주하여, 2008.10월 현장 사무소 설치
- MEC 가전제품 공장건설 프로젝트(대우전자, 8천만 달러 규모)
 - 대우전자 및 협력업체들이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공급 예정

□ 하수처리 분야

- 암만 남부 하수처리 시설 건설(코오롱, 4,800만 달러 규모)
 - 코오롱이 2008.5월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건설 중

■ 2014.10월, 요르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현황

기업명	형태	진출연도	기타
LG전자	법인	2008	가전 판매
삼성전자	법인	2009	가전 판매
한전 QEPC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 AAEP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KPS	지사	2013	발전소 운영
LG 인터내셔널	지사	1981	종합품목
대우일렉트릭	지사	2007	가전 생산 및 판매
LG 생명과학	지사	2010	의약품
비츠로시스	지사	2009	전력기자재
대우인터내셔널	사무소	2009	종합품목
코오롱글로벌	사무소	2007	하수처리시설 건설
롯데건설	사무소	2007	발전소 건설
대우건설	사무소	2010	연구용 원자로 건설
제일기획	법인	2014	광고·홍보



이란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란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4%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를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10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산광무역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을 완화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광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시키는 반면, 이란 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의 경우 국산제품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EU 제재 등을 통해 이란의 금융, 에너지, 운송, 교역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바, 우리 업체의 대이란 교역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업체들은 이란 업체와의 거래에 앞서 반드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은행연합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목

Positive system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 등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
 -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됨.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 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수입절차

- ① 산광무역부에의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 ② 산광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
 - 가장 까다로우며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0~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비공식 수입경로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안경테, 직물류, 가전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은 두바이의 제1의 재수출시장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섬유, 직물류 등이며 상당수 이란 수입업체가 두바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등 외환업무를 보고 있다.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1993))하고 있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를 적용을 고려 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관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현지화 환율 × 해당수입 관세율이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세(통상 4%)이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란 정부는 수입 규제 시 주로 동 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FR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품 검사는 P/I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체크, 상업송장 체크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 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 걸린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Pipe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세관은 국 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다. 이란은행은 이란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 시에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 시는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 점수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도 운영 중이다.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최근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영사인증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면 우리 수출업체는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로, 한국 수출업체에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이란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공항 입국 시 소지하는 샘플도 공항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샘플 정식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하며 영어를 모르는 세관원이 많아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식 통관 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시점이 아니라 출국 후 약 6개월 후에나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필수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철강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하여 중량을 책정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실제 물량을 측정하고 있어 중량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빈번하다(특정품목: 판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이론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대로 이론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는 이론중량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음)하고 있으며, 통상 이론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 발행 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또한, 철강은 대이란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거래 이전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철강 제품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 형태로 부품을 수입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이 2004년부터 허가되었다. 그 당시 완성차 수입에는 배기량에 따라 130~168%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2004년의 실 수입량은 크지 않았으나, 2005년에 관세가 100%로 인하됐고, 현재는 90%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완성차종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은 종류에 따라 제재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는 바, 반드시 거래 이전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섬유·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사치재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100만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3.8월 출범한 로하니 정부는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Kish섬, Qeshm섬, Chabahar항구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별로 16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Project를 국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 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동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란 석유자원 등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 이전에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투자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의 15% 공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2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석유화학 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Qeshm섬, Kish섬, Chabahar 항구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 20년간 내국세 면제,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 생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의 기간 45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승인

현지법인 승인절차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

①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 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이란인 주주가 반드시 필요(지분 51% 이상)하며, 과실송금은 가능하나, 전쟁 등 국가파산 시 투자금에 대한 보증이 없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 하에 진행가능
- 단점 :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믿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자 필수(법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노동법규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 퇴직금 :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 3개월분 급여 ×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정책 일환으로 현 외국인 투자허가시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연계 의무

유전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Buy-Back 또는 BOT(Build, Operation and Transfer)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현지 투자법인의 기자재 수입 시 필요한 외환을 수출을 통해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법(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의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다만, 현재로서는 이란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이란 은행들을 통한 국제 송금이 사실상 불가하여 이란과의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와 무관하게 영업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자 23%, 피고용자 7%, 계 30%).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시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무조사는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지사·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 외국 회사가 이란 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



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 범위 및 내용, 설치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 이란 내 지사·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주며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 허가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달러-리알화의 급격한 환율변동, 對이란 UN안보리, 미국, EU 등의 제재에 따라, 신용장 개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행에서 발급한 L/C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은행이 제재 대상 은행인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사항

외국계 은행은 현재까지 이란 내에서 지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유럽계 은행 등 주요 외국은행들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이란 내 사무소 보유 은행은 HSBC, Calyon, Sumitomo Mitsui Banking 등 40여개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만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어 Kish섬 자유무역지대에 3개의 외국계 지점이 영업 중이다.

對이란 유엔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조치

우리 정부는 2010.9.8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대이란 구체조치를 취하였다.

금융 부문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하였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하였다.

무역 부문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



(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불허하였다.

에너지 부문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였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가 요망된다.

원화 결제계좌 신설

정부는 우리 국내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2010.10월 우리 국내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였다.

가이드라인 시행

對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2014.7.21 개정)」,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對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對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이하 ‘교역 및 투자’라 한다)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행

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황허가”란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외의 물품 등을 우려통거래자(Denial List) 등에게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이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무역거래자는 거래품목이 제5조 내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무역거래자는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자는 이 지침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대금결제 가이드 라인’의 제반규정 및 운용취지에 부합하게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제4조(거래상대방) ①거래상대방이 대량파괴무기 및 국제테러 등과 관련된 경우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이하 ‘금지대상’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②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물품과 기술(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에 해당된다.

제6조(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등) 제5조에 따른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



에 해당된다.

제7조(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운반선,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8조(정유제품 관련 행위) ①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정유제품의 이란 내 운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③정유제품의 이란 내 수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④정유제품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9조(석유화학제품 관련 행위) ①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0조(조선, 해운, 항만분야 및 자동차분야 관련 행위) ①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이란의 자동차분야(승용차, 트럭, 버스, 모터사이클 및 관련부품을 포

합)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1조(귀금속 및 특정물품 관련 행위) ①별표 1에 규정된 귀금속을 직간접적으로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을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의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2조(상황허가 이행) ①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해당 상황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품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물품 등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지 확인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장의 판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이 정한 분야에 한한다.



제3절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 절차

제13조(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①무역거래자가 이 지침에서 금지되지 않는 물품 등을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이하 ‘비금지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무역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관련업계에 고지하여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하여금 확인서 발급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특별조치) ①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무역업계, 산업별 단체·협회 등이 이란과의 교역질서 유지 또는 자율적인 수출입 관리를 위하여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의 발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보류·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이전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현재 해당 비금지 확인서에 규정된 물품 등의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세부 업무처리 지침)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교역질서 유지

제16조(규정준수) ①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 금지품목 해당여부 확인, 관련서식 작성 및 자료제출,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상황허가 신청 등 관련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 지침이 정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위반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를 금지 품목 및 행위에 악용하는 등 제 1항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위반 사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무역거래자에 대해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의 효력 정지·취소 또는 발급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처분사유 및 처분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차 개정, 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5.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이 이미 접수 및 심사를 진행중인 비금지 확인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11조의 특별조치는 해당 특별조치 시행일 현재 접수 및 심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배제)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물품 등을 교역 또는 투자함에 있어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차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정지)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정지한다.

제3조(적용기준) 이 지침 시행 전에 수출, 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면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으로 본다.

부칙 <3차 개정, 2014.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1.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1.20부터 2014.7.2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4차 개정, 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7.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7.21부터 2014.11.2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요지

기본 원칙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 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 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 절차

은행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은행은 상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MFN 관세와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제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3.6월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2013.6.10일) 등 41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4.11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 중국, 칠레, 우크라이나 등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관세분류방식으로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QIZ - 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 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평균관세율

(단위: %)

		합계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원자재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이스라엘	1993	7.81	4.93	4.91	4.65	14.70	10.38	5.63	4.48	2.11	0.31
	2004	5.38	2.71	3.49	2.40	8.63	6.82	2.92	1.11	9.09	0.80
	2005	5.33	2.60	3.46	2.28	8.52	6.58	2.88	1.13	9.12	0.65
	2006	5.28	2.64	3.45	2.29	8.49	6.59	2.87	1.18	8.75	0.68
	2007	5.14	2.52	3.47	2.20	8.26	5.84	2.73	1.15	9.31	0.92
	2008	5.15	2.61	3.47	2.31	8.32	5.96	2.64	1.15	8.87	0.81
OECD 평균	1993	7.19	5.11	5.92	3.70	10.55	7.15	6.37	4.54	3.28	3.60
	2004	6.57	4.15	3.92	2.48	9.13	5.15	5.65	3.18	7.34	9.28
	2005	5.70	3.53	2.95	2.15	8.31	5.06	4.57	2.77	7.17	3.67
	2006	5.50	3.63	2.74	2.22	7.75	5.03	4.33	2.74	8.16	4.76
	2007	4.65	2.84	2.03	1.28	6.50	4.02	3.56	2.01	8.00	4.70
	2008	3.96	3.02	2.15	1.81	6.67	4.58	2.90	2.18	3.63	2.47

출처: UN TRAINS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허, 면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 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 분류, 관세와 기타 세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ozar.mof.gov.il/customs/eng/mainpage.htm> 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4.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Yuval Steinitz)이 2012.7.11일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재무부령에 따르면, 먼저 국내 생산제품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양고기, 신선 및 냉동 가금류, 소시지, 주스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줄이기로 했다(표. 점진적 관세 감면 품목 참조).

■ 점진적 관세 감면 품목

품목	현행 MFN	개정 MFN	기한
신선/냉동 소고기	190%	90%	4년
양고기	50%	30%	2년
신선 가금류	kg당 5-9 NIS	kg당 3.75-6 NIS	1년
냉동 가금류	kg당 5-9 NIS	kg당 2.5-4.5 NIS	1년
소시지	30%~50%	22%	4년
주스	12%~30%	12%	4년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신선식품인 특정한 생선, 꽃, 허브 및 견과, 말린 과일, 씨앗, 버섯, 특정한 잼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세율을 감면하였다(표. 즉시 관세 감면 품목 참조).

■ 즉시 관세 감면 품목

품목	현행 MFN	개정 MFN	기한
생선	kg당 5 NIS	kg당 3 NIS	즉시
꽃	30%	20%	즉시
향신료	8~15%	4%	즉시
견과류	12~16%	4%	즉시
견과일	25%	8%	즉시
라즈베리	30%	20%	즉시
기타 딸기류	94%	75%	즉시
씨앗	8~25%	4%	즉시
버섯	12%	8%	즉시
잼	12%	4~8%	즉시
코코넛	12%	4%	즉시

마지막으로 내국 산업에서 사용하는 천연 자원 중 일부,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성품 중 일부, 일정 범위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3년간 차별적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녹말(전분), 생선 통조림, 할바, 설탕류(sweets) 비스킷, 아이스크림, 베이킹파우더, 불거(bulger), 메밀 등이 다(표. 차별 관세 감면 품목 참조).

■ 차별 관세 감면 품목

품목	현행 MFN	2012	2013	2013	2014
전분 프레이크	14%	0	0	0	0
감자 전분	8%	8%	6%	0	0
생선 통조림	12%	0	0	0	0
할바	12%	8%	8%	4%	4%
설탕류(sweets)	NIS 0.11/kg+10%	8%	5%	5%	5%
메밀	8%	8%	4%	0	0%
비스킷	12~18%	8%	8%	4%	4%
아이스크림	NIS 0.7/kg+12%	NIS 0.58/kg+10%	NIS 0.7/kg+6%	4%	4%
베이킹파우더	12%	10%	6%	0%	0%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02%를 부과하던 부두사용료를 지난 2010년부터 취소하여 2014년 현재 이스라엘은 부두사용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입금지품목>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h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Law of 198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



엘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수단,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수출통제

수출 금지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부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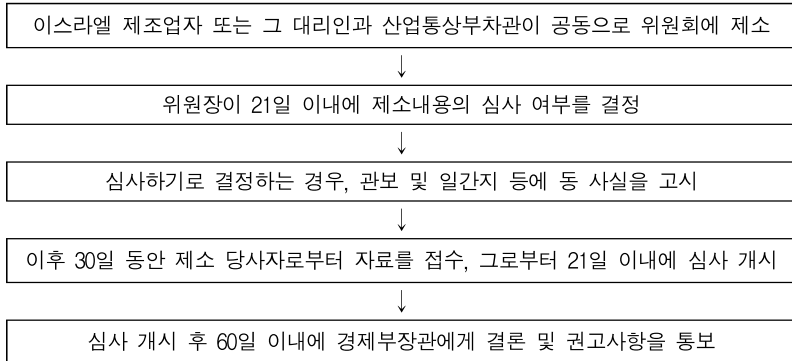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2006.8월 정부령으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만 하게 되었다.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제부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기는 하지만 GMO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공표하고 있지 않은 나라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된 식품 수출 시장이 GMO에 대한 관심이 큰 유럽이므로 많은 이스라엘 원자재 수입업자는 당해 제품이 GMO와 무관한지에 대해 수출업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마킹은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인쇄(printing), 각인(engraving), 날인(stamping)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을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봉합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마킹은 배경색과 다른 색깔로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야 한다. 인쇄 염료 또는 기타 마킹 물질이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중 포장 제품의 경우, 가장 바깥쪽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하며, 가장 바깥쪽 포장이 투명하여 그 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한다.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포장물(sub-package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하위 포장물 개수, 하위 포장물 내용, 전체 포장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케팅 조건에서 무게가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 예상 최대감실량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 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앗,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이었던 수입품은 2005.6.1일 이후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다. 동 개정예 의하여 규격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약 400개 품목의 절반 정도의 품목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규격 충족 여부 검사대상 품목 그룹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 필요 없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00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600여개는 강제표준이다.

수입 절차 간소화

이스라엘 국회는 수입시장의 경쟁 강화를 통한 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도입한 수입절차 간소화 정책을 승인해 2013.9.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스라엘에는 총 3,000개 표준이 있으며, 그중 550개가 이스라엘표준원의 인증이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절차 변경이후 수입



업자가 제출하는 문서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제부 소속 감독당국의 결정에 따라 표준원의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표준원의 검사를 요구한다.

정부 승인 이후 표준원의 승인이 필요한 550개 중 100개 표준에 대한 수입 절차가 완화되었다. 인증절차가 철회된 품목에는 세탁세제, 수도꼭지, 싱크대, 세라믹 타일, 도어 잠금장치, 어린이용 식탁, 자전거, 세라믹타일 등이 있다.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에서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통관 절차

통관 서류

이스라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나 포장박스, 상품포장 등에는 시장개척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Made in Korea는 도움이 된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수입 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10톤 이하 30일).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한다.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 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통관시 유의사항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 품은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진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부조달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

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전선, 전기자동차 등 특별 예외품목의 경우 35%)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한국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



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상의 우선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2009.11.23 약 56.9만달러) 이하일 것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특허의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후 2011.7.28일 개정된 바 있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제작일로부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 70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장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통상 국가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전에 대하여 경제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 투자센터(Israel In-



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는 이스라엘의 발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럽과의 유대 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건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엘에서의 회사등록 등이다.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세제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A, B,의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제조업 부분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개발 비용 및 건축비용의 20~24%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30만 셰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업의 경우 50.5% 부담)

■ 투자우대지역 구분

A 지역	B 지역
· 갈릴리 지역 북부	· A 지역 이외의 지역
· 요르단 계곡	
· 네게브 지역	
·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의 파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의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입자본(paid-up capital)이 최소 1천만 NIS(약 270만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①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 주주와 이사회적 적절성, ③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2011.10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State Bank of India 등 5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이스라엘계 상업은행은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6개가 영업중이다.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세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세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세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용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분야에서는 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로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



주자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이스라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부과되었던 마지막 규제가 폐지되었던 2003.1.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 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8월 돈세탁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2002.2.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6월 이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9만세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총 112만5천세켈을 초과하는 자금을 소지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

또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를 법무부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de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세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세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세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제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우수한 기술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나 농업, 건설 등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노동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단, 은행에서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임원급 인력은 그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자세 및 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세율은 10%였으나 2010년부터 상승하여 2014년 현재 20%이다(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세는 10%이며 건설분야 15%, 요식업분야 15%).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8천 세켈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스라엘 평균 월급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공사 관계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서양요리 이외의 요리점 및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 평균월급(2011.3월 8,996세켈)의 2배에 상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분야를 위하여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고용 쿼터는 2008년 500명이었다. 2009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쿼터는 설정하지 않고, 고용하면서 평균월급의 2배에 상당하는 임금을 보증하면 외국인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체류허가 및 발급절차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서 취업사증(B-1)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입증 증빙서류로 이스라엘 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추천서 및 기타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노동비자 취득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취업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가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사증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3~7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시 수수료로 1인당 1,210세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9,060세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7.2.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집트

이집트 정세

2010년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부격차 등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더 이상 독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차일피일 정치일정을 미루다가 2012년 5월에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이었던 무르시는 정통성은 부여 받았지만 충분한 수권 능력을 가지진 못했는데 이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결국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하에서 이슬람 세력이 신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외환보유고 감소,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민심은 무르시 대통령을 뒤로 하게 된다.



경제정책 실패와 이슬람 일변도의 정책 추진 등으로 반(反) 무르시, 반(反) 무슬림형제단 정서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군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르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다가 같은 해 7월 3일 결국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축출하게 된다.

선출된 지 1년 만에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자 이번에는 무르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반 무르시(세속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무슬림형제단)간 유혈 충돌로 비화 된다. 양세력간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군부는 2013년 8월 14일부터 나흘간 친 무르시 시위대를 강제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집계로만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게 되며 이후 정치 일정을 조율 하다가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 압둘 파타 엘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2014년 6월 8일 압둘 파타 엘시시 전국방장관이 이집트의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국방장관과 군총사령관을 겸임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2014년 3월 26일에야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정통 군인이다.

엘시시 대통령과 이집트 신정부는 과거 유혈 사태의 상처를 봉합하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히 과거 여당에서 테러 단체로 낙인 찍혀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의 정통성과 복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장벽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3월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2004.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과격적으로 평균 40% 나 인하한데 이어 2007.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4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2009.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0~135%), 화장품(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100개의 비필수품목과 썬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새우, 선박 등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또한 2014. 7. 3일 주류 및 담배 관세를 50%로 상향 조정하였고 현지 제조 맥주의 경우는 단순 세율만 조정 하였다.



수입부과금

1991년 판매세(법제11호/1991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도입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1.7월부터는 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확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율은 최고 20%(화장품 등 사치성 내구소비재)에서 최저 5%(빵 등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이며 보통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판매세는 평균세율보다 높아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600cc 이하가 15%, 1600~2000cc가 35%, 2000cc 이상은 45%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Central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산 밀의 ship back 사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중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계 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



는 실정이다(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원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2.12월 이후 외환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신용장 개설 및 외환 송금이 제한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외환 보유고의 지속되는 하락으로 인하여 외환 송금 제한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신송금(T/T) 방식과 신용장을 같이 이용하여 대금결제 및 송금을 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신송금을 대금의 30~50%를 보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50~70%의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점차 증가 중이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30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 군은 수입 가능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 기구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관광·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Machines, equipment and sport gears

4. Containers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이 있어야 함.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얻어야 함.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를 얻어야 함.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를 얻어야 함.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얻어야 함.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를 얻어야 함.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 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30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더불어 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가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6.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불공정 경쟁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장관의 재가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 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 업체 제품이 제소를 당해 1999.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산 및 EU산 타이어도 우리나라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1999.10월부터 현재까지 규제품목으로 분류된데 이어 2008.3.6일 인도 및 중국산 버스 및 트럭 타이어 대해서서도 반덤핑 부과 결정되었다. 2007년에는 한국산 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8.6월부터 2011년까지 이집트의 반덤핑 총 발동 건수는 총 35건으로 철강, 타이어, 램프, 문구,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는 타이어와 DOP(Dioctyl Phthalate) 등 2건이었으나,

2010. 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7.3(화)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검사대상은 130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애로사항이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체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시 건품의 수량을 최소로 축소하고, 검사기간의 단축 및 검사기준의 사전공고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JIS, ISO, DIN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그 규격 및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밖에, 1996.11월 수출입 통제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관련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여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 재개로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 Sample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제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며, 일반 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장치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1월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



쳐 규제를 강화한 바, 특히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 1600cc 미만은 40%, 1600cc 이상은 135%이며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한다. 판매세는 1600cc 미만에 15%, 1600cc 이상에 30%, 2000cc 이상에는 45%가 부과되며 또한 2000cc 이상의 승용차는 연간 차량가격의 2.5%가 보유세로 부과된다(차량가격은 세법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또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현대·기아 등은 소나타급 고급차량의 對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라 이집트정부는 관세 표준인 0~40% 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됨에 따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1600cc 이하 유럽산 승용차의 관세율(2012년 기준): 28%).

*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Other Part

자동차 타이어

1999.10월부터 반덤핑 관정을 받아 오다, 2010.10월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다. 서류심사만 거친 우성(현 넥센)의 타격이 가장 심한 반면, 금호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무혐의 관정을, 한국타이어는 경트럭용만 6.5% 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re-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제품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이집트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0% 이던 강철 봉에 관세를 7.3%를 부과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고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 일간지 혹은 영자신문 등에 게재된다.

입찰제도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기 어려운 편이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그러나 공공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원산지 제한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입찰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울러 입찰 보증시, 이집트 현지은행을 통한 입찰 보증을 하도록 명기되어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동 신용제공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 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산 제품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 규정(Country of Origin)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 당한 사례가 있다.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

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시 현지 행정 절차상의 까다로움이나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집트는 법적으로 에이전트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상업 에이전시 법 120항, 1982)

국방부 입찰을 제외한 계약에 참여 희망 해외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나 중개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공개 입찰 참여 희망 해외 기업이 에이전트와 벤더 등록에 합의를 하면 에이전트는 합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합의서는 에이전트의 종사 분야, 활동에 필요 재화, 서비스, 대행비용, 지불 방법, 지불 화폐, 합의서 용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은 공중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집트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의 사인이 있어야 하며, 그 후 이집트 에이전트가 이집트 외무부로부터 합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의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업은 이집트 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가 매년 13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병력규모면에서는 상시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M1A1 탱크, F-16 전투기 등 최신예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품, 야간 감시 장비 등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국내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상표 도용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기업의 일부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해결보다는 설득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다. 2002년에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법규를 개정(제82호/2002)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3년까지 의약품 특허가 보호되었으나,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으로부터 강력한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국내 영



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이집트 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 무효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트 파운드, 등록 수수료 60이집트 파운드, 출판 50이집트 파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호기간은 등록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비용은 건당 신청서 30이집트 파운드(L.E)*에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되며 등록 수수료가 75이집트 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75~100이집트 파운드가 소요된다. 이외에 출판비 30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로 소요된다.

* 2014.11.18 1\$=7.15 L.E - 이집트 국립은행(NBE)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

상 및 음반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10,000~5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BSA와 IDC의 2012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적판의 비중은 61%이며, 2012년 이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2002년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허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이집트 특허청

- 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 (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 (2)2792-1272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는데, 1997년에는 통합투자촉진법(제8호/1997)을 시행, 투자 허용분야를 16개로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분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2012.6.30 취임한 Morsy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장관 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한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 중재 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4. 담배산업

5. 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1. Reclamation and Cultivation of Barren and Desert Lands or either of them
2. Animal, Poultry and Fish Production
3. Industry and Mining
4. Hotels, Motels, Boarding Houses, Tourist Villages, Tourist Travel and Transport
5. Transport of Goods in Cooling Vans, Cold Store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Food Stuffs, Containers Stations, Grain Silos
6. Aviation Transportation and the Service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7. Overseas Maritime Transport
8. Oil Services for Digging and Exploration Operations, Transport and Delivery of Gas
9. Housing Projects, the Units of which are leased wholly empty for Non-Administrative Housing Purposes
10. The Infrastructure comprising drinking Water, Drainage Water Electricity, Roads and Communications
11. Hospitals and Medical Treatment Centers which offer 10% of their Capacity Free of Charge
12. Financial Leasing
13. Guaranteeing Subscription to Securities
14. Risk Capital



15. Production of Computer S/W and Systems
16. Projects funded by the Social Funds for Development
17. Developing New Urban Areas
18. S/W designing and Producing the Electronic Content
19. Establishing and Managing Technological Zones
20. Credit Classification
21. Factoring
22. Establishing, Managing and Operating or maintaining means of river group transport means within and between the New Towns, Cities and Urban Communities
23. Prosecuting Department for Industrial Projects and Utilities Projects
24. Collection of Garbage and Wastes of productive and service activities and their treatment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표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11년 10월 이집트정부는 부품 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 하여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40~45%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다. 대 이집트 직접 투자 시 이집트산 부품 의무 사용 비율에 대해서 이집트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요구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3월부터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가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장부지 불하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발청(IDA) 소관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토지 및 빌딩 소유 가능(제8호/1997)
 - 농지의 경우 외국인 단독소유 불가능 하며 이집트인 지분 51%이상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유가능(제15호/1963, 143호/1981)
 -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나이 반도의 경우 보안상 문제로 외국인부동산 소유 불가능(제56호/1988)
- 외국인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 가능(토지의 경우 일부 제한 조항이 있음 (제230호/1996))
 - 토지의 경우 아랍계 외국인은 시내 토지 소유 가능하나, 비 아랍계 외국인 시내 토지 소유는 불가능
 - 주택 건설용 토지 소유만 가능하며 2개 구획 각 4,000S/M 이내여야 함.
 -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총리 허가를 통해 면제될 수 있음.
 - 토지 획득 후 5년 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음.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 금융법(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 결제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2년 외환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엘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송금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아직까지 해외 송금은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절차상으로 까다로워 송금 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국외 여행 시 최대 1만 달러까지 소지가 허용된다.

이집트 정부는 외환 보유하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해외 본사 과실 송금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 가치적 성격의 판매세,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6월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32~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32%에서 25%로 인하하였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집트 세무당국의 증빙서 보관 및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중으로 발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세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합작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



야 한다.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05.6.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급여, 보너스, 주택수당, 의료보조비, 초과 근무수당 및 이와 관련된 수혜에 적용되며 과거 세율 32%를 25%로 인하하는 대신 소득대별 세율 적용을 다양화하였다.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연간 소득 (이집트 파운드)	세율(%)
0~5,000	0%
5,001~30,000	10%
30,001~45,000	15%
45,001~250,000	20%
250,000 이상	25%

주: 2013년 기준 개정내용이며 2014년 현재 세율임

자료: 이집트 재무부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며 판매세라고 하며 모든 국내 및 해외수입 재화나 용역에 적용되며,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25%로 일반 제품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는 엔진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판매세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거나 차(Tea), 설탕, 담배, 석유화학, 철강 등 부피가 큰 13개 제품에 대해서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는 5%, 일반제품은 10%, 사치품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용역(service)의 경우 5~10%의 세율(단, 전화요금은 유일하게 15%)이 적용되고 자동차는 1,600cc 미만은 15%, 1,600~2,000cc는 35%, 2,000cc 초과는 45%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한다.

사회보장제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보장제(Social Insurance)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 시 보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 사회 보장제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26%) + (가변소득 × 24%)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4%) + (가변소득 × 11%)
- 기본급은 700 이집트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하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열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6.15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4.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하하며 2,000,000 EGP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 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커머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850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

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능력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간 월급여가 무려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인상률은 매년 5~10%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2011년 들어 시민혁명 이후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013.9월 이집트 총리 Hazem El-Beblawi는 2014년 부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1,200 EGP(약 174 USD)로 인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대표와 기업 대표들 간의 논의 중에 있으며 130,000여개의 이집트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을 보인 상태이고 이에 조만간 정부가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급여

직종	월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L.E 35,000~40,000
Financial Director	L.E 30,000~35,000
Human-resources Director	L.E 30,000
Manager	L.E 15,000~20,000
Production manager	L.E 10,000~12,000
Accountant	L.E 5,000~10,000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L.E 7,000
Secretary	L.E 4,000

주: 1달러= 7.15 L.E(이집트 파운드) 2014.11.18 이집트 국립은행

임금 규정

최저임금 규정은 700EGP(공공부문 1,2000EGP)로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제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성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근무 수당에 비해 낮 시간 135%, 밤 시간 170%, 휴일 및 공휴일은 200% 이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산 휴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 성지 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 자세를



보이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관례이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1.25일 시민혁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lin에 의하면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 준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부의 공권력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강성 노조가 부상하면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작업 현장에서도 노사 분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 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의 신원확인서 발급→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운전면허 취득

한국-이집트 정부 간에는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시험을 통하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우리국민의 경우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기능에 관해 시험관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방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7.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에 의하면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10월 4대 국영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태리계 은행(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와 고객 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4월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돼지고기·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다가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 (인구3.8억명)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저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 협정(GAFTA)	1998.1.1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국가별 관세수와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간 FTA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 매년 10%씩 인하 ○농산물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1.1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2005.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터키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대 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대 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대 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MERCOSUR)	2010.8.2 서명 (2014.11.18 현재 미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우유, 산업제품: 4년 내 관세 면제 ○기타 협상 품목: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대자유 무역협정(African Grand FTA)	2011.6.12 26개국 정상간 창설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ESA,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 (동아프리카공동체)간 FTA ○인구 5.5억 명으로 아프리카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8,300억 달러)
아프리카 FTA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12월 가나 아크라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회의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약 8,500만에(2014년 1월 추정치) 그 중 약 10%(800~1,000만)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탄탄한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60.2%가 30세 미만(2014년 1월 추정치)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이집트 통계청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실업률이 13.2%, 대졸 실업률은 31.1%로 인력 채용이 용이하며,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 생산성은 144개국 중 14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년 기본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무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이집트 사업 개시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1인당 소득의 9.7%	7개	8일

※ 자료: Doing Business 2014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 무역지대의 경우도 2008.5.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 층의 높은 인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정부 투명성(163개국 중 70위) ○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포스트 브릭스 특징

이집트는 향후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 받을 만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한다.

○ 투자 리스크 존재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 요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업개시 소요기간이 8일로 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 평균 19.9일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비용도 국민소득대비 174%에서 108%로 감소되었고,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63일 수준이다(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평균은 33일).

그러나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이집트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투자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89개국 중 128위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109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집트의 국가 경쟁력

World Bank는 「2014-2015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집트의 국가경쟁력을 종전 118위에서 119위(전체 대상국은 144개국)로 하락시켰다. 이밖에 건강 및 기초 교육 분야 97위, 거시경제 환경 141위, Market 효율성 118위, 노동시장 효율성 140위, 시장 규모 29위이다.

동 보고서는 이집트 경제에 대한 우려사항으로서 ①GDP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 적자 등 이집트 거시경제 환경 악화, ②경제 부흥에 필요한 이집트 국내경쟁력 강화 문제, ③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능률 향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적도기니

경제 개관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인구 약 75만 명에 영토면적 28,051km²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000km²)을 보유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 적도기니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유 생산량 (단위 1,000 b/d)	299.8	281.7	256.1	239.9	256.7
천연가스 시장생산량(marketed production) (단위million standard cu m)	6,670	5,900	6,136	6,235	6,500
천연가스 수출량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5,170	4,720	5,160	5,260	4,720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13)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PPP)가 27,733 달러(2013년)로 높고,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 202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개발계획의 1단계(2008-12)는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발전소/송전망) 및 공공건물(병원/학교) 분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비교



적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2013년 시작된 2단계는 수익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농축산, 어업, 석유화학/광업, 관광 및 금융서비스)의 인프라를 개발, 석유/가스(GDP의 90%에 근접) 일변도의 경제 구조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다양화 정책은 아직 큰 진전이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같다. 적도기니는 1인당 GDP(27,733 달러 / 2013년)가 세계 59위로 높지만, 인간개발지수(HDI)는 187개 국가 중 136위로 매우 낮으며, 부패지수(CPI)는 175개국 중 16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10월 기준, 경제관련 적도기니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는 에너지부장관, 항만청장, 관급공사 발주청(GE PROJECT) 운영위원장은 모두 오비앙 대통령의 자녀이며, 국영석유회사(GEPETROL) 사장은 대통령의 처남이다.

무역 환경

관세 장벽

수입 관세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에 공통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CEMAC의 관세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하다.

<http://www.sydonia.cemac.int/>

그러나, 위 공통 관세율과 제도는 적도기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담당 기관 또는 담당자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과 역량 부족으로 규정과

달리 적용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현실이 적도기니 수출입의 큰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 1 제1 분류: 생활필수품 5%
 - 1 제2 분류: 장비 및 원자재 10%
 - 1 제3 분류: 중간재(준 가공품) 20%
 - 1 제4 분류: 소비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¹
 - 1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²
 - 1 상업세: 1%
 - 1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³
3. CEMAC 세금(Tasa)⁴
 - 1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 1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⁵ (CCI) 0.4%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1_ 세금(Impuesto): 스페인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_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2, 3을 참조할 것
 3_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4_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5_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CEMAC 개요>

- 공식 명칭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중부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 설립 조약
Traité Institu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차드 은자메나, 1994.3.16) / 2008.6.25 개정(카메룬, 야운데)
- 회원국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콩고)
- CEMAC 추구 주요 목표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왕래에 기반하는 공동시장 창설
 - 공동통화(FCFA)의 안정적 관리확보
 - 경제활동 및 일반적 비즈니스의 안전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정책 규범의 통일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가봉)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면제된다.

적도기니 투자법의 특별 제도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또한 적도기니 정부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도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도 세금 면제대상이 된다.

비관세 장벽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법 또한 고용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임시 수입 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 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다.

수출 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 FCFA 이상의 수출은 허가 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2013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너 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600의 비용이 들어, 서류 작성에 있어서는 사하라이남 국가의 평균인 9가지 보다 적고, 그 비용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2567달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소요 기간은 44일로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인 37일보다 훨씬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환경 편의성에 있어서 183개 조사국가 중 136위에 머물렀지만 CEMAC 회원국인 카메룬(157위), 콩고 공화국(181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82)위 보다는 높고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137위)과 비슷하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44일,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37, OECD 고소득국가 평균 10일)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아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군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14	285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10	100
하역 및 화물 취급	2	660
내륙 운송 및 취급	3	345
총계	29	1390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	비용 (미화)
서류 절차	20	270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14	325
하역 및 화물 취급	8	660
내륙 운송 및 취급	2	345
총계	44	1600

투자 환경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은 인구의 적도기니는 그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ECOWA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 하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과 산업화 계획(PEGI 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Horizonte 202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Agencia Nacional 2020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PEGI 2020는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as Industria y Energía)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이다.

적도기니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Ley Nú 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하여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적도기니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 진출 외국기업의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를 보장하여야 하고, 또한 이사회 내국인 구성원의 수 관련, 최소 3명에 이사회 구성원의 1/3이 상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 사업 허가

외국인자본에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제외하고, 적도기니 투자법이 보호하는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 경제계획, 개발 및 공공투자 부⁶는 투자 기업이 경제재정부의 조건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신청한지 60일안에 자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과 발기인을 서술하고 투자자들의 신용보고, 상업 전력 및 도덕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제계획, 개발 및 공공투자 부는 사업에 관여된 해외 투자자의 전력 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사업의 승인 증명서 혹은 기각 증명서를 발행하며, 승인증명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주어질 혜택과 이익을 명시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를 묘사하고 확정하며 수입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세금

가. 부동산 세금

1) 농촌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경작여부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세금은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 고정세율: 1헥타르 당 100 Fcfa 부과. 반기별로 합산하여, 2/4 및 4/4분기에 납부
 - 변동세율: 소득에 따라 부과.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하여 납부

⁶ 2013.9.4일 개각 시 경제계획, 개발 및 공공투자부를 경제, 계획 및 공공 투자부로 조직명이 변경되어 관할 부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세금 면제와 공제

- 면제: 5 헥타르 미만의 농지, 공공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할당된 국가행정 토지, 마을의 공동자산
- 공제: 커피, 카카오, 먹거리 및 팜유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 공제

2) 도시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대지와 건물의 가치에 근거한 도시 자산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대지와 건물 가치의 0.4%
- 세금 면제와 공제: 과세 표준액이 100만 Fcfa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나. 법인세

- 세금의 성격 : 기업이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세율: 35%
- 세금 면제와 공제
 - 농업분야 회사, 협동 및 노동조합 그리고 그 연맹.(단, 물품구매/조달 협동조합은 예외)
 - 농업상호신용은행
 - 상호지원 조합
 - 제한된 기간의 상품전시회, 전시회, 스포츠행사, 공중 대상 시연행사
 - 과세대상 수익이 세법 192조에 규정된 최소금액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 특성의 유한책임회사(SRL)
 - 농촌개발 담당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업 또는 조직

다. 개인 소득세(IRPF)

- 세의 성격 : IRPF는 CEMAC권내에 통일되어있다. 개인이 적도기니에서 얻은 총 순수익(Ingresos globales netos)을 대상으로 부과



- 세율: 과세대상 소득 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과세대상 년 소득	GRAVAMEN (적용세율)	IMPUESTO (원천징수 세금)
0~1,000,000 Fcfa	면제	면제
1,000,001~3,000,000 Fcfa	10%	200,000
3,000,001~5,000,000 Fcfa	15%	500,000
5,000,001~10,000,000 Fcfa	20%	1,500,000
10,000,001~15,000,000 Fcfa	25%	2,750,000
15,000,001~20,000,000	30%	4,250,000
20,000,000 이상	35%	

- 세금 면제와 공제: 100만Fcfa미만의 수익. 외교관(상호주의 조건)

라. 석유/가스 생산관련 로열티

- 로열티의 성격: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량에 부과하는 금액
- 세율: 최소 13%. 일 생산율을 기초로 계약에 의거 로열티의 증액 가능
- 부과기준: 계약서상의 일 생산량 비율이 달성되는 날부터 추출 저장된 탄화수소의 전체 량
- 관련 법: 적도기니 탄화수소법(제58조)

마. 부가가치세(IVA)

- 세의 성격: IVA는 CEMAC 회원국 통일된 세금
- 세율: 15%.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세법 부속서 ANEXO II에 명시된 재화⁷: 6%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⁸: 0%
 - 세법 부속서 ANEXO I(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⁹: 0%

7_ 별첨 3 참조

8_ 별첨 1 참조

9_ 별첨 2 참조

- 과세대상
 - 재산권의 매각
 - 서비스 공급
 - 재화와 서비스 소비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영업활동, 전문직 활동, 개인 활동 및 모든 종류의 추출활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거래(* 추출활동: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 활동을 의미)
 - 재화의 수입(輸入)
- 면제: 아래 “바”항 참조

바. 부가세(IVA) 및 특별세(Derecho Especial)면제 대상

- 1) 농민, 목장주, 어민, 사냥꾼 취득하고, 그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1차 상품
- 2) 특정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
 - 토양 및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재화 판매
 -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개인에 의한 부동산 양도거래로서, 재산양도세(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부과 대상인 부동산 양도거래
 -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 금융 또는 신용기관의 일반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자
 - 여행객의 50만 Fcfa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수입(輸入)
 - 특정 세금의 부과 대상인 은행거래, 보험거래 및 재보험 거래
 - 재산양도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양도 그리고 영업권 교환(mutaciones de fondos de comercio)
- 3) 부상자 및 환자 수송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유사시설의 의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자에 의한 의료
- 4) 세법 부속서(Anexo I)¹⁰ 명시된 생필품



- 5) 공사립 교육기관 또는 유사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 6) 학교 또는 대학교 책 수입 및 판매
- 7) 광고수익을 제외한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판매
- 8) 가구가 없는 주택의 임대(료)
- 9) 다음 주체에 의한 국제수송관련 거래
 - 공해에서 산업 또는 무역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배
 - 구난용 배 또는 지원용 배
 - CEMAC의 세관 법(Le Code des Douanes de la CEMAC) 제158조 규정과 제158조 이후 후속 규정에 따른, 국가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이러한 왕래관련 서비스
- 10) 사회, 교육, 스포츠, 문화, 자선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또는 거래로, 그 운영이 자선적이고 헌신적인 비영리 기관에 의해 그 회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그 회원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이러한 거래가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
- 11) 세법 부속서(Anexo I bis)¹¹⁾에 명시된 자본재
- 12) 관세유예 제도 : 세금부과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광업, 석유 및 산림 분야 기업에 적용가능. 단, 탐사, 시굴, 연구 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투자재에 한정.
-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 활동관련은 과세 대상에서 (단, 산업 및 상업분야 거래시는 과세대상)

¹⁰⁾ 별첨 1 참조

¹¹⁾ 별첨 2 참조

투자 인센티브

1) 적도기니에 투자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 1992.4.30 법률(Ley Nú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

- 신규고용 창출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직원에 지불된 급여의 50%를 공제
- 내국인 직원교육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교육비(급여제외)의 200%를 공제
-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지원관련, 적도기니에 있는 은행에 외화로 입급된 비전통적 상품수출의 FOB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신용증서 수혜(동 신용증서는 세금 또는 관세 지불에 사용)

- 신용증서: Certificado de crédito

* 비 전통상품 수출(Exportaciones no tradicionales) :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부가 가치를 높인 상품

- 지역개발관련,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수혜
 - 지불된 인프라 비용 총액 감가상각. 동 비용 지불 회계 연도에 적용하며, 손실 발생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
 - 모든 종류의 납세의무 면제. 단,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회사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은 제외
- 내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국인 보유 회사지분 금액에 계수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순익의 외국송금과 그 자본의 본국 송금이 가능

3) 면세 항구(지역)

가) 위치

- 말라보: K5 Oil Center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 Luba: Luba Freeport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나) 면세지역의 모든 기업은 아래 세금 면제

- 면세지역에서 사용할 모든 재화 또는 석유분야용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면제
 - 법인세
 - 부가가치세(IVA)
 - 개인 소득세(IRPF)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도기니 정부에 신청필요

정부조달 장벽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 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 -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5.21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 세금면제 절차

- 공사/용역수주와 경비지불 조건 : 납세번호(NIF)구비 필수, 국가계약법절차 준수, 사전타당성 조사
필수, 기 수주 공사 중 미 실행 공사 재검토 대상
- 공공투자 공사경비 지불 : 년 3회로 제한
- * 위 대통령령 상세내용 : <http://blog.naver.com/sompat/220057498272>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 현황

적도기니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와 조약 및 아프리카 지역 기구와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산업 재산권에 관련한 적도기니 법(법 5/2000) 등을 제정하는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관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 기구 및 조약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OAPI

적도기니는 OAPI 회원국으로, 적도기니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OAPI 등록 필요

지적재산권관련 OAPI 설립협정의 10개 부속서 개요

- 부속서 I : 발명특허



- 부속서 II : 실용신안(實用新案)권
- 부속서 III : 상표와 서비스표
- 부속서 IV : 산업디자인
- 부속서 V : 상호(商號)
- 부속서 VI : 지리적 표시
- 부속서 VII : 문예저작권
- 부속서 VIII : 부정경쟁방지
- 부속서 IX : 집적 회로(集積回路) 배치설계
- 부속서 X : 식물신품종보호(2006.1.1 발효)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담당기관(CICTE/ 적도기니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을 1987년 설립,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결여와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공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기타 장벽

지사 설치상의 제약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사는 무역부 부령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지사설립 2년 이내에 적도기니의 법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OHADA 관련 규정 참조)

- OHADA 관련 규정: “회사와 경제이익그룹 관련 통일법
(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COMMERCIAL)
제120조
- 적도기니 포함 아프리카 17개국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 설립 제약

기업 활동에 내국인 참여 강화하는 보완규정 관련 대통령령(Decreto Núm 127/2,004)은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도기니 국적인의 최소 참여조항을 규정하여 외국회사의 독단적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다.

- 회사 지분: 적도기니 국적인의 지분이 최소 회사자본의 35%로 규정
- 주주: 적도기니 국적인 최소 3인
-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의 최소 1/3 이상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¹²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하며,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장 중요한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는바,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의 법인 설립의 편의성 조사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조사 대상국 185개 국 중 있어서 2013년 182위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설립에는 18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 기간은 평균 135일, 비용은 미화 약 30,000달러가 소요된다.

¹² 별첨 5, 6 참조



비자 및 거주 증

적도기니 입국에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FCFA(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 및 거주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2.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과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 FCFA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 제한 (Expat Quota)

적도기니 내 민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까지이며, 석유분야 기업의 경우 30%까지 제한되어 있다.

별첨 1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료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교과서
13	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16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별첨 2

세법 부속서 ANEXO I (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서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서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63000	자동 전구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84252000	갱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원치
84253100	핸드 원치 와 전기 원치
84253900	기타 핸드원치와 원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중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84371010 부터 84378000 까지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81000 부터 84388000 까지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91000 부터 84399100 까지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401000	제본기
8441140 부터 84418000 까지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21000 부터 84423000 까지	인쇄판 생산기
84431100 부터 84433600 까지	인쇄기
84440000	섬유 방적기
84451100 부터 84459000 까지	직물기 (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71100 부터 84479000 까지	니트 기계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뺑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84522900 까지	가정용 이외의 제봉기(84521000제외)
84531000 부터 84538000 까지	가죽의 생산이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41000 부터 84543000 까지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51000 부터 84553000 까지	금속 압연기
84561000 부터 94569000 까지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84571000 부터 84573000 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81100 부터 84589900 까지	고철 처리 크레인
84591000 부터 84597000 까지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601100 부터 84609000 까지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94611000 부터 84619000 까지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푸집

별첨 3

6%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 품목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별첨4

특별세 적용 상품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IV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아음료	IV	25%	15%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2204.21.30 2204.29.1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 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IV	40%	3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더); 에틸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유량이 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 변성 에틸알코올 함유량 80%, 아니스 증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IV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II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IV	50%	25%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II, III, IV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II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II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IV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 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 타)	IV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 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터셰이브, 방취용 화장품,제 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 (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7101.00.00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 공품 모조 보석, 경화 (모든 하위 품목)	IV	20%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IV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II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IV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IV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IV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8mm 미만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IV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IV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IV	25%	
9008.10.00	영사기	IV	25%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IV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IV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IV	27%	

별첨 5

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의 적도기니 내 법인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법인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 주의: 본 법인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한다는 스페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용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 서류(전년도 Financial Report 등
7. 적도기니 법인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적도기니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기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FCFA 10,000,000)

별첨6

적도기니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	신원 조회서 발급	1일	-
2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인한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정관을 작성한다. 법으로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공공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인은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주재)	3~14일	자본의 3~6%
3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 (공공증서)을 등록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정관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유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회사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	2~3일	자본의 3%
4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지불 증명서 발급 (법적으로는 회사등록 이전에 최소자본을 예금해야 하지만 법인구좌를 열기위해서는 공증정관과 등록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일	-
5	지불 능력 증명서 발급 (지불능력증명서는 UNIGES에서 발급받는다)	2일	CFA 10,000 ~ 15,000 (수입인지)
6	총리실로부터 회사 설립 허가 신청 (설립허가신청서류는 회사의 목적기술서와 사회기여 계획서를 포함하며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는 회사의 사업 분야에 따라 회사설립허가 이전에 관할부처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회사는 2장의 지급능력증명서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1~12 개월	CFA 2,000 (수입인지)
7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중소기업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CFA 100,000
8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상무 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CFA 150,000
9	* 세금 등록 신청 - 회사 설립 허가서와 회사 공인 정관 사본 첨부해야 한다. - 납부금은 재무부 (public treasury)의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 재무부로부터 납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세금 등록관할당국에서 납세자번호를 취득한다. - 모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허가 신청 혹은 신고한	1일	자본의 1% (납세자번호) + 자본의 1% (최소 회계 납부금) + CAF 2,000 (납세자번호)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후 해당 납입금을 입금하고 재무부의 입금 확인 발급 받아 각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0	* 노동부에 운영 개시 신고 - 운영을 개시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 피고용인은 0.5%를 노동자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표기된 납부금은 공식적인 납부금으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1일	CFA 300 (서식) CFA 6,750 (소규모) - CFA 12,500 (중)
11	* 재무부의 구좌로 납입금 입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납입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재무부구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1일	7~10번 절차
12	재무부로부터 납입금 확인증 수령	3~5일	-
13	경제상무 기업 진흥 부의 중소기업과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7번 절차에 포함
14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상무 과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13번 절차와 동시 진행 가능)	8번 절차에 포함
15	납세자 번호 취득	2일	9번 절차에 포함
16	노동부 등록 번호 취득	1일	10번 절차에 포함
17	사회보장번호 취득	-	-
18	사회보장(INSESO) 등록 - 기업은 종업원 첫 급여 지급 월에 사회보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납부금은 고용주 피고용인 월급의 21.5%를, 피고용인이 월급의 4.5% 부담한다.	1일	페이지당 CFA 300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카메룬

I. 카메룬 경제 개관

일반 사항

공식국명	카메룬(Cameroon)
수도	야운데(Yaoundé)
면적	475,442km ²
인구	2,260만명(2014, EIU 기준)
주요도시	Douala 2,132천명, Yaoundé (수도) 1,812천명, Garoua 574천명, Bamenda 546천명, Maroua 437천명, Bafoussam 383천명, Ngaoundéré 314천명, Bertoua 297천명
언어	영어, 프랑스어
종교	천주교/기독교(45%), 이슬람교(22%), 전통종교(25%) 등
건국일	1960.1.1 카메룬 공화국 수립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폴 비야 대통령
입법부	양원제 280의석 (상원 100명, 하원 180명), 임기 5년
기후	○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열대우림기후에서 사바나, 사하라 사막성 기후로 바뀜 ○ 건기(12-3월), 점이기, 우기(6월-11월)로 나뉨
시차	8시간(한국시각 오후 5시가 현지시각 오전 9시)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 GDP 2303억달러 (2014년 추정치) ○ 2014년 성장률 목표치 : 4.8% ○ 구성 : 서비스 48.4%, 농업 19.7%, 제조업 31.9% ○ 1인당 GDP : 2,842달러 (2014년 PPP기준 추정치)
노동력	810만명(2011 추정치) ; 농업 70%, 제조업 13%, 서비스업 17%
소비자물가	2.2%(2014년 추정치), 2.5%(2015년 전망치)
화폐단위	CFA Franc
환율	1EURO = 655.957CFA (유로화 고정)
외채	41억 7백만달러 (2013년 기준)
수출입	○ 2014년 (수출 65억달러, 수입 69억달러) ○ 2013년 (수출 60억달러, 수입 65억달러) ○ 2012년 (수출 57억달러, 수입 60억달러)

한-카메룬 경제 관계

가. 무역

1) 최근 교역 추이

한-카메룬의 교역 규모는 2011년까지 대체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유럽 및 세계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2014년 8월말 기준 한-카메룬간 교역 규모는 수출 2천4백만달러, 수입 3백3십만달러로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12%, 수입도 34.7%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도의 수출 감소는 광통신용 전선과 광산기계류 및 화물자동차의 대폭적인 수출감소에 기인함. 광통신용 전선은 2013년도에 560만불이 수출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1만4천불로서 99%가 감소되었으며, 광산기계류의 경우 2013년도에는 150만불이 수출되었으나 2014년 8월 현재 전년대비 87%가 감소한 17만불에 불과하며, 화물자동차도 2013년도에는 326만불이 수출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75%가 감소한 58만불에 불과함.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량 수출품목인 중고의류의 경우에도 10%가량 감소하여 전년도에는 960만불이 수출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약 400만불 이상이 감소한 570만불 수출에 불과함. 수입도 가장 주된 수입품인 금과 원목의 수입이 2013년 대비 각각 24%, 18% 감소함에 따라 수입액 총액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임.

■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카메룬 수출입 추이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4년 8월	24,923	-16.1	3,326	-34.7
2013	43,558	-19.5	9,905	-7.2
2012	54,101	-22.8	10,678	-74.6
2011	70,050	45.4	41,982	316.8
2010	48,175	49.2	10,072	-56.9

자료: KOTIS

2) 수출입 품목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으로는 중고의류 등 기타섬유제품이 최대의 수출품목이며, 다음으로는 승용차 및 사진 영상용 자재 등임. 반면, 수입은 금괴 및 원목 등의 1차산업 제품으로 전체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3		2014(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기타섬유제품	9,632,310	1.1	5,739,406	-9.2
2	승용차	3,219,195	-23.6	3,700,433	106.9
3	합성수지	4,227,671	7.2	3,087,529	21.2
4	칼라TV	1,696,122	-18.9	1,455,381	12.5
5	기타석유화학제품	2,299,041	-29	1,378,598	-3
6	철구조물	745,519	8,302.10	1,341,552	402.7
7	건설중장비	2,184,010	229.4	689,707	32.5
8	화물자동차	3,260,042	148.9	578,174	-74.5
9	기타플라스틱제품	139,474	-3.9	528,836	395.2
10	인조섬유장섬유사	430,960	-5.1	423,641	31.7

자료: KOTIS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3		2014(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금	6,104,667	3.2	2,095,901	-24.2
2	원목	599,564	44.3	272,578	-18.4
3	기타조명기기	3,868	-87.4	196,869	4,989.70
4	안료	0	-	157,122	-
5	전동기	5,100	-94.5	132,496	2,498.00
6	제재목	28,478	-82.4	130,145	663.2
7	유선전송장치	618	-92.4	40,086	-
8	단판	82,083	-	36,681	-19.3
9	집적회로반도체	78,705	7.8	24,954	-65.5
10	기타목재류	35,169	-95.6	22,500	-36

자료: KOTIS

나.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1)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 현재 카메룬내 국내 투자진출 법인 수는 3개사이나 동 법인내 한국으로부터의 파견 한국인 근로자는 전무함.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 현황

투자현황	2008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신규 법인수 (폐쇄법인수)	2	1	1	1	1(1)	0	0	5
투자액 (천USD)	399	21	105	1,069	33	0	0	1,62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진출 기업 현황

대우인터내셔널(무역), 대우카메룬(광산개발), 한국항만기술단(항만엔지니어링)

2) 대 카메룬 투자진출 부진 사유

-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 유인 요인 부족
 - 2011년도 부패지수가 세계 134위로서 매우 높고 조세제도 등 기업 운영에 너무 많은 불투명성 존재
 - * 조세징수에 법령이 준수되지 않고 징수자와 납세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징수된 세금의 60% 이상이 징수원 착복
 - 현 대통령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에 따른 정세 불안 요인 상존
- 부실한 인프라 및 열악한 생활 환경
 -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보급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지방의 경우에는 5%에 불과
 - 도로 포장율도 전체 5만 km 중 8.6%에 불과한 4,300km만 포장되어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연간 2,5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
 - 카메룬내 철도망은 1,009km에 이르나 협궤로서 목재의 운송 등에 주로 사용되며, 승객 이동용으로서의 사용율은 매우 낮음

카메룬 경제 동향

가. 2014년도 카메룬 경제 전망

카메룬 정부는 2014년 정부예산은 총 3조3,120억 세파프랑(약68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도에 비해 2.3%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율 4.8%, 물가상승율 2.8%를 가정하에 수립한 것임.

BEAC(중앙아프리카 금융통화위원회)는 연초 2014년 카메룬의 경제성장율을 5.4%로 전망한 바 있으며, 카메룬내 인프라 투자 진행과 원유 수출 증가를 근거로 7.31일에 이러한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2014년에 빈곤 퇴치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두고 있어 에너지, 농업, 인프라와 광물분야 등에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더불어 청년 리더 양성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주안점이 두어질 것임. 이들 분야는 2014년도에 1조 세파프랑이 투입되어 2013년보다 430억 세파프랑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임.

■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3	2014	2015
실질 성장률(%)	5.5	5.1	5.2
원유 생산량(천배럴/일)	66.4	76.1	82.1
소비자 물가(%)	2.0	2.2	2.5
수출(억달러)	60	65	68
수입(억달러)	65	69	7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나. 2014 경제 정책의 변화

2014년도 카메룬의 경제정책상의 가장 큰 변화는 IMF가 그동안 권유해 온 유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임. 2014년 7.1일부로 삭감된 유가 보조금으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4%, 15% 인상되었으며, 동 유가 인상은 택시 요금 인상 등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카메룬 북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슬람계 나이지리아 반군인 보코하람으로 인해 카메룬과 차드 및 중앙아프리카 간 국경무역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여기에 2014년 하반기부터 기니, 시에라레온, 라이베리아 등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이 인근국인 나이지리아에도 영향을 미쳐 나이지리아에서 환자 4명이 사망함에 따라 카메룬-나이지리아간 국경이 8월부터 폐쇄되어 나이지리아에서 카메룬에 공급되는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다. 경제 개요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가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숙,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카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2014년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결과 카메룬은 189개국 중 168위를 차지해 2013년(161위/185국)보다 오히려 7단계 하락하였음.

최근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유가로 인해 2013, 2014년 모두 4% 이상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당초 예상 성장률 5.2%에 못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성장율인 7%와는 차이가 커서 2035년도에 신흥성장국으로 부상한다는 'VISION 2035'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카메룬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에디오피아, 세네갈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보다 높은 편이나,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프라 수준은 최저 수준 이면서 부패지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음.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음.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음.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화(XAF) 가치가 50% 절하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음. 2005.10월 IMF가 승인한 3년 기한의 빈곤감소 및 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은 2008년말 종료되었음.

공식 통계상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으나 카메룬 국민들은 곡가, 유가 등 생활물가 양등에 좌절하였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2008.2월 Douala, Yaoundé 등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유혈폭동·소요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2008.3월 카메룬 정부는 기초 생활용품 물가인하를 위해 식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음. 정부가 추진해 온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부진한 상태임. 종래 국영수도회사(National Water Utility: SNEC)는 2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어, 수도 인프라를 관장하는 CAMWATER는 아직 정부 소유로 남아 있으며, 동 부문을 제외한 SNEC는 현재 모로코수도회사(Moroccan Water Utility)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음.

국영항공사 CAMAIR 및 국영통신회사 CAMTEL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이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과 외국 투자자들의 카메룬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음. CAMTEL은 정통부 감독 하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CAMAIR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2008.5월 모든 취항을 중단했다가 2009년도에 Camair-Co를 재설립하여 2011.3월부터 취항을 재개했음

카메룬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이 전체수입의 36.6%와 수출의 66.1%를 차지하고 있음. 여타 지역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카메룬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차드-카메룬 송유관과 등 에너지 분야 및 플랜테이션 농작물 재배(Del Monte)에 진출해 있음. 중국은 최근 카메룬 중·저가 공

산품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카메룬산 목재를 대량 수입해 감으로써 카메룬의 신흥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카메룬은 천혜의 농업환경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카메룬 정부는 선진국의 외채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 민영화 정책 지속 추진,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온 정부의 비능률적인 경제관리, 관료주의와 부패, 대외부채의 증가 등을 향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부가 카메룬 경제·사회 발전의 관건임. 'VISION 2035'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EU, 프랑스, 중국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통해 전력, 도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 지역 6개국(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 적도 기니, 가봉)이 속한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CEMAC) 총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 내 경제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나, CEMAC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라.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013년도 EIU 추정 카메룬의 실질GDP 성장률은 5.5%였으며, 2014년은 5.1%, 2015년은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제 유가의 향방이 전망치 달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비스업과 농업의 발전, 지속적인 새로운 유전개발로 2015부터 2017년까지 매해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카메룬의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2013년 66,400 배럴, 2014년 76,1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2015년에는 82,100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카메룬의 산유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시추 장비의 노후와 투자부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기업 Bowleven의 탐사결과 두알라 근처에서 새로 두 개의 경제성 있는 유전이 발견된 바 있음.

또한 2002년 제정된 가스법을 2012.4월에 의회가 원유 및 가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가스 법 개정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25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Gas Agreement제도 도입을 통해 카메룬 정부와 개발업체간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가스 개발 회사에는 관세인하(5%) 및 법인세를 비롯 각종 세금을 10년간 면제하는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음.

2011.12월부터 두알라 해상에서 Rodeo Development사에 의해 개발된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두알라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으며, 남부 해안 Kribi에는 216mw 용량의 가스화력 발전소가 2013.4월부터 가동 중임.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경제상황 이외에 IMF에서는 GDP의 1.4%에 달하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원유보조금(정부예산의 14%)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2014년 7월1일부로 유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유가가 14~15% 이상 급등하여 재정의 건정성은 강화되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감소 및 수출가격 경쟁력의 악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한결 높아진 상태임.

마.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환율

카메룬의 CFA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으며 환율의 평가절하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산유량 증대에 따른 외화수입 증

가도 카메룬의 외부포지션을 강화시키고 외환 보유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2013년 US 1달러기준, 494 CFA이었고, 2014년엔 485 CFA로 평가되었으나 미국경제가 유로존의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이후로는 1달러당 521 CFA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음.

유로화와 카메룬 현지화의 환율은 Euro 1=CFA 655.957로 고정임.

○ 재정

2014년도 재정적자는 유가 보조금의 축소로 인해 당초 예상치인 4.1% 보다 다소 낮은 GDP의 3.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가 보조금으로 2014년도 1/4분기에만 GDP의 1.2%, 유가 보조금 연간 책정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570억 세파프랑(약 35억달러 해당)이 기지출된 바 있음.

○ 물가

카메룬 정부는 물가수준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는 있으나 카메룬은 매년 전체 수입액의 10~15%인 5~6억달러 가량이 쌀과 밀 및 어류 수입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에 따라 물가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카메룬 경제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새로이 2014년 7.1일부터 시행된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의 경우 물가상승율이 당초 전망치인 1.8%보다 다소 높아진 2.2%, 2015년도에는 2.5%로 전망되고 있음.

바. 카메룬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

2014.7.1일 인상된 국내 정유가격의 급상승(14~15%)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 교통비(택시 기본요금 인상 200 ⇒ 250 CFA)가 이미 인상되었으며, 군인을 비롯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를 5% 인상하도록 대통령령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한층 강화된 상황임.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조와 서비스업 전분야로 영향을 미쳐 카메룬산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보코 하람

카메룬과 인접한 나이지리아내 이슬람 반군인 보코하람은 2013년초 프랑스인 가족과 이탈리아 신부 등을 카메룬 북부지역에서 납치하여 카메룬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이나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후부터 카메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2014년 7월말에는 부총리 부인을 포함 수명이 납치되었으며, 7.26일에 있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 카메룬 정부군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바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카메룬은 정부군 1,000여명을 카메룬 북부와 나이지리아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음.

보코하람은 단순한 테러에 따른 치안 불안을 넘어 카메룬과 차드 및 나이지리아의 국경 무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중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던 카메룬이 치안 불안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 에볼라 바이러스

인근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카메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카메룬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환자 발생에 대해 발표된 바는 없음.

그러나 접경국인 나이지리아내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동지역이 카메룬에 인접한 지역으로 인해 카메룬 정부는 8월부터 나이지리아와의 국경폐쇄를 통해 물적, 인적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음. 나이지리아는 카메룬 최대의 수입국이면서 8대 수출국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원자재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폐쇄는 생산 차질 등 가뜩이나 힘든 카메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II. 무역 환경

관세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했음.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세산정 방식을 단순화했음.

1998.1월부터 이론상으로는 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용되고 있음.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됨. 카메룬에서는 관세 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품목의 가액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음.

카메룬 정부는 2001.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음.

1994년 지역재정개혁프로그램(Regional Fiscal Reform Program)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6가지 관세 및 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일반화된 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잠정적인 추징금(Temporary Surcharge), 물품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기타 서비스세(Service Tax)

공동대외관세(불어 약자로 TEC)는 대상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5~20%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카테고리	내용	TEC 세율
I	필수품목(장관령에 의해 정하며, 필수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임.)	5
II	원료 및 기구	10
III	중간재(반가공제품)	20
IV	최종제품(소비재)	30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됨.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을 대상으로 산정함.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를 받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의 선적 또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함.

수입 정책

가. 수입 면허

1994년부터 카메룬 정부는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했음.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 되는 모든 수입품을 SGS에 통보하기만 하면 됨.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됨.

수입업자는 재무부 세무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납세자카드(Taxpayer's card)를 받아야 하며,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건설업자는 동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CEMAC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면허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몇 명의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통 보증금이 요구됨.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함.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몇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과 같은 내륙국가로 보내는 물품은 카메룬 세관에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입세를 재수출의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화물 운송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물품이 행선지로 발송되기 위해 창고에서 반출될 때 보증금은 반환됨.

나. 수입 허가 관련 서류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가 필요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함.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사합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된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



했음.

특정한 범주의 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다. 커피와 코코아 수출의 경우에는 2개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검사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품질 등급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략적” 제품과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품목(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및 약용식물을 포함한다. CITES 협약에 규율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면허가 필요하다. 카메룬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임산물 수출은 금지하고 있음.

2000.12월부터 통관 절차를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했다. 선박 도착 48시간 이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가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었으나, 세관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 취급촉진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Facilitation Committee)는 세관과 관련된 지연을 어떻게 하면 더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음.

수입 규제

가. 수입 제한 분류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가 되어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3개 분류로 구분됨.

- 1) 수입 자유화 품목: 제한이 전혀 없음
- 2) 수입 부분 제한 품목: 수입시 사전 승인이나 허가증 필요
- 3)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있는 수입 금지 품목

나.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검사기관(SGS)을 통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0,000CFA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전 사전검사도 면제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0,000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이 수입되어 2,000,000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수입액 2,00,000CFA 미만으로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으로는 귀금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임.

다. 수입 제한 품목

-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 담배-건강 손상 문구 및 니코틴 함유량 등을 삽입해야 함
- 의약품-사용법과 사용 증상을 영어와 불어로 동시 표기해야 함
- 수의약품-수의사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 식용 육류
-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 의약용 비누
-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 전파 송수신기
- 무기와 탄약
- 귀금속 물질(금, 플래티늄, 사파이어 등)
- 우라늄, 토륨, 드테륨 등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 밀가루: 성분 검사 강제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라. 수입 금지 품목

- 모조품
-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 “McRAY SCOTCH Whisky”
- 유독성 또는 산업 폐기물
- 비 이소다인 소금
- 나이지라로부터의 밀 수입
- Bovine meat of European origin
- intetrix p granules 포함 의약품
- phenolphthalein 포함 의약품: MUCINUM, PURGANOL
- 아시아로부터 우유 수입
- 비누류
 - Jabiru antiseptic soap germicidal
 - HG 12 germicidal soap
 - Mipipo germicidal soap
 - Roberts Medicated soap
 - skingard antiseptic soap
 - crusader Medicated Soap
 - Tropex Medicated Soap
 - Bicu Soap
- 소독용 살충제
 - Cock brand, double cock brand, DDT를 함유한 cock brand superior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농업용 살충제
 - Captafol, Binapacryl, Cyhexatin, Haipen, Merpafol, Chemox general, Dapacryl, Endosan, Octalox, Octalene, Aldrex, Aldrite, Drinox, Su-

bitex, Vertac, Ambox, Caldon, Phenotan, Basanite

○ 하기의 스킨 트리트먼트 크림

Mipipo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Extra Cream, MIC Medicated Cream

Crusader Skin Toning Cream, Elegance Skin Toning Cream

Symbi Cream, Skin clear Cream, Nice Super Cream

Tura Medicated Cream, Amba Cream

통관 및 운송

가. 통관

카메룬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 (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특히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항구에 누적 장치된 컨테이너로 인해 화물의 선적 발송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선적기일 미준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하적도 지연되고 있음.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수입상 또는 수입 에이전트는 상품 도착 72시간 전까지 SGS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Commercial Invoice
- List of parcels



-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ceipt
- Insur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origin
- Fumigation certificate
- Copy of Bill of lading

○ 통관 절차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행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됨.

특히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나. 운송

카메룬에는 5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두알라, 야운데, 가루아 등 3개이며, 두알라와 야운데 공항이 외국 취항 항공노선 검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카메룬에는 Douala, Limbe, Kribi 등 3개의 항구가 있으며, 상선의 90% 이상이 두알라항을 통해 입항하며, 두알라 항을 통해 연간 800만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음.

두알라 항은 11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심이 6미터로서 매우 얕아 3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여 수심이 깊은 Limbe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4,000달러 수준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되나 운송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소요기간이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보호

카메룬은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특허 및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지적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불어약자로 OAPI) 회원국임.

카메룬에서 특허는 처음에는 10년간 유효하다. 동 특허가 OAPI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 5년마다 갱신됨.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허가는 3년 후에 할 수 있음. 상표보호는 처음에는 20년간 유효하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게 됨.

카메룬은 또한 공업재산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나, 작은 시장규모,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관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존중의식 부재 등 때문에 카메룬에서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함.

카메룬은 WTO의 TRIPs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표와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임. 미국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정부 관리들은 지적재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Labelling 및 표시 요건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함.

영어 및/또는 불어로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명기하여야 함. 라벨에는 불어와 영어로 원산지,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상품명, 미터법에 의한 중량, 및 사용 원료 등을 명기하는 것이 권장됨.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함. 담배갑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라벨을 붙여야 함.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동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을 수는 없어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음.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카메룬의 사업 관련 법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이러한 법의 이행은 단순하지가 않음. 현재와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으며 엔터리 같은 제소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카메룬은 2000년 아프리카에서 사업 관련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OHADA) 규정을 도입하였음.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투자자는 OHADA 지침의 유용성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HADA 규정을 영어사용 지역에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많으며, 카메룬에서는 아직도 OHAD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음.

III. 투자진출 환경

카메룬 투자 여건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서부 아프리카 공약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자원 -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설립에 많은 경비와 장시일 소요 - 취약한 조세 및 관세 시스템 - 만연한 부정 부패 - 열악한 인프라

카메룬내 기업 운영 여건

▣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

분 야	2014년 순위	2013년 순위	순위 변동
전체	168위/189개국	162위/185개국	↓ -6
기업 개시	132	125	↓ -7
건축 인허가	127	95	↓ -32
전력 확보	62	62	-
자산 등록	159	160	↑ 1
신용 확보	109	105	↓ -4
투자자 보호	128	127	↓ -1
납세	180	180	-
인근국 무역	159	158	↓ 1
계약의 강제성	175	175	-
분규 해결	151	151	-

자료: World Bank

카메룬은 World Bank가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에서 '2010년말 165위에서 2011년말에 156위로 5단계 상승하였으나



2012년도에 다시 5단계 하락한 161위를 기록한 후 2013년과 2014년 지속적인 하락추이를 보임

부패지수도 2014년도에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나이지리아와 동일하게 전체 177개국 중 144위를 기록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가. 투자 관련 법령

- Investment Code 1990
 - 카메룬 투자의 기본법령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에 한도 규정
- Investment Chapter
 - Investment Code의 후속 절차로서 2002.4월 채택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Investment Code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 삭제
- 2002년 투자헌장의 효력발생시 외국인 투자승인은 3가지로 분류가 예정되나 어떤 종류의 투자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
 - automatic regime: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투자를 허용
 - returns regime: 투자 신청 후 별도의 거부 없이 2일 경과시 투자를 허용
 - approval regime: 투자 신청 후 15일이 경과할 경우 투자를 허용
- 분야별 투자 관련 부속 법령
 - 투자헌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시행령을 입안할 23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Forestry Sector Code(1994), Petroleum Sector Code(1999) 및 Mining Sector Code(2001) 등 몇 가지 시행령은 이미 채택이 되었음.

- 대형 투자자 사전 고지
 - 투자금액: 1억CFA 이상 직접투자자
 - 고지기관: 기획재정부(MINEFAT)
 - 고지시기: 실제 투자 신청 30일 전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지분 소유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 외화 송금 자유
 - 투자자본,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의 해외송금 자유
- 투자기업 생산 재화 수출 면세
 - 카메룬내 생산된 제품(반제품)의 수출시 세금, 보험료, 운송료 면제
- 조세 혜택
 - 카메룬내 투자기업은 설립 후 2년 동안 세금 면제
- 노동법 적용 일부 배제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직원 채용시 계약 자유권 부여
 - 다만, 최저 임금(28,215CFA) 수준은 준수할 해야 함

다. 산업자유지대 (IFZ: Industrial Free Zone)

- 1) 지정 지역
 - 1990.1.29일에 제정된 법(Free Trade Regime)에 규정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Industrial Free Zone의 입주 조건을 갖춘 기업 입주지역을 말함
- 2) 입주 자격
 - 카메룬에서 생산된 제품 중 80% 이상을 카메룬 이외에 수출하는 기업



3) 입주 절차

- i) IFZ 신청서를 관할 기관인 NOIF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에 신청
- ii) NOIFZ에 의해 완성된 신청서가 소관부처 장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IFZ로 인정. 30일내에 별도의 결정통보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
- iii) IFZ 승인 서류
 - Developer's Permit/ Operator's Permit, Certificate of Compliance

4) 입주시 혜택

* IFZ 승인이 이루어지면 입주 혜택 자동 부여

- 행정 절차 간소화
 -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각종 인허가 완료 원스톱 서비스
 - 수출입 화물 현장 세관 검사 및 수화물 항구 직통 연결
- 영업 통제 완화
 - 수출입 관련 면허, 쿼타 제한 배제, 승인 면제
 - 가격 및 마진 통제 면제
 - 연간 생산량 중 일부를 현지 기업에 관세와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
- 세금 혜택
 - 10년간 세금 부과 없음(tax holiday)
 - 11년차부터 이익의 15%에 대한 일괄 세금 적용
- 재무적 혜택
 - 현지 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보유권 부여
 - 외환 매도수 및 환전 자유
- 무역관련 혜택
 -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배제
 - 로칼 구매제품을 활용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세 등 면제

- 고용 관련 혜택
 - 노동법상 임금 기준 테이블 적용 배제
 - 고용주와 노동자간 고용 협상 자유권 부여
 - 가동 5년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허가권 자동 부여
 - 현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플랜 적용 가능

5) NOFIZ (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

- 기능: Industrial Free Zone 관리 심사 기관

라. 투자 관련 지원 기관

1) API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0.1.22
- 기능
 - 카메룬 투자 환경 홍보
 -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SNI (The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Cameroon)

- 설립년도: 1964년
- 기능: 저축 촉진,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연결 기능 수행

3) APME (SME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3.9월
- 기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능 수행

4) Le Comitee Paritaire (투자모니터위원회)

- 설립년도: 2013년
-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가. 연도별 카메룬의 투자 금액

구분	2009	2010	2011
순투자유입(USD백만)	668	354	360
누적투자액(USD백만)	3,783	4,137	4,497
그린필드 투자 건수(건)	8	3	9
GDP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	16.2%	17.5%	16.8%

자료: UNCTAD

나. 주요 외국 투자 진출 기업

투자국	투자자
프랑스	Orange : 통신 (Orange) BOLLORE : 철도 (CAMRAIL) CASTEL : 음료 (CASTEL) COMPAGNIE FRUITIERE : 설탕제조 TOTAL : 정유 (TOTAL) PERENCO : 정유 (PERENCO) LAFARGE GROUP : 시멘트 CFAO : 물류 SGBC/CREDIT LYONNAIS : 금융 AXA/AGF/GRAS SAVOYE : 보험 VINCI/BOUYGES/RAZEL/SCET : 건설
미국	COLGATE : 생활용품 (COLGATE-PALMOLIVE) GEOVIC : 자원개발 CDC : 플랜테이션(Del Monte)
캐나다	RIO TINTO ALCAN : 알루미늄제조 (ALUCAM)
영국	ACTIS : 전력 (ENEO)
남아공	MTN : 통신 (MTN)
베트남	Viettel : 통신 (NEXTEL)

투자 결정시 유의 사항

- 투자 타당성 분석시 투자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와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나 카메룬을 비롯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부변수는 물론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제도와 운영은 별개
 카메룬도 각종 관세제도 및 조세체계를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제도에 따라 반드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제도와는 전혀 별개로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벗어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시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함.
- 비정상적인 위험요인 고려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업운영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언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모름.
 카메룬 투자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카메룬내 활화산인 몽카메룬의 폭발, 기타 각종 제도의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함.



투자 절차

가. 투자 법인 형태 및 특징

■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Societe Anonyme (S.A)	Societe a Resoponsibilite Limitee (S.A.R.L)
투자가 책임한도	무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최소 파트너/주주 수	2인	7인
최소 자본금	1,000만세파프랑	100만세파프랑
주식 액면가	10,000세파프랑	5,000세파프랑
설립시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의 1/4	최소자본금 전액 출자

나.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 국내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 공증 필요
 - 본사(법인)정관
 - 비과산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년도 회계 증명서
 - 현지법인설립 결정의사록
 - 범죄기록증명서
- 현지 서류
 - 현지 법인 정관
 - 이사회 명단(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 현지법인설립 위임장
 - 현지은행 계좌 개설(본사 명의)
 -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설립절차

- 1) 서류 공증 및 자본금 입금 계좌 개설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에게 위 구비서류의 공증을 받고 자본금 입금을 위한 임시 계좌(창업중 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2) 자본금 납입 및 영수증 발급
 - 법인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후 영수증 확보
- 3) 정관 작성 및 서명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을 통해 정관과 해외법인 설립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소요비용 130,395세파프랑)
- 4) 대표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최근 3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소요비용 5,000세파프랑)
- 5) 법인 등록
 - 필요 서류
 - 해외법인설립결의록: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정관 :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현지화 계획서 및 부동산 계약서
 - 이사진의 범죄 경력서
 - 결혼증명서와 사진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법인 등록센터
 - 등록 비용

자본금 규모	등록비
750,000세파프랑 이하	2%
750,001~1,500,000세파프랑	1.5%
1,5001~3,000,000세파프랑	1%
3,000,001~5,000,000세파프랑	0.5%
5,000,000세파프랑 초과	0.25%, 최대 2,500,000프랑



6) 법인 설립 공고

- 게재 일간지: Cameroun Tribune
- 소요비용:
 - 공고비용: 76,000세파프랑
 - 신문 게재비용: 50,000~97,000세파프랑

7)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납부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67,200세파프랑
 - 등록세는 예상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8) 납세증 발급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1,500세파프랑
- 소요 기일: 14일

9) 지방 노동청 등에 법인설립 통보

10) CNPS(연금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원 등록

- 직원별 급여액수에 따라 CNPS에 매월 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기본급의 16.2%)

□ 변호사 및 공증 비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본금이 1천만세파프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용은 공증인 및 변호사 비용(업무대행료)이 약 250만세파프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80만세파프랑이 소요됨.

다. 공장 설립 절차

1) 토지 대장 입수

- 발급처: 법원 지적과(Cadastre)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 2)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 3) 도시계획서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 4) 지질 평가서
 - 발급처: 평가 인증 회사(Labogenie, Geofor, Apave 등)
 - 소요비용: 1,2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일
- 5) 건축 허가
 - 관할기관: Urban Council
 - 소요비용: 3,9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공식적인 소요기간은 최장 90일)
 -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
 - 도시계획증명서
 - 위치도
- 6) 현장 실사
 - 실사 기관: 관할 지역 Urban Council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 7) 정화조 시설 검사
 - 실사 기관: Hygiene Department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 8) 건축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 9) 준공 검사
 - 검사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
- 10) 전화 가설
 - 가설 기관: Camtel
 - 소요비용: 3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5일
- 11) 전기 신청 및 개통
 - 해당 기관: AES-SONEL
 - 소요비용: 45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52일
- 12) 용수 연결
 - 검사 기관: CAM WATER
 - 소요비용: 4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75일

라. 토지 구입 절차

- 1) 토지 명부 입수 소유권 확인
 - 발급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공증인을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 소요비용

자산 가격	공증료
1백만~3백만세파프랑	4.5%
3백만~10백만세파프랑	3.0%
1천만~2천5백만세파프랑	1.5%
2천5백만~5천만세파프랑	0.75%
5천만세파프랑 초과	0.5%

- 소요기간: 3일

4) 매매계약서 세무서 등록

- 등록처: 관할 세무서(Centre divisionnaire des Impot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15%
- 소요기간: 7일

5) 자산 소유권 이전

- 등록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2%
- 소요기간: 60일

투자기업 운영

가. OHADA(the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s)법

- 아프리카 불어권내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7.4월에 제정
- 노사관계는 물론 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메룬에 서도 OHADA 법이 내국 상법에 우선
- 관련 사이트: <http://www.ohada.com>



나. 조세 제도

□ 회계연도: 매년 1.1일~12.31일

□ 법인세

- 법인세율: 38.5%(순수 법인세 35% + 법인세율의 10%)
- 과세대상: 카메룬내 발생 법인 소득에서 해당 경비를 공제한 이익
- 경비공제: 현금으로 100만세파프랑 이상 집행액은 경비 불인정
- 최저한세: 이익에 대해 38.5%를 적용한 금액이 연매출액의 1.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1%를 법인세로 부과

□ 개인 소득세

- 대상소득: 급여,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과세대상: 소득 총합계에서 500,000세파프랑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율: 소득별 4단계 누진세제

자산 가격	소득세율
0~2,000,000세파프랑	10%
2,000,001~3,000,000세파프랑	15%
3,000,001~5,000,000세파프랑	25%
5,000,001세파프랑 초과	35%

- 거주자-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카메룬내 발생소득만 과세

* 거주자(레지던스): 개인(1년에 183일 이상 카메룬 거주)

□ 기타 제반 세금

- 배당/이자소득세: 소득액의 16.5%(비거주자는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19.25%
- 재산세: 재산가액의 0.11%, 매년 납부

다. 고용 및 근로 조건

-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농업분야는 48시간
 - 연간 휴가 : 월 1.5일
 - 최저임금 : 28,246세파프랑/월
 - 복지 경비 : 고용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기본급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부담분으로 매월 납부

라. 외환 송금

- 통화 정책
카메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지역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됨.
- 환율
CFA 프랑은 $€1 = \text{CFAfr}655.957$ 의 고정환율로 유로에 연동되어 있음. 미 달러화는 2012년 중 유럽 경기 악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인해 평균 $€1 = \text{US\$}1.25$ 의 비율로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하였음. 현지화 대비 달러는 2013년 US 1달러기준, 494 CFA이었고, 2014년 엔 485 CFA로 평가되었으나 미국경제가 유로존의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이후로는 1달러당 521 CFA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투자 과실 송금정책
 - 원칙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예외
해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함. 1억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송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 (SYGMA)을 도입하여 2007.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인이 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간 또는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음.

카타르

무역동향

카타르의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이며, 두칸은 원유, 라스 라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LNG, GTL 등의 생산을 맡고 있고, 메사이드는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분야를 맡고 있다.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타르도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식기반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2002년 이후 매년 15~20% 성장을 지속하여 2008년에 1,15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978억 달러로 줄었으나, 에너지 분야의 생산증가 및 가격 상승에 따라 2010년 1,251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2,0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카타르 교역규모는 2012년 262억달러, 2013년 267억달러, 2014년 290억달러이며,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주 수입 품목은 해양구조물, 승용차, 전선 등이며,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 원유, 경질유 등이다.

■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총교역	12,388 (27.8)	21,218 (71.3)	26,235 (23.6)	26,726 (1.9)	29,054 (8.7)
수출	473 (-63.9)	469 (-0.8)	730 (55.7)	852 (16.7)	593 (-30.4)
수입	11,915 (42.1)	20,749 (74.1)	25,505 (22.9)	25,87 (1.5)	28,461 (10.0)
무역수지	△11,443	△20,280	△24,775	△25,022	△27,868

*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 주: *2014.6월 기준 추산치

※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 수입업은 카타르 국적자만이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도 아래를 제외하고는 카타르 국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이 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국적자가 최소한 51%의 자본을 소유하며 법에 허가된 물품 수입 시
- 외국인투자법 No.13/2000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계약분야에 종사하고 카타르 상무부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등록,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

공동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약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단, 카타르산업개발은행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류, 원자재 및 기타 산업자재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관세 감면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감면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개

의 상품

- 외교관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대 및 국토안보 필요 물품
- 민간인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 수입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화물 및 선물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운송에 필요한 선박 및 부양 플랫폼
- 산업용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장 및 설비, 부품, 원료, 반제품, 포장재 등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명서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은 동 국영기업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 건설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 한 특정규격 철근(BS4449 2005 Grade 500C)이 카타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르철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바, 이의 수입 추진과정에서 세관에서는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

이외 카타르 환경부 산하 표준국(QS)은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국제 에어컨 메이커의 반발로 인하여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관련 인증 미취득 및 에너지효율 등급 미표기 제품과 일정 효율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상업 송장 수수료

(단위: QRI)

송장 금액	인증료
1-5,000	100
5,001-15,000	200
15,001-50,000	500
50,001-100,000	900
100,001-150,000	1,300
150,001-250,000	1,800
250,001-500,000	2,200
500,001-1,000,000	3,000
1,000,001 이상	CIF 가격의 0.4%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3월 기준 확인 정보)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물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마이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업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 원산지 증명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 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또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같은 경우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정부규제의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걸프 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생산일자/유통기한(이하 P/E)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것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애원동물은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수의사가 발행한 보건증이 필요하며, 동물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카타르에서 수·출입 시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상업송장은 주한카타르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상세 세관신고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견적송장
- 수입허가서

관세부과

카타르는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하여 적용(법 No.41/2002)하고 있으며, 기준관세율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IF) 가격의 5%이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는 별도이다.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수출관세

수출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이스라엘로의 수출은 금지되며 원조식량 및 골동품은 수출이 금지된다.

수입업자 제한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



인 협정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업자(하주)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와 절차 완료는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세관장이 명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가된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형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물품 결제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알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용 등에 어떤 제한도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97 챕터, 21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하게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주요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알(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경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리



알(13.7백만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Emir(국왕)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자격 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찰자격을 통과한 업체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입찰서 및 상업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기술입찰서를 우선 개봉하여 심사한 결과 통과된 업체만 상업입찰서를 개봉하여 심사하며 상업입찰서에서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시키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서 금액은 입찰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이행보증서 금액은 10% 선이 일반적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다.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 효과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자가 추천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쟁은 카타르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회사(시공업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의 무조건부 보증서 제출조건 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의 선수금을 지불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측에 허용하며, 대금지불이 연기되면서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회사(시공업자)와의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Variation Order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걸프협력기구(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 공보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로 반영되어 검열된다.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신청 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상표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

2002년 저작권법(Law No.7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법 위반 시 3만~10만리알의 벌금 부과와 최소 6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 및 영업환경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산업, 보건, 교육, 관광, 천연자원 및 에너지개발, 자문서비스, 기술서비스, IT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오락서비스에 단독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보건, 통신, 전기 및 수도, 석유화학 및 철강사업 분야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오락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업종의 경우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Law No.8(2002)에 의거,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 무역업자는 카타르에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카타르인 관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오직 이러한 공급 행위를 통해서만 이익이 발생된다. 외국인은 상기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카타르 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 분야에서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인정된다. 이때 상무부 장관은 아래 프로젝트를 고려한다.

-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아래 프로젝트
 - 카타르 원자재 사용
 - 수출목적 제조품
 - 신제품 또는 선진기술 제품 생산
 - 카타르에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카타르 인적자원 개발 기여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제한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설립만 가능하며 인정된 형태 이외의 조직 운영 시 법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장관령을 얻고,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



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 이때, 투자 프로젝트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 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Law No.13(2000)에 의거, 외국 기업은 상무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는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상무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보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과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본사 위임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의 편지 등을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랍어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정관, 위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Pearl of the Gulf Island, West Bay Lagoon, Al Khor Resort 등 특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카타르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 동안(추후 갱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최장 99년 동안 상기 개발지구중 거주구역의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

GCC 시민권자는 Lusail, Al Kharaij, Jebel Thiyab 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국영 부동산회사(Qatari DIAR)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하기 18개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99년 동안 임차 가능하며, 상업 및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 또는 권리를 넘길 수 있다.

- 18개 지정지역: Musheireb, Rrij Abdul Aziz, Doha Jadeed, Ghanem Al Qadeem, Al Rifa Al Hitmi, Al Salata, Bin Mahmoud, Rawdat Al Khail, Mansoura and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North and South, Al Sadd, New Mirqab and Al Nasser, Areas around the Doha International Airport, Dafna and Onaiza, Lusail, Al Kharaij and Jebel Thiyab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가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 제한도 없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법 No.11(1993)에 명시되어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



십 및 외국기업에만 부과된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지 않는 등 과세 제도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둔다. 법 No.9(1989)에 의거, 걸프 협력위원회(GCC) 국민들은 소득세에 있어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걸프국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액이 없다. 1995.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20,000QR까지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 e) 부동산 임대
-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은 금액
-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와 은행 수입이 납세자가 카타르의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 카타르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 받는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카타르내의 자원을 이용해 얻은 소득으로 카타르 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최소35%의 세금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선분야)으로 특별펀드에 수익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공수익 세금부(public revenue&taxes department)에 기업 활동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나고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조세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해외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11월 소득세법(Income Tax Law, Law No.21/2009)을 공포하였다. 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10% 단일 소득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0.1월에 발효되었다.

(3) 세금면제

법은 특정한 조건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세금면제 적용 여부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첨단기술산업에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득한 프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한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 (a) 상업적 수익성
 -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경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부터 내각 승인 시 10년까지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터키,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예멘, 터키,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59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발효 중이다.

(5) 자유무역지대

2005.9월 제정된 카타르 자유무역지대설치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 내에 기업 설립 시 스폰서,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필요 없으며, 100% 소유권 및 0% 세율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카타르에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나, 향후 도하항 또는 공항에 설치될 예정이다.

(6)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동 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0% 세율이 적용된다.

(7) 카타르 금융센터

2005년 제정된 카타르 금융센터법(No.7)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5.1일까지 3년간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1.1일부터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7.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QTEL, QAFCO, QAPCO, QCHEM 등을 민영화 하는등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상무무역부는 국가개발계획(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지역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도하하마드국제공항, 육로로 입국할 경우 카타르와 사우디의 경계에 있는 아부 삼라(Abu Samra), 항구로 입국할 경우는 도하항, 메사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출입국카드 기재 제도가 없고, 출국 시 공항이용료 또한 없다.

통관심사는 역시 까다로운 편이 아니나, 회교국인 카타르는 회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비자

공항 비자를 받으려면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인은 공항에 도착하여 30일 간 유효한 도착방문비자(수수료 100리알)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초청의 경우 사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카타르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비자는 스폰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비자(방문(visiting), 취업(work-ing), 상용(business))와 스폰서 없이 취득이 가능한 관광비자(tourist)가 있다.

관광비자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100리알(약28달러)를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로만 결제 후 취득하며(30일 유효),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3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유럽 연합 국가들, 온두라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바티칸, 미국 등) 외국인은 카타르 입국 시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2주 유효, 2주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문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 방문이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방문비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유효한 GCC 국가 거주허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서(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영문 번역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 확인 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자본



투자법 No.13(2000)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간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거주노동허가 (Residence Work Permit)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스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1천 리알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도착 후 거주허가증은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 및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원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취업 근로자는 스폰서의 서명 동의하에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Law No.4/2009에 따르면 기존 스폰서와 향후 스폰서가 동의하고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당국이 스폰서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고용주의 허가서가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카타르를 떠나 있어야 하며, 스폰서가 근로자의 비자기한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여권 및 여행관련 서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5천 리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허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거주허가는 여권, ID, 사진1장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동의서한 및 월급 증명서, 은행의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증명, 학위증명, 노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스폰서 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신분증명서

카타르에서 거주노동허가 또는 가족거주허가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는 이민국에서 ID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ID 카드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혈액형, 서명, ID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비자 취득 후 운전면허신청서, 사진3매, 여권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면허증의 영어번역을 대사관 공증)을 도로국(Traffic Department)에 제출하고, 시력검사 및 사진촬영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번역본(별첨1 서식 참고)
- 한국 운전면허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본
- 여권에 부착된 RP(장기체류비자) 사본
- 여권 사진 두 장
- 카타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스폰서 레터(필수는 아니지만 첨부 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절차 진행 신속성을 위하여 아랍어가 가능한 직원 동행을 추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가 회사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다 좋다.

단, 카타르 RP(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개정된 신 스폰서십 법 (Law No.4, 2009)

2009년 개정된 신 스폰서십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스폰서와 향후 스폰서가 동의하고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당국이 스폰서십을 변경할 수 있다. 비 카타르인의 출국 시 의무 출국허가(서)제는 유지하지만, 스폰서가 근로자의 비자기한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여권 및 여행관련서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5천 리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이 해고 또는 자의로 직업을 그만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입국이 불허되나, 내무부 장관(또는 장관 대리인)의 허가 시 재입국이 가능하다. 스폰서와 외국인 근로자간 법률적 분쟁발생시 내무부장관(대리인)에 잠정적 스폰서십 이전 권한이 부여되며, 장관은 고용주가 타협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스폰서십 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 비자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과 결혼한 카타르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의 스폰서를 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 여성은 배우자 스폰서가 가능하다.

고용주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치거나 허위 신원 및 국적 위장, 노동법 제61조에 명기되어 있는 허위 증명서 제공 등에 의해 해고될 경우에는

5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외국인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및 국가경제를 위협한다고 간주 시 추방이 가능하다. 법률, 행정적 사유로 추방된 외국인은 장관의 결정 없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외국 수반, 그들의 가족 및 수행원, 외교단 대표 및 수행원, 공식 대표단, 선장에게는 동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법 위반으로 고소된 외국인은 벌금 지불 전 또는 법정의 최종 무죄 판결 전에는 출국이 불가능하나, 벌금 지급 보증인이 있을 경우 출국이 가능하다.

진료카드

외국인 거주자들이 진료소(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료카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소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설병원의 경우는 최초 진료 시 진료카드를 받게 되며, 모든 진료소와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진료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1) 카타르 중앙은행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의 은행으로서 화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준수 여부의 감독 등, 카타르의 국내외 은행 활동을 감독한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은 QCB가 공포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준칙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카타르 중앙은행(QCB)의 지속적인 고정 환율 정책 시행과 함께 일반은행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몇몇 일반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고정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기도 한다.

(2) 상업은행

카타르에는 15개의 상업은행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중 2개가 이슬람은행(Islamic Bank)이다. 상업은행들은 카타르 국민은행(QNB)이 지배하고 있는데, QNB는 국가가 50%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카타르 은행 자산의 약 54%를 소유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사가 전 범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소유이면서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카타르 산업개발은행(QIDB)은 1997.8월 영업을 시작하였다. QIDB는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3) 이슬람 금융

카타르의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법률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는 이자를 금지하고, 상거래에서는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카타르에는 2개의 이슬람 은행과 다수의 이슬람 용자 거래소가 있다.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시장

1997.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

2005.2.16일 법 No.7에 따라 설립된 카타르 금융센터(QFC)는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본사기능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FC는 각각 독립적 활동을 하는 QFC 금융청과 QFC 규제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케냐

개관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매우 안정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독립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하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12.27 일 대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수송망 등의 인프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며, 2008년 1.7%, 2009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4.7%로(전년대비 0.1% 상승),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중국의 경제호조 및 케냐의 원유개발과 활발한 SOC투자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08.6월)하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말 기준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 고무제품 및 가전 등을 중심으로 2억 5,804만 달러 규모를 케냐에 수출하였으며, 2012년

동기대비 -1.9%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의 경우 동/알루미늄 스크랩, 커피,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2,917만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동기대비 4.9%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케냐의 전략적 이점과 2012년 6월 대한항공의 인천-나이로비 직항 개설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 독립 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를 창설(1967년)하였다가 이후 각국의 국내사정 등으로 폐쇄(다. 2007.7월에는 브룬디, 르완다가 EAC에 가입하였으며, 사무국은 탄자니아 Arusha에 소재한다. EAC는 2006.1.1 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7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하였으며, 2013년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단일화폐 통합 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화폐통합 및 정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EAC는 소비인구 1억 4000만명, 총 GDP 990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7월 독립한 남수단과 콩고민주화공화국(DRC), 소말리아 등이 EAC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 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간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케냐의 산업발전단계가 우간다, 탄자니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5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간다 및 탄자니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케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가 2010.7월 이후 무관세로 전환되었다.

케냐는 또한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나,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를 부과하며,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식품류	일반식품류	25	0
	유제품	60	16
	쌀	35	200
	종자류(씨)	10	0
	식용류	10	0
	설탕류	100	200
화학제품	원자재	0	0
	페인트류	25	16
	필름류	10	16
기계류 (전자제품)	공기청소기	15	16
	냉장고	25	16
	음식, 음료 제조	0	0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25	16
	일반의류	25	16
	가정용 린넨	25	16
	가발용 원사	0	16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교통·수송	기차	5	16
	승용차	25	16
	자동차 부품류	15	16
건축자재	타일류	15	16
	세라믹 제품	25	16
	유리제품	15	16
	제지류	25	16
	철강제품	0	16
	아연판	10	16

대통령, 군대,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어류·갑각류(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Agent를 거쳐야 하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5,000 케냐 실링(미화 약 71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25%를 적용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가령 2014년도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좌측핸들 차량도 수입은 가능하나, 정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물품세



(CIF + 관세 기준), 16% 부가세(CIF + 관세 + 물품세 기준), 2.25% 또는 5,000 케냐실링상당의 IDF 비용 등 차량가격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CIF 가격은 케냐 수입가격이 아닌 케냐 현지 소매 가격으로부터 유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케냐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차 매매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본과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중고 자동차 수입 시 선적지에서 검증을 마쳐야 한다. 일본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가원(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는 2005.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토록 수출입법을 개정, 2005년 1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선적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 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 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최근 사례로는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불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첼이 표준 미만이며 품질표증 마크가 없다고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bs.org>)를 참조하면 케냐내의 품질인증 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케냐가 주도하여, 동아프리카 국가 내 전자통관시스템(Electronic Single Window System)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다. 동 시스템은 수입신고서(IDF), 케냐 표준청 품질관련 승인절차, 수입통관에 필요한 제반 서류처리 절차 등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서 시간, 비용, 관련 부정부패 척결등의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케냐에서는 정부기관인 Kenya Trade Network Agency(KenTrade)가 2014.3월까지 1차 시험단계를 거쳤고, 2014.6월말까지 2단계 시험단계를 거쳐 2014년 말까지는 완료하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케냐 정부는 기존의 22일 걸리는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6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다. 2001년도에 제정된 지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식재산권보호 관련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Patents), 실패(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등 7가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적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1만1천 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산권기구(KIPI) 산하에 집행 담당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을 매우 미약한 편이다.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4.96억 달러에 달하고, 세금 징수 피해액도 약 83백만 달러에 달한다. 케냐정부는 최근 들어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미달 상품의 자국시장 진입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12월에는 3백만 개의 모조 Bic 펜을 몰수하여 폐기한 사례가 있다.

투자장벽

개관

케냐는 1963.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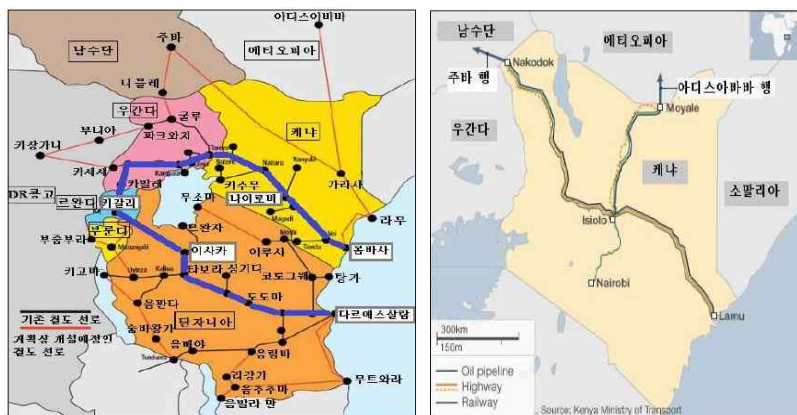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부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숙되고, 회원국별 역내산과 역외산 수입관세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80% 정도이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ICSID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다만, 총 연장 64,000km에 달하는 정규 도로망은 국토의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지만, 현재 전체 정규 도로중 약 20~30%만이 포장된 상태이며, 비정규 도로의 총 연장이 133,800km에 달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인도양상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중·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보통 2~3개월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케냐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ET: Lamu Port-Southern Sudan-Ethiopia Transport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동아프리카 철도종합개발 지도 및 LAPSSET 프로젝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히,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0.15달러/Kwh로서 이는 멕시코(0.075달러), 중국(0.07달러), 한국(0.05달러), 남아공(0.04달러)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도로건설, 전력 및 항구개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5순위에서 케냐는 183개 조사대상국 중 136위 랭크되어 인근국인 우간다(150위), 브룬디(152위)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신뢰지수(Africa Business Confidence Index: 네덜란드에 소재한 African Business Panel에서 30개국 이상 아프리카 국가 800명 이상 기업가 및 전문가 대상 조사)조사에서 남아공, 나이지리아와 함께 최상위 국가로 선정된바 있다. 케냐는 탄자니아 등 주변국대비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청(KenInvest)산하에 One Stop Service Center를 설치하고, 외국인 기업설립과 관련한 유관부서 공무원 50여명을 파견받아 법인설립기간을 최대한 기존의 9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을 시작한바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81, 19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품, 화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규제분야 업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 산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2014년 6월 케냐 정부는 총 20억 달러 규모의 유료본드를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고수익을 쫓는 연기금 및 국채 펀드, 금융기업이 가세한 덕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국채 금리도 예상보다 낮아, 5년만기 5억달러어치 국채금리는 5.875%에서, 10년만기 15억 달러어치 금리는 6.875%로 결정됐다. 나이로비에서 투자 매니저를 하는 알리-칸시추는 “이는 아프리카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있어 케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도 케냐 국채에 대한 매력을 높여줬다. 헨리 로티치 케냐 재무장관은 “케냐가 올해는 5.8%, 내년에는 6.4%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50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



켜 해외 투자유치에 참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UB: Manufacturing Under-Bond)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세금이 면제(Tax Holiday)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케냐는 “Vision 2030”에 의거하여 2008-2012년 중 EPZ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케냐 국무 위원회는 “경제특별구역 법(안)을 완성하여 2012년 말에 국회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내에 발효할 예정이다. 기존 EPZ내 제조업체들에게 적용하던 20%의 국내 판매의 허용기준이 일반 제조업의 경우 50%, 의약품, 기계류, 섬유류, 농업 기기류 등 특별 장려품목에 대하여는 70%까지 허용될 예정이며, 내수시장 판매 시 해외에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현지 부가된 가치(현지에서 조성된 원자재, 노동력, 서비스 등)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41개의 EPZ가 있는데, 나이로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티리버(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밖에 나이로비, 케리초(Kericho), 몸바사(Mombasa) 등에 EPZ가 있다.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민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지용도 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 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케냐는 국제투자보장기구(MIGA) 회원국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원국이며, 1963년 독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케냐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이선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배될 경우, 또는 케냐투자청(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허위로 대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노동법 관계

케냐는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취업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장기취업사증에는 12종류가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중 회사 취직에 필요한 Class D(A에서 명칭 변경) 취득비용은 200,000Ksh(약 2,5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H에서 명칭 변경)는 100,000Ksh(약 1,200달러)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장기취업사증 취득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취업사증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pro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일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통지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Bill)’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성들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불구의 경우 당초 60개월에서 9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보상액을 인상하였으며,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

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2013년부터 정부가 책정한 도시 노동자 최저임금은 9,781케냐 실링(미화 약 118달러, 주거비용 제외한 임금)이며, 시골지역의 비숙련 노동자 최저임금은 5,218케냐 실링(미화 약 62달러)이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신규법령으로 월 대상 소득의 12%를 연금적립금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공동부담하며, 매월 의무 기여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400KSh(고용인: 200KSh, 피고용인: 200KSh) 범위 내의 금액 50%씩을 국가사회안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름) 3가지가 나누어진다. 정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나, 법률 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 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단,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모기지 등)의 취득 및 처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 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행요건 등 국산화의무 부과

케냐에는 현지조달률 규정(local content)이 있지만, 이는 단지 동남아 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특혜관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케냐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82,650km ² (한반도의 약 2.6배)
인 구	4,555만(2014년 IMF 예상치)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450만,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GDP	443억 달러(2013년)

구 분	내 용
1인당 GDP	1,800달러(2013년)
GDP 성장률	4.8%(2013년)
물가상승률	7.2%(2013년)
수출입 (2013년)	수출: 61억 달러(차, 원예작물, 커피 등) 수입: 155억 달러(기계류, 석유제품, 차량 등)
외환보유고	66억 달러(2013년)
외채	132억 달러(2013년)
환율	USD 1 = 89.4케냐실링(2014.11월)
외국인직접투 자(FDI)	514백만 달러(2013년/세계은행)



코트디부아르

투자 환경 일반

코트디부아르는 2011.5월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국가개발계획(PND) 2012~2015」을 수립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2.6월말 IMF와 World Bank로부터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간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발행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하는 등 가시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와타라 정부는 2020년 신흥국 진입이라는 국가발전의 비전을 세우고, 매년 10%에 달하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개발계획(PND) 2012~2015」에 의거, 총 2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중 60%는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하에 투자청(CEPICI)에 외국인 투자 단일 창구(Single-window)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2014년초부터 진행중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의 아비장 이전 등 여타 대내외적인 요인 등에 힘입어 2012년 9.8%에 이어 2013년 8.8%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 공동체),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1997.6.13 일 토고 로메에서 개최된 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총회에서 회원국 간의 공동외부관세(CET)제도를 1998.1.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UEMOA 관세연합의 일원으로 여타 7개 UEMOA 회원국 간 생산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며 공산품 및 수공업 제품 거래에 공동특혜제도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4년부터 ECOWAS 회원국도 공동외부관세(CET) 적용이 확대되면서, 지역 통합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CET 확대에 따라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품은 UEMOA 공동외부관세(CET)률에 따라 △약품 등 일부 생필품에 대해 면세 △원자재와 지역 생산품 자재에 대해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담배, 주류 35% 등 5단계 관세를 부과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douanes.ci

수입부과금

(1) 부과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의 별도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먼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 기준으로 “1% 세금”(PCS; prelevement communautaire de solidarite, 공동체연대원천징수)이 UEMOA(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해 부과된다. 다만, △재수출용 물품, △통과용(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목적의 원조용 수입품은 면제된다.

또한 “0.5% 공동체 원천징수”(PCC; prelevement communautaire de



CEDEAO)이 부과되는데, 이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 말리 등 CET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내륙국에 대한 보상 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1% 통계 부담금(RSTA; redevance statistique)”이 부과되는데 수출입에 따른 자료를 정보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다.

(2) 특별 관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즉, △수산물은 5~20%,△쌀 5~20%, △주류 7~35%, △담배 23~35%,△시가 30~35%,△일부 직물 20%,△ 유류제품에는 5~20%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3) 부가가치세

세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8%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CIF 금액과 관세 등 기타 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소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 MIPs)는 식용류, 시가, 설탕, 현옷,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복사 서적, 티슈, 폴리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수입 규제

상품 수입에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 금지·제한 또는 사전허가 품목은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 상품(live plants), 씨앗, 무기, 플라스틱 가방, 증류 기구, 음란물,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른다.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코트디부아르통신규제국(ARTCI;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 de Cote d'Ivoire; www.artci.ci)에서,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코트디부아르표준원(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 www.codinorm.org)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 두 기관은 현재까지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2014년말까지 규제 체계를 추진중에 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 내의 자체적인 기술 시험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단일창구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관련 정보는 www.guce.ci에 게시되어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만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나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2009.4월 정부조달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공개입찰 방식 의무화, △계약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명확화, △‘국가규제청’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관련 통제 및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고하기도 한다.

개발기술연구원(BNETD)은 국제기구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정부부처들을 위해 기술 평가, 감리 등의 활동을 한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시장국’은 국제적 입찰 관행과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개발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bnetd.ci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비중이 전 정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 기구(ARIPO) 회원국이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T)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청(BURIDA)은 음악, 영상물, 서적, 예술 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 저작권보호청 홈페이지: www.burida.ci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조품의 범람, △북부 국경을 통한 위조 식물, 약품, 차량 부품의 유입, △정부기관의 조직·예산 부족,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일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분야에서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majority foreign ownership)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코트디부아르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요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계를 제외한 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처음 3년 동안의 세금 면제 및 감세 인센티브, 장비수입 시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청(CEPICI)이 1993.9월에 설립되었다. 투자청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구조 및 기술 혁신, 국내외 투자성향 등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단일 창구서비스 역할로 회사 설립부터 변경, 파기까지 모든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2일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 투자자들이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투자청 홈페이지: www.cepici.gouv.ci



2012.6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 투자법을 채택하였고, 동년 12월 시행령을 공표했다. 신 투자법에는 지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지방에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시키고, 규모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세 감면 등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투자 분야 등을 기준으로 신고 제도(System of Declaration)와 허가제도(System of Approval)로 구분, 외국인 투자 기업은 동 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 신청 가능(상세내용은 <http://civ.mofa.go.kr/korean/af/civ/policy/condition/index.jsp> 참조)

기타 장벽

외국 투자 기업들은 부패 문제를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투자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부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경제부 산하에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2013년 기준 코트디부아르의 부패지수는 세계 183개국 중 130위로 전년대비 24계단 상승하였다.

와타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1년 안에 기업 경영 환경 지수를 30위 상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으나 2014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상에서는 코트디부아르가 185개국 중 167위를 다소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DR콩고

일반동향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²(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7,3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구리,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자원의 보고이며, 풍부한 강수량으로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양곡 창고”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회의 땅이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직후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5백만 이상의 사망자, 2천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내전이 일어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 행정서비스, 교통 인프라, 산업기반이 대부분 와해되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코발트, 콜탄 등 주요 희귀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 지역의 구리광산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했으며, 2006.12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래 수도 킌사사를 중심으로 국가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은 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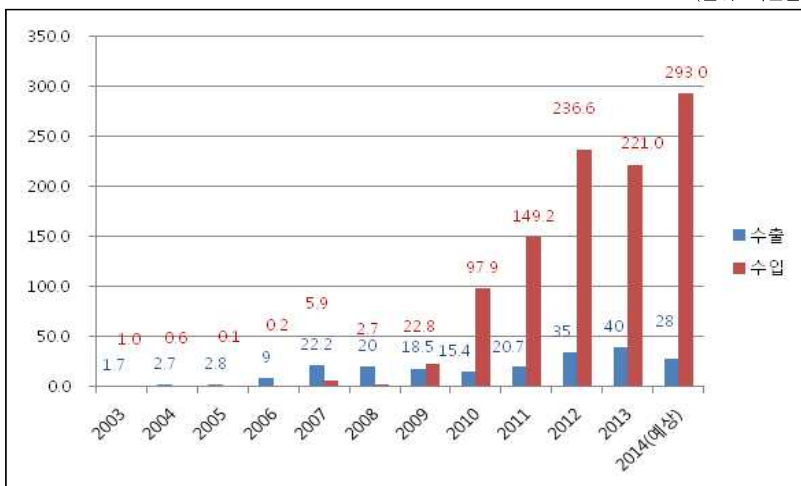
월 실시된 대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세가 안정되고 있어 프랑스, 벨기에, 미국, 중국 기업들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의 진출은 가속화 되고 있다.

비록 2012년 현재 GDP 156억달러, 1인당 GDP 237달러의 세계 최빈개도국으로서, 브룬디, 라이베리아와 더불어 세계 최하위권 경제에 속하여 있으나, 2010.7월 IMF 및 세계은행의 123억불 규모 부채탕감 및 2010.11월 파리 클럽의 73억불 규모 부채탕감으로 DR콩고 정부는 국가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향후 DR콩고는 국가재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공분야 구조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고, 2012년의 GDP 성장률은 7.2%, 2013년에는 새로운 광업생산이 본격화되어 8.5%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이보다 높은 8.7%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DR콩고 정부 일각에서는 최초의 두자리수 성장률도 기대하고 있다.

■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주요 경제상황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는 물가를 끌어올려 2011년 중 평균인플레이율이 15.5%까지 기록하였으나 점차 안정되어 2012년 9.9%, 2013년에는 1%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1.8%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전망된다. 평균 환율은 2012년 US\$ 1=FC 920을 기록한 이후 2013년 US\$ 1=FC 920에 이어 2014년도에는 US\$ 1=FC 909를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환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3년 8.5%의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이보다 높은 8.7%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DR콩고 정부 일각에서는 최초의 두자리수 성장률도 기대하고 있다.

농업과 광업생산이 개선되고 전국에 걸쳐 농산품의 유통이 나아진 것은 환율 안정과 아울러 인플레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율에 대한 위험요소로는 콩고의 주요 광물자원인 구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관련 수출이 줄어들고, 대외 경제의 어려움으로 콩고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의 감소에 따른 계획되지 않은 과도한 재정적자 증대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013~14년 중 광물 수출은 Katanga주의 광산, 특히 Tenke Fungurume 구리-코발트 광산과 Katanga Mining, Kibali Gold Mine 금 광산의 생산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th Kivu주의 Twangiza에서 금의 산업적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적인 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연간 수천 온스(troy ounces)로 추정되는 등록되지 않은 금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콩고 정부는 광물부문의 국가재정 비중을 2010년 9% 수준에서 2016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광산업 발전 전략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확대(GDP의 10%), 정부의 관리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수출 광물의 부가가치화, 미개발 광물 개발 확대, 지역별 특화광물에 대한 투자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 탐사권 부여



등의 계획을 추진중이다.

중국이 재정 지원한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콩고의 무역흑자는 2012년 US\$ 6.8억에 달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출광물의 부가가치화 추진 등의 노력에 불구하고 광물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무역흑자가 US\$ 2.5억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US\$ 1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콩고에는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관계로 광업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숙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입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콩고의 가장 강력한 잠재력인 농업부문은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광업부문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나, 광물 밀수출과 불충분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아직 콩고 경제를 견인할 정도의 위치에는 오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모두 전력 및 도로 등 인프라의 부진과 직결되어 있다. 즉 DR콩고는 예산부족, 투자미흡, 인프라 부진, 산업발달 장애가 국부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어느 한 연결고리로부터의 탈출은 바로 콩고의 강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프라 부족, 열악한 행정·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세계은행의 2015년 사업환경(Doing Business) 조사 결과에 의하면 DR콩고는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183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DR콩고는 175개국 가운데 154위, 전 세계 자원개발 투자자를 상대로 실시된 '09년 캐나다 Fraser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법집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반 인프라, 노동 및 기술력 공급 등 분야에서 투자 최하위국이나

향후 개선능력 11위, 환경 개선시 투자는 19위로 평가되어 잠재력은 확
인되었다.

DR콩고는 2012-2016년간 국가개발 이행계획으로 6대 분야 목표와 이
행방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효율
적인 국가기관 개발,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장·일자리창출 지속, 기본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생활·사회 환경 개선, 인적자본 강화 등이다.

DR콩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 2050년 선진국 대열 합류
라는 목표하에 국부의 증가, 인플레이션을 하락, 화폐 가치 안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재정지원 증대, 인프라 시설 확대 및 농업·광업
분야 현대화 등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013.5월 'DR콩고 지원을 위한 신전략'프로젝트로
US\$ 12.6억 재정 지원을 승인하여 4년간 행정 개혁과 통치 개선, 민간분
야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인적
개발 지수 개선, 동부지역 분쟁 및 불안정 해결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DR콩고 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의 50% 감소를 목표로 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 유엔농업기구(FAO)의 개도국 농업분야 투자
확대 권고 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부상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간 US\$ 15억에 달하는 식품 수입 대체 방안의 일환으로 US\$
440백만의 자금이 투입되는 Bukanga-Lonzo 농공단지 시범사업을 착
수하여 향후 이를 주재국 11개주 20개의 농공단지 건설로 확대할 계획
이다.

아울러 DR콩고 정부는 현재 6%인 전기 보급율을 2025년도에 60%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콩고강 Bundi 계곡 12km 구간에 4,800MW
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Inga 3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Inga 3 수력발전소는 남아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5.10월 발전소 건
설에 착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개발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비용은 최대 US\$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ga 3 발전량 4,800Mw 중 남아공 정부가 2,500Mw를 구매하고 나머지 2,300Mw는 DR콩고 카탕가주 300개 광산을 비롯하여 주재국의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전망	2015 전망
실질 GDP 성장률(%)	6.9	7.2	8.5	8.7	8.6
총 고정투자 성장률(%)	10.0	6.1	7.2	7.5	7.6
소비자물가 인플레이(평균, %)	15.3	9.9	1.6	1.8	2.3
정부 수지(% of GDP)	-1.8	-1.0	-0.1	-0.5	-0.9
상품 수출(fob, US\$백만)	9,472	8,534	9,388	110,092	10,748
상품 수입(fob, US\$백만)	8,916	8,356	9,141	9,781	10,368
경상수지(US\$백만)	-1,281	-1,696	-1,927	-2,297	-2,646
경상수지(% of GDP)	-10.6	-9.5	-9.7	-10.1	-10.4
총외채(연말 기준, US\$백만)	5,448	5,651	6,292	6,954	7,419
평균환율(FC: US\$)	916	920	920	909	910

*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수입정책

관세

DR콩고는 WTO(세계무역기구), CEEAC(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대호수경제공동체(CEPGL),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DR콩고 정부는 관세를 정부 수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COMESA와 SADC의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2.1월부터 COMESA와 SADC, CEEAC와 자유무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는 HS2007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

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선용 기기 등이며,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에 적용되며,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콩고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평균 최고관세율은 96.2%로 농산물 98.1%, 비농산물은 98.1%이다. 관련 과년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DR콩고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2008년 총 7.2억불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전체 정부 세입의 28%,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평균 실행관세율은 11.3%로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섬유류, 종이, 화학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양허관세율(U/R)	2010 실행관세율 평균
농산물	30.0	11.2
비농산물	15.2	11.3
광업 및 채석	0.0	7.1
공산품	26.3	11.4

출처: OC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히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한 5년 동안 콩고 영토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



가 부과되고 있으며, 콩고의 관세는 이외에 상이한 추가 세금이 다양한 기관에서 징수되고 있다.

콩고는 오랜 내전과 정세불안의 여파로 경제 전분야의 국내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에서 무역 투자 증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밀수가 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데 밀수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고의 국경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보따리상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수입품도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콩고세관은 감시가 허술하여 보따리상들은 고가의 제품을 들여오면서도 세관 통과시에는 약간의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짝통 제품도 큰 골칫거리이며 아울러 수입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규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우선, 미화 2,500불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액의 2%(OCC 1.25%, BIVAC 0.75%)이다.

* 0.75% 상정시, 기본료 100불은 최소 CIF 금액 13,333불에 해당되며, 2,500불에서 13,333불 사이의 수입품의 경우 0.75%보다 많은 검사료를 지불하게 된다.

* DR콩고 정부는 수입품 검사 업무를 2006.2.1부로 프랑스계 통관 대행 업체 BIVAC(Bureau Veritas International)에 독점 위임하고 있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불 초과 금액의 2%, 2,500불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불),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불)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불),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당 135불) 등이 부과된다. DGDA는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선적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타디-킨샤사 구간은 컨테이너당 1,500~3,000달러가 필요하다.

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국(DGDA, La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e), 국가항만국(ONATRA, L'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영국(OGEFREM, L'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진흥기금(FPI, Le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자동 수입허가는 통계목적에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덤핑 및 반덤핑

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1. 22)에 의거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콩고는 아직 WTO 규칙에 따른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

DR콩고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다수 관련기관의 중첩되는 개입, 책임 기관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 문제다.

특히 수출입업무에 관해서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통관업체의 능력에 따라 통관 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관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R콩고 정부는 2010.8월 발효된 관세법을 통해 통관업무의 창구 일원화 및 전산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

고 있으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통관업무(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에서 총 183개국 중 167위를 차지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Doing Business Repot에 따르면 DR콩고에서는 수입시 평균 63일에 걸쳐 9가지 종류의 서류와 US\$ 3,285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출시 평균 44일에 걸쳐 8가지 종류의 서류와 US\$ 3,055의 비용이 소요된다.

DR콩고는 마타디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 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0.8월 공포한 통관법은 통관절차 간소화, 지적 재산권 보호, 관세 지불 방법 개선 및 관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간혹 발생하는 마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2013.1월 발생한 운송노조 파업은 마타디-킨샤사 구간의 컨테이너 운행을 3주간 전면 금지시켜 물류에 많은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콩고정부는 무역 거래시 통관 전후의 관세 업무를 전담하는 one-shop window를 Bas-Congo 지역의 Matadi 항구와 Katanga지역의 Kasumbalesa에 설치하였으며, 동 기구의 설치 목적은 관세 사기와 통관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조달

2002년부터 도입된 DR콩고의 공공행정 개혁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들의 정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조달 사업의 계약이 때때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4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계약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새로운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달하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통제국이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권리의 부여 칙령 No. 10/27(2010.6.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초청 또는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주어지며 입찰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콩고 기업에 대한 작업, 공급 또는 서비스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할 계획이 있거나 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과 기술 지원으로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예산부(Ministry of Budget)의 관할 하에 운영되며, 2010.4월 카빌라 대통령이 새로 공포한 조달법은 DR콩고 국내 및 국제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한편 DR콩고는 WTO

정부조달협정 조인국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입찰 배후에는 항상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등 입찰 부정을 없애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관세 및 일반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및 상업 활동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법상 특혜로 기계류, 도구, 신 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 5%의 행정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에서 생긴 이윤수입에 대해 법인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산세 면제, 유한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 증액시 누진 관세 면제, 유한책임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 초기자본에 지불해야 하는 US\$175 또는 US\$800의 고정관세 면제 등이 있다.

투자법의 관세 및 세금 면제는 해당 상품이 콩고내에서 제조될 수 없는 것과 기업에 공급되는 상품이 동일한 수입품 가격(세금 제외 가격 기준)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이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특혜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



권에서 멀수록 특혜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ANAPI에 마련되어 있고,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경제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투자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API)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등의 투자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분야 입법, 제규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적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동원 및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장려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양한 부문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현장에서는 투자관련 인프라(도로, 전기 등) 구축, 행정 절차 추진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 아직 ANAPI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기업이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일창구로서 ANAPI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한 후 기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며 부처간 명령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투자승인 기준

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할 기준은 콩고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US\$ 20만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

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실제 일한 날)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정해진 시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 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신청건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ANAPI는 권한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택이 제거된다.

투자저해 요인

콩고는 훼손된 경제적 환경과 투명하지 못한 사업 환경에 따른 여러 문제점으로 아직 많은 액수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 은행 대출의 어려움, 부패와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비싼 비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예로 등록번호, 무역등록 등기, 노동감독관 및 노동사무소 신고에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외국기업은 외국기업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률적 잣대에 따라 현지 권력기관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불투명, 동부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 등 정치적 불안도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

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



여 소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콩고정부는 특히 광업, 산림, 농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 체계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에 가입한 이후 강력한 국가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고의 OHADA 가입은 기업 경영 및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며, OHADA 프로그램은 소액 거래, 회사 자금 경영 권리, 회사 이윤 창출 권리, 회계 권리, 사법 중재 법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13년 대표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기업설립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관련 창구의 일원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세금 및 관세 조정, 불법 국경무역 근절,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다.

OHADA는 콩고 사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나 여전히 콩고의 사법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고, 광업의 규제는 새로 발표될 광업법 개정 법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OHADA 프로그램은 콩고 국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을 제공해줄 것이며 2012.9~2014.12월간은 과도기로 이 기간 동안 이전의 회사 사정은 유예될 수 있으나 동시에 법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4.9월 이후는 오직 개정된 법령만이 적용된다.

DR콩고 정부는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 무역업 등록, 국가인증번호(PIN) 발급, 수입 수출 허가, 납세증명 등을 5개 국가 기관에서 발급토록 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3.1.1.부터 기업설립 One-stop-shop(총리 명령)서비스를 실시하여 3일내 모든 기업설립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말 것이며, 이를 위해 좋은 변호사, 화물대리점 또는 신탁관리자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 법적, 세무 및 위기관리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회사가 현지에 주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며, 이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공과 위기관리의 관건이다. 콩고의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운송은 자주 지체되고 정전, 단전, 더위 및 모기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특구 개발현황

주재국은 2013.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5개 특별경제구역으로 콩고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Kinshasa),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하고 있는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경제구역내 기업체를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처음 10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있으며,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재국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시설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고 낮은 인적 역량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동 프로젝트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광업법상 특혜제도

투자법에 추가하여 광업법도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혜제도는 광업권 또는 토석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방계회사, 광업권 소유자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광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관세 인센티브는 △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역 가능한 물품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완전 면제, △역외가공을 위한 상품의 수출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관세 면제 △광산이 실제 가동을 개시하기 전 광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2% 관세 그 이후 5%의 관세, △프로젝트 기간중 광업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 윤활유,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3%의 관세,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를 위한 6개월간(2차례 갱신 가능)의 면제가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로 광산채굴권 지역내에 소재한 건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광업 프로젝트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및 특별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고, 해외에서 차용한 외화대출금에 지불한 이자는 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10% 세율 적용, 이윤세는 30%, 콩고내 가공시설에 대한 제품 판매는 매출세가 면제되고 콩고 내 다른 판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 광업권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5%의 매출세 부과, 광업활동과 관련된 현지 생산 제품의 구매에 대한 매출세는 3%, 국외거주자 보수에 관한 특별세는 광업의 경우 10%이다.

특혜신청 절차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광업권 소유자가 특혜제도의 범위에 속하는 동산의 숫자와 가치, 자동차, 장비 및 기타 투입물임을 증명하는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단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광업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채굴산업의 경우 7.1%, 비철광물의 경우 15.6%(최소 5%, 최대 20%)이며, 그 외에도 수입관세와 세금이 추가된다.

한편, DR콩고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행 광업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FEC(콩고기업연맹) 및 광산 업계가 DR콩고 정부와의 법 개정 내용에 최종 합의하여 의회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행법은 광업법 개정시 개정 내용이 10년 후 법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DR콩고 정부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려 하였으나, 현행 광업법 규정대로 법적 안정성을 10년간 보장하여 광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원 탐사 및 광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FEC의 주장을 DR콩고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광업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개정안에 따르면 광업의 탐사허가(PR)를 채광허가(PE)로 변경시 현행 5%인 정부 지분이 35%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광업 로열티는 구리, 코발트 포함 비철금속의 경우 2%에서 6%, 금 등 귀금속은 2.5%에서 6%, 보석용 원석은 4%에서 6%로 인상하며, 광산 개발 촉진을 위해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유치하고, 광업권은 보유 목적이 아닌 재정적 능력이 검증된 기업에게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광업법 개정안은 원래 2012년중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급격한 개정이 이행될 경우 중요한 광업부분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의회 상정이 계속 연기되어 왔다.

DR콩고의 Oriental주에서 Kibali 금광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동광산은 영국계 Randgold Resources사가 투자한 금광이다. Kibali 금광은 2013년 후반기 3개월 동안에 88,200온스(약 2.7톤)의 금을 생산하였으며, 2014년에 550,000온스(약 17톤)의 금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광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 동부 Oriental주 Ituri 지역 등은 오랜 기간 부족간 분쟁 등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현재 Ashanti Goldfield Kilo(AGK), Kibali Gold Mine, Mwana Gold 및 Kilo Gold Mine 등에서 활발하게 금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다량의 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DR콩고 광업상공회의소는 DR콩고가 2013년도에 신규 구리광산 프로젝트의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2012년도 620,000톤) 47.5% 증가된 914,631톤의 구리를 생산하였고 2014년도에는 922,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DR콩고는 코발트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2013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5년간 세계 코발트의 40-50%가 DR콩고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DR콩고는 최혜국대우 예외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없으며, 다만,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은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협정에 따라特惠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1974.1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수출입통제국인 OCC(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DR콩고내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OCC는 법령 NO.74-013(1974.1.10)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DR콩고의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련된 수입, 수출 및 국내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에 있고, 전국적인 인정 시스템은 없다.

2010년 현재 DR콩고에는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의 지역 인증과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2.29)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회원국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R콩고 식물 및 동물 검역은 농업농촌개발부 주관으로 2005.11월 설립된 국가 인증기관인 동식물검역서비스(SQAV, Service de Quarantaine Animale et Vegetale)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SQAV는 식물의 종자, 모든 원목, 모든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축산물, 동물,

비료, 살충제 등에 대한 수출입시 검역 업무와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부문에 있어 OCC(수출입통제청)의 품질 적합성 업무와 SQAV의 검역 업무 관련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및 경제무역부 등 사이에 상당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통관시 검역 지연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무역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는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OCC 마타디사무소가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2주 이내에 수입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 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물품 회수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식물재료 및 식물위생, 수의검역, 식품제품의 수출입 통제를 포함한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식물위생증명서 발급과 식물 위생 및 수의학 제품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 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 (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3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 DNE)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쿼터

DR콩고는 수입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DR콩고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유화하고 있는 만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콩고내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제한된 숫자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비롯하여 BLAC, RAWBANK, TMB 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큰 은행들이다.

콩고은행들은 기술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며 콩고전쟁 이후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 종식되었으나,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저축하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은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체계도 불충분하다.

많은 콩고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US\$ 100 이상의 저축을 요구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한 US\$ 2,500의 저축을 요구하고 있다.

콩고중앙은행은 2012년 기존의 500FC(Congo Franc) 보다 큰 1,000FC, 5,000FC, 10,000FC, 20,000FC 지폐를 신규로 각각 발행하였으며, 동전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DR콩고 시장에서 5불 이상 거래시에는 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FC가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유통되고 있으나 가치가 큰 달러화가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콩고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콩고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지적 재산권 규정의 이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콩고의 법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적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문화예술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며, 콩고 경찰도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특허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이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동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고,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이론적으로, 지적재산권은 2006년 헌법을 통해 DR콩고 내에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만, 동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적판 도서와 음원, 그리고 영상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킨샤사의 개인 운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상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DR콩고로 들어오는 해적판 재화들의 배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그 실행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노력의 일환으로 DR콩고 공무원들은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기획한 다수의 미국 정부 지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노동법

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도록 아동 노동 보호, 노동 강요 금지, 모자 보호, 고용에 있어 여성 등 차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8개 조항의 노동 규정을 개정하였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성 및 아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인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노동법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장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회사의 의무도 증가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례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매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곳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의료지원은 사내 또는 사외 의료 시설 이용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나, 정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나 과장하여 건강 상태를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및 기관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가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하며, 계약이 중지되거나 소송 중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 혜택 분야는 치과 치료, 내외과 치료 및 수술, 약값, 입원비, 병원 통원 교통비, 안경, 의족 등이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구도 가능하고, 의료기구의 혜택은 보건부가 정하는 금액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노동계약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제안으로 해지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 가입 또는 불가입,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고용주의 승인하에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참여 활동
- 근로자 대표 임무를 청원하거나 수행
- 입법조항 위반을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 소송 참여 또는 관할 행정기관 청원
-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상태, 가족 부양책임, 임신, 출산, 종교, 정치적 견해, 조상의 국적, 사회 계층, 종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한정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권리가 있으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자가 받은 최종보수의 36개월치를 상회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해지예고를 하는 경우 예고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14일 이하가 될 수 없고, 근속년수당 7일씩 증가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6개월까지 수습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2년의 임시계약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구계약으로 인정된다.

DR콩고 진출장벽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십수년에 걸친 내전, 정부기관의 무관심, 정비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무실 유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도 킌사사 및 루분바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생필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물가가 매우 높다.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용으로만 연 평균 5백만불 정도가 지출된다고 하는 데 이는 같은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우 약 50만불, 캐나다에서의 경우 약 20만불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DR콩고내 모든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당국의 무원칙적인 탈세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태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언어 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으로 불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에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특히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경우에도 자국민끼리의 대화에서는 링갈라어를 비롯한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불어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분쟁의 잔재로 보이는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악한 통신 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의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사업들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 부터 크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년에 이르는 독재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반인에 대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킌사사 또는 루뭉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부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개혁정책 추진

DR콩고 정부는 사법제도 등 제반 시스템 낙후가 기업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초 OHADA

(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에 가입하였다.

OHADA 가입이후 DR콩고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고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투명화와 함께 행정기관 및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외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인세 및 관세의 현실화, 투자인프라 구축, 수출입세 감소, 밀수 방지책 도입 등이 있다.

그동안 높은 수출입세는 콩고의 대외 교역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넓은 국경을 통한 밀수품 교역은 정상적인 대외교역을 방해하고, 국내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특히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를 통한 광물의 불법거래는 국부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의 대표적인 성과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콩고내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투자 장벽

DR콩고는 여전히 사업 운영에 녹록치 않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미개발된 인프라와 낮은 신용도, 동부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부재, 행정 및 관료주의적인 업무 지연, 부패, 법의 비효율적인 시행과 규제 등이 민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지어로 Guichet Unique라고 불리는 One-stop shop은 2005년 ANAPI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한 기관의 관할 아래 뭉으로써, 기업 설립 과정의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One-stop shop”는 사업 허가 등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신속한 기업 설립 지원에 한계를 보여 왔다. 통상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단계는 presidential decree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모든 투자자들은 정부 기관들의 회계감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2년 부정부패지수(CPI)에 따르면 세계 1174개국 중 160위를 기록하였으며, 부정부패가 모든 산업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의 부재, 익숙하지 않은 생활 여건, 부정, 부패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업시 고위층과의 연줄이 중요하다고 한 뒤, 과거 고위층(정관계, 국회 등)을 역임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광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활동비를 주고 나면 여타한 명목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활동비 명목 또는 계약금 명목(구매 금액의 %)으로 소액송금을 우선 요청하여 급히 송금치 않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현혹하거나, 활동비를 받고 나면, 주재국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있다.

DR콩고에서의 자원-인프라 건설 연계사업은 몇 억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광물 수출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 자료 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역사이트 접속시 정보의 신빙성 여부, 사업자등록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전산으로 기업체의 등록 여부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등도 유의해야 한다.

DR콩고 광업 활동지역은 주로 동부 카탕가주에 집중된 관계로 대부분의 광업회사가 수도에서 항공기로 2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광산기

업의 실사가 어려운 면도 있다.

또한 최근 DR콩고산 금, 전기동 등의 수입과 관련 DR콩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우리기업 등에 제시하고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 전기동 등 DR콩고산 광물 구입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위조 여부는 DR콩고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인 광업부 산하 CEEC(Center for Valuation, Expertise and Certification of Precious and Semi-Precious Mineral Substances,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쿠웨이트

최근 경제통상환경

쿠웨이트는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70년대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 중심지로서 선도적 위치를 내주었고,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 이후에야 국가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쿠웨이트는 GDP의 50-60%, 정부재정수입의 95%가량을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변동에 취약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연속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하여 2014.6월말 약 5,480억불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각종 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현재의 경상지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8년경 정부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 IMF 등에서 있어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Kuwait 2035’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개년 개발계획(2010-2014)을 추진하였고, 현재 5개년 개발계획(2015.4-2020.3)을 수립중에 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3년 6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촉진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현재 하위 실행규정을 정비중에 있으며, 쿠웨이트 북부지역의 부비얀 항만 및 실크시티(Silk City)를 개발

하여 이를 금융,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쿠웨이트시티와 북측을 잇는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 등 인프라 사업도 적극 추진중이다.

무역동향

EIU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2013년도 수출액은 1,127억달러, 수입액은 244억달러로 추정되었고, 88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기록되었다.

■ 쿠웨이트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67,122	102,933	120,969	112,689
수입	19,358	22,079	22,785	24,424
수지	47,763	80,855	98,184	88,266

출처: EIU Country Report(2013.10월)

한편, UN Trademap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쿠웨이트의 수입 대상국은 1위가 중국이며, 이어서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로부터는 11억달러를 수입하여 쿠웨이트의 수입국가 중 7위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CIA Factbook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쿠웨이트의 수출 대상국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총수출액 대비 16.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가 2위(15.7%), 일본(13.4%), 미국(11.7%), 중국(9.2%) 순이다.

■ 2013년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체	22,258	100	10
1	중국	2,672	12.0	13
2	미국	2,594	11.7	5
3	일본	1,881	8.5	12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4	독일	1,782	8.0	6
5	인도	1,159	5.2	4
6	카타르	1,145	5.1	68
7	프랑스	1,140	5.1	4
8	한국	1,133	5.1	13
9	이태리	1,052	4.7	6
10	영국	832	3.7	4

출처: UN Trademap(2013)

우리나라와의 쿠웨이트의 교역규모는 2013년 200억달러에 육박하여 2000년 이후 7배가량 증가하였고, 주요수출품목은 승용차, 타이어, 전선, 배전, 제어기, 밸브 등 플랜트기자재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타, LPG 등이다.

■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458	670	1,306	744	744	1,048	1,432	1,584	1,132
수입	5,977	8,133	8,747	12,129	7,992	10,850	16,959	18,297	18,725
합계	6,435	8,803	10,053	12,873	8,736	11,898	18,391	19,881	19,857

자료: KOTIS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장비 등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에는 쿠웨이

트 기업과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등록을 선행하거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 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등 3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중량과 총중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 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회교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 전자장난감(1개),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자동차(3개), 화학제품(2개), 기타 제품(2개)
- KUCAS 우리나라 인증승인검사 기관 : Intertek 전화 02-775-5255, 팩스 02-775-5266, 전자우편 info.seoul@intertek.com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10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부자재는 보건부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매를 위한 광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5%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150억불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140억불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 등 대규모의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화(Kuwaitis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7,500달러 상당, 1KD=3.5USD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 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TC는 단독입찰의 경우 CTC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TC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CTC 관할에서 벗어나 기획부 산하의 컨설턴트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입찰이 실시되며, 사전에 등록된 컨설턴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사업부 및 주택청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업체가 건설 전문지인 ENR지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건부 입찰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서 건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TC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때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 발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 (오프셋 프로그램)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 (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동 오프셋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시행해오다 2004년 8월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부터 재시행하고 있고, 담당하는 기관은 NOC(National Offset Company)이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주하는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약 3천5백만 달러)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 방산계약의 경우에는 300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영석유회사(KOC) 및 국영정유회사(KNPC) 등이 발주하는 Oil & Gas 관련 플랜트 공사는 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제외된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재 시행된 이래 주로 쿠웨이트 수전력부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가 발주한 발전담수공장, 송배전·변전소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는 병원, 대학교 건물, 공항시설, 도로, 교량 등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금액 대비 약 5~10%의 비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입찰 참가 전 오프셋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NOC의 홈페이지 (www.kuwaitnoc.com)를 참고).

한편, 이와 같은 오프셋 제도와 관련하여 옹셋제도에 대한 외국의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2014년 7월 20일 쿠웨이트 정부는 오프셋 제도

의 주관부처를 재무부 및 NOC(National Offset Company)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말 설립된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으로 이관하고, 향후 오프셋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KDIPA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때까지 당분간(최소 6개월가량으로 추정) 적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복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으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가 대략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1998.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TRIPs 협정에 따라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현지 Agent를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이 가능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민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민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민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거나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민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국인도 쿠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2013년 쿠웨이트 정부는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기존의 2001년 8번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新 외국인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공포하고, 기존의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는 한편,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KDIPA에서 마련중인 여러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 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 10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4) 국가적 수출 증가 기여도,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7) 환경친화 여부,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10)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지사(Branches)설립의 제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 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스폰서십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공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증은 신청서류가 아랍어로 되어 있고 완성된 시기로부터 2주 내에 발급되며 에이전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다. 에이전트와 고객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지불은 상호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법규

2010.2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민간부문 노동법(Law No.2010-6호)이 개정 공포되었다. 동 민간부문 노동법은 고용조건, 노동시간, 휴가, 고용해지, 근로 장소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노동법에 의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및 조건: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으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요일은 휴무일이며, 한 시간 이상의 휴식 없이 연속 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휴식시간은 작업시간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 초과근무: 초과 근무는 하루 두 시간, 1년 총 180시간 또는 주당 3일, 1년 총 90일을 넘을 수 없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 보수에 25%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6근무일 후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을 보장 받으며, 고용주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최소 50% 이상의 초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대체 휴일을 제공하여야 함
- 보너스: 고용주들은 보너스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회사들은 1개월분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
- 휴가: 총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음. 그러나, 최초 9개월을 근무하

- 지 않고서는 첫해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기휴가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음.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2년 연속 근무한 무슬림 근로자는 21일간의 Al-Haji(pilgrimage) 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 받음
- 고용해지: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사유로 해고 가능. 적정한 통고기간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해당 근로자 주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함. 고용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주당 1일 또는 8시간의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유급결근이 가능

또한, 근로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계약의 갱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성근로자가 결혼일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 수당은 시급, 주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0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5일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수당은 1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5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개월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 수당은 1년 반의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 (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임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1%,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7%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 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branch profits), 로열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익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사회보장기금 출연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익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2.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은 불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93.5% 인정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90%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3.5~96.5%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80% 인정
- 관계사: 80~85% 인정
- 제3자 외부: 85~90%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 엔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의정서를 체결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10.2일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12.27일 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1.1.1일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 관련 리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 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직원들의 애로가 되어 왔으나,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06.1.1일 이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운전면허 상호 전환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은 약 40~45KD 소요된다.

- 운전면허 전환 신청서
- 한국대사관이 번역 공증하고 쿠웨이트외교부가 승인한 한국 면허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
- 여권 및 Civil ID사본
- 신체검사 통과 증명서(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증 상호 인정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가급적 국제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올 필요가 있으며, 거주비자가 발급되면 국제면허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되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부 및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거주비자 발급

일반적인 방문이나 상용비자(business visas)의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보통 숙박대상 호텔 이용)나 사업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취업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거주허가에는 지문채취와 신체검사(혈액검사, 결핵여부 등) 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제3국 인력수입에 따른 입국 및 거주비자 처리지연 또는 불허 등 관료주의 및 행정지연에 따른 적기 인력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취업허가서) 발급신청
-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
-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비자신청
-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십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거주비자) 발급신청
-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과금 부과).

일반 방문비자로 우선 입국하고 난 뒤에 취업허가 및 거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상기 ④, ⑤ 과정을 마친 후 쿠웨이트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될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를 제공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총 16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3백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



하고 있다. 2004.8월 외국은행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에 개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 1,500만디나르(5,150만달러)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단 1개 지점만이 허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의 8개 외국은행 지점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특징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2011.10월 시행한 “Best Country for Business”에서 조사대상 총 134개국 중 58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에서는 6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쿠웨이트의 경우 아직은 국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통상환경상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으나, 최근에는 3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및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년 10만명, 향후 10년간 100만명 감축목표하에 전문인력을 제외한 3국인 잉여인력에 대한 대규모 감축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거주(근로)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상호인정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일선 행정 창구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 경제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지난 2010.5월 ‘전력 및 담수생산을 위한 Public Joint Stock Company 설립법안(민자담수발전프로젝트법률, IWPP : Independent Water Power Project)’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2013.12월 쿠웨이트 최초 민자사업인 노스 알주르 민자 담수발전 프로젝트가 계약완료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에게 차별요소로 작용해 온 Offset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진출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튀니지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부여하며 국제표준인 HS 97개 목록을 관세분류 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튀니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2011.1.1일부터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등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3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고 관세율을 10%로 인하한바 있다. 2012.1.1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 특정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1.1일부터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한바, 2012.1.1일부터는 농업원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품목은 700%까지)가 부과되어 또 다른 수입 장벽을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18%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1년 수입쿼터는 약 45,000대를 암묵적인 기준으로 하여 각 자동차 업체에게 현지판매실적에 기초하여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다. 쿼터할당에 대한 정부당국의 재량이 커지고 있어 쿼터

할당 교섭은 자동차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 엔진의 경우에는 실린더 용량 1300cc 이하의 경우 16%, 13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경우 30%, 1500cc 초과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2000cc 이하인 경우 52%, 2000cc 초과 2100cc 이하의 경우 67%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디젤엔진의 경우에는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1900cc 이하의 경우 40%, 1900cc 초과 2100cc 이하의 경우 55%, 2100cc 초과 2300cc 이하인 경우 63%, 23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경우 70%, 2500cc초과의 경우 8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18%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의약품은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에서 독점수입함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일방적인 조건이 부과되기도 하며, 신규 진출한 의약품이 실제 판매되기까지는 약 2년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한편, 튀니지와 아래 통상협정을 맺은 EU 및 다른 아랍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가 적용된다.

(1) 다자간 협정

- EU와의 제후협정(Association Agreement): 1995.7월 체결된 EU와의 제후협정에 자유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1.1일 동 협정이 전면 발효됨에 따라 농산물 및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對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1981.2월 체결, 1998.1.1일 발효됨.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외 GAFTA 17개국산 모든 제품의 관세를 6년 동안(1998~2003) 1년에 10%씩, 2004년과 2005년에는 20%씩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2005.1.1일부터 무관세 적용됨.
-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2월 체결,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관세이며 농식품 및 수산물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됨. 서비스, 투자, 공공시장 분야에서는 직접 투자관련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보장됨.



- 지중해아랍국자유무역협정(Agadir협정): 2004.2.28일 체결, 2006.7.6일 발효됨. 튀니지와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간의 협정으로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 외 모든 수입제품의 관세가 철폐됨.

(2) 양자협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1.25일 체결, 2005.7월 발효됨.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산업재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7~9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됨. 농산품과 수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함.
- 이집트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2007.12.31부터 전면 발효됨.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모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1999년 발효됨. 2008.1.1일부터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그 외 알제리(1981), 쿠웨이트(1988), 요르단(1998), 리비아(2001), 이라크(2001), 시리아(2003) 등과의 양자 간 경제협정으로 타국가산 상품에 비해 특혜관세가 적용됨.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에서는 통관 시 일상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기술검사(control technique)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실행 중인 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체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이다. 동 해당 품목은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기술검사와 관련된 제품목록은 2005.9월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법에 의하면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거친 1차 원료와 반제품에 대한 기술검사는 제외되었고 일상 소비

재의 기술검사는 다소 완화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체계적인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 개의 관세 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검사는 3일 이상 초과할 수 없음. 주로 농산물 가공제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며 농업 환경부, 산업기술부, 통상관광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주로 의류, 식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으로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주로 농·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체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튀니지에서는 2001년 자동관세시스템(SINDA)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술검사와 서류 및 제품 검토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통관절차의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통관 소요시간이 항구/공항 도착일로부터 유통까지 7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3일에서 7일정도 소요된다.

※ SINDA(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

수입신고, 대외무역 증서, 물품목록(manifeste), 기술검사, 보건, 식물병충해 방제, 세액특권신고(demande de privilege fiscal) 과정을 통합한 자동관세시스템이며 세관에 도착한 제품들은 SINDA에 의해 아래와 같이 자동 분류됨.

- couloir vert: 위험성 없는 상품(약식의 문서 확인)
- couloir orange: 일반적인 위험성 있는 상품(보통검사)
- couloir rouge: 극도의 위험성 있는 상품(전체검사)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가공을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와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트와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산 가치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EU, EFTA,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PAN-EURO-MED 모델에 따른다.

수입규제

1994년부터 튀니지는 수입 수량제한 품목 및 통제 대상 품목 수를 감축해 왔으며 현재 전체 품목의 97%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다.

수입보호조치(1998.12월 제정)는 일시적이며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및 정부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동 조치는 통상관광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 제품이 신청된 뒤 통상관광부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의 형태를 띠며 일시적 조치를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2013.12.20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마약, 모조품, 헌옷, 야자수, 공격/위협건, 미풍양속/보건/공공안

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외에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 계약서를 공인증개자를 통해 통상관광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가결정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허가는 12개월간 유효하다. 단, 민감 품목은 2~10개월간 유효하다.

한편, 농산물, 자동차, 섬유제품 등 전체 수입의 약 3%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면장(Import license)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면장에 필요한 서류로는 무역 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상품, 원산지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면장은 통상관광부의 수입 결정 이후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는 불가능하다.

2004.8월에는 수입보호조치법과 관련하여 수입 사전감시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이는 철물, 인쇄용지, 수송기계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면장을 첨부한 ‘정보카드’를 통상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국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측정되어 튀니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상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조사는 18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일시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조사 착수 60일 전 부과되며 조사 후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수출업자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을 수정, 재검토 하고 통상관광부가 덤핑의 유효효과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철폐되며 관련 조사도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이나 상계관세로 인정되었을 경우 덤핑이나 다른 보조금이 지속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간 지속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튀니지 정부는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튀니지의 유일한 표준 담당 기관은 1982년 설립된 산업·에너지·중소기업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록하고 공포한다.

표준 분야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sation)
- 아랍공업개발·광산기구(AIDMO:Organisation Arabe de Développement Industriel et des Mines)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i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전자기술위원회(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공업

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 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표준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국제표준화 절차는 표준안 제안, 서류 작성, 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의견조회, 승인, 발표순이며 반론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며 표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제시된 일반 표준프로그램에서 튀니지표준 초안을 작성, 튀니지표준기술위원회(총 128개)의 심사를 거치고 MUWASSAFAT 연구소의 정기관보에 튀니지표준으로 발표된다. 이어, 2개월의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투표 과정을 거치며 결과에 따라 튀니지표준으로 등록되지만 반론이 제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튀니지표준 기술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2013.3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6,288개로 경제 전 분야에 해당되며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농·식료품: 10%
- 화학: 18%
- 전자기술: 13%
- 환경: 1%
- 공업(건축자재, 도자기 및 유리 제조): 17%



- 기계: 20%
- 보건·의학: 7%
- 안전: 3%
- 정보기술: 6%
- 계량: 2%
- 기타: 3%

검사 및 인증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는 수입 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2005년 수입품목 기술검증법 개정 이전 기술검증이 필요한 수입 품목은 절반이상이 1차 원료나 재수출품목이었으나 동 기술검증법의 개정 이후에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품목으로 검증대상의 폭을 감소하고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1차 원료는 기술검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철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 개의 관세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주로 농경재, 화장품, 가전제품 등임. 농업환경부, 산업기술부, 통상관광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주로 농·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료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 방사능전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조제,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업학기사, 화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é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 방지기금”에 적립된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정책

튀니지 정부의 보조금 수혜제도는 투자촉진법(CII: Code des Incitations aux Investissements)에서 정의하는 네 개의 기업형태(‘완전수출기업’, ‘부분수출기업’, ‘상주기업’, ‘비상주기업’)를 기본으로 하며, 가장

큰 보조금 수혜자는 ‘완전수출기업’이면서 ‘비상주기업’인 경우로 기업 형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완전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익이 기업 총 수익의 70% 이상인 경우이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구분
- ‘비상주기업’(해외 지·상사)은 기업이 환전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지분의 66%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환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 기업의 수출수익은 본국송환이 불가

튀니지 투자촉진법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단지(Parc d'activités économiques) 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완전 및 부분 수출기업)은 세무, 재정, 관세상의 혜택을 받으며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는 수출 관련 특별혜택이 있다.

- 완전수출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과세기준에서 수출에 대한 소득 및 수익의 공제(첫 10년간은 전액, 이후는 10%)가 있으며 기업의 기존 지분이나 지분 증액에 재투자된 수익 및 소득 또한 감세의 대상이 됨.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의해 2014년부터는 완전수출기업에게도 10% 과세 부과 적용
- 완전수출기업의 경우, 생산에 필요하나 현지시장에서의 조달이 불가능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음.
- 완전수출기업은 총 수익액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시장 판매·제공이 가능

튀니지 정부는 수출장려 차원에서 수출장려기금(FOPRODEX, Fonds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으로 농업상품 수출 시 상여금(해운 및 항공료 지원) 보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동 수출장려기금은 튀니지수출진흥청(CEPEX)에서 관리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의 4대 개별협정 중의 하나인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단, 1995년 체결한 유럽연합과의 제후협약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조달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공공구매자(정부, 지역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의 계약체결(계약서 서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화·용역, 공사, 감리 분야(5만디나 이상의 주문)
- 컴퓨터 및 통신 분야(4만디나 이상의 구매)
- 기타 분야(3만디나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
- 감리 서비스(1만5천디나 이상)

※ 단, 국영기업의 경우, 구매액수는 최대 10만디나까지 허용되며 이하 금액의 구매는 계약문서 없이도 가능하다.

튀니지에는 정부조달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즉 공공토목공사(5백만디나 이상), 재화·용역제공(2백만디나 이상), 감리(20만디나 이상), 컴퓨터장비 및 서비스(50만디나 이상) 등의 계약체결은 총리실 산하 정부조달고등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계약은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행되나 직접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입찰은 크게 공개입찰인 경우와 사전선별인 경우가 있으며 국내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출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붙여지게 된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입찰에 붙여지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자간의 공평성 및 절차의 투명성 등이 요구되나 튀니지제품 가격이 외국제품 가격 대비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국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문배분 또한 튀니지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튀니지기업과 하청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으며(‘튀니지기업과의 하청계약’ 조항 참조), 감리조달 또한 튀니지 감정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이외에도 동 분야의 아래와 같은 여러 국제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튀니지 저작권보호단체(OTPGA, Organisme Tunisien de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영화작품, 작곡, 사진, 소프트웨어 및 전통문화표현물로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이다.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후에는 무제한 재등록이 가능하다.
- 원산지 표기: 국가명 및 지방명을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가공식품(동·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 특허: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된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특허상품 내지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매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에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 보호 법령 정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장벽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 정부가 현재까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아직까지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없으며, 튀니지의 서비스업 분야에는 외국인직접자본투자에 대한 장벽이 상당히 존재하는 바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 지연 외에도 한정된 기업들의 지역시장 점유로 인해 소비자나 생산성 제고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유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8월 유통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 활동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의 수준 향상 및 동 분야 종사자들 간의 균형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신규 유통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이즈’ 및 ‘구매센터’ 분야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다.

튀니지의 서비스업 전면 대응책, 일명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기업자본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완전 수출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의 직원 고용이 네 명까지 가능하다.



관광산업

튀니지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통상관광부와 관광청(ONTT: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개인, 법인, 튀니지인, 외국인에 상관없이 숙박, 오락, 관광운송, 온천관광, 학술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숙박 및 오락 관리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행사 지분 획득을 위해서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장려지대(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gional) 내에서 시행되는 관광프로젝트는 수입세 100% 면제(10년간) 및 50% 삭감(11년째부터 10년간), 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 면제(5년)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광산 재전환 지대에서의 투자는 프로젝트 총 투자액(단 부지가격은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관광청의 건의와 통상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투자자에게 지불된다. 기타 지역개발 장려지대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혜택을 받는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세 10%(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형 차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있다. 현지 제작 대·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로젝트 창안의 경우)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통신산업

튀니지의 주요 통신서비스(유선전화, 텔렉스, 인공위성 및 임차전신)는 국영기업인 Tunisie Telecom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신서비스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산업기술부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Tunisie Telecom에서 모든 통신서비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튀니지 제2무선통신서비스 민간 사업자인 Tunisiana는 쿠웨이트와 이

집트 민간합작회사인 Orascom Telecom Tunisia의 자회사로 2002.5월 튀니지 무선통신 분야에 진출하였다.

유·무선통신 및 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튀니지 정부는 2009.6월 France telecom-Orange가 튀니지의 제2유선 및 제3무선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2.3월 Tunisiana를 제3 유선 및 3G 모바일통신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4.6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는 13,304,500명으로 보급률이 120.8%에 이르고 있으며, 3개 무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간 점유율은 대체로 Tunisiana, Tunisie Telecom, Orange가 각각 52.9%, 34.6%, 12.5%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은 51.7 %로 사용자수는 5.6백만 명이다. 인터넷서비스는 12개의 공급회사(7개 국영기업, 5개 민간기업)가 분담하고 있으며 규제가 엄격하다. 튀니지의 모든 인터넷통신은 Tunisie Telecom에서 임대하는 전신을 통해야 하며 관할은 국영기업인 튀니지 인터넷 관리청(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에서 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보인 분야는 외국계열사들의 콜센터 운영이다.

우편서비스

국가독점사업으로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sienne)에서 우편물수거, 운송 및 국·내외 발송을 담당(44%)한다. 이외에도 금융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이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요 기관이



기도 하다.

운송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운송정책, 특히 해운 및 육상운송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관련 중요한 개편을 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 운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정책은 인프라개발,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공해·저소비형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부는 산업기술부와 협력하고 있다.

(1) 해운서비스

해운은 튀니지 국제무역(96%)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럽(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과의 무역에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컨테이너 이용가격 절감,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설 등을 통하여 경쟁력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0~90%는 외국선박이 담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 해운공사(CTN: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는 7개의 민간선박회사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벌크 운송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연안항해 분야는 아직 튀니지 해운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에는 현재 7개의 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항과 건설 진행중인 Enfidha 심해항)이 있으며 연간 물류 이동량은 2천8백만 톤 이상이다.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

(OMMP: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이후 육로를 통한 물류수송 분야는 전면 개방되었으며 민간기업 경쟁(대다수는 튀니지 기업)도 활성화된 추세이다. 단, 외국인회사가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운전수와 기타 고용인은 튀니지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시장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속버스 운행) 관련 튀니지정부의 독점율은 상당히 큰 편이다. 고속도로 운영의 경우, 도로인프라 개발에 국가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2016년까지 1,200km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진행 중인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Tunis-Sfax 구간을 Gabès까지 확장(155km, 8.17억 디나 예산) 하고, 향후 2016년까지 추진될 주요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Oued Zarga-Boussalem 구간, Gabès-Médenine 구간, Médenine-RasJedir 구간, Enfidha-Kairouan-Sidi Bouzid-Kasserine-Gafsa 구간 등이며 Hammamet-Enfidha 구간은 확장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 1,220km 도로 개보수공사, 760km의 농업지대 전용 도로망 구축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철도운영의 경우, 2개의 국영기업인 튀니지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와 튀니스운송회사(STT: Société de Transport de Tunis)에서 각각 전국(일반 철도이용자 및 물류수송 포함) 및 수도권 운영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튀니지 고속철도망(RFR: Réseau Ferroviaire Rapide) 구축사업(총 투자 규모 30억 디나)을 위해 Société Tunisienne du Réseau Ferroviaire Rapide가 설립되어 동 철도망의 제1구간(Tunis- Manouba, Tunis-Ezzouhour 연결) 공사에 착공(2009.12.10일)하였고, 점차 D선(Tunis Barcelone-Gobâa연결) 11.3km, E선(Saida Manoubia-Cité Bougatfa 연결) 6.3km와 남북중단노선(Bir El Kassa-



Bourjel연결) 115.5km를 구축하여 Tunis교외선을 확장할 예정이며, Sfax에 전철 및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검토 중이다.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3월부터는 Radès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도시 운송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튀니지 철도운송정책의 우선과제는 다용도운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철도망의 전동화 및 품질개선, 수도권내 고속철도망 확장(교통체증 완화, 도로안전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적) 등이며 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9.12 EU와 Don de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FIV)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TIR: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관련, 튀니지는 서명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자 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상호간에 통관 및 과세면제 또한 시행하고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튀니지인은 소수이며 물류 수송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튀니지회사의 참여가 적은 주요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한 비자취득이 어렵고 유럽표준에 적합한 운송자재가 적으며 실제 국제 육상운송업자들의 활동영역은 자국 내에서의 외국 세미트레일러 견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 운송시장 점유율 증가 및 국제육상운송투자 개발을 위해 튀니지정부는 국제 육상운송용 차량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수입량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항공서비스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소득이 GDP의 2%를 차지하며 1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민간항공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정부는 국내운항 및 화물선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튀니지에는 Tunis-Carthage, Tabarka, Enfidha, Monastir, Sfax, Djerba, Tozeur, Gafsa, Gabes 등 9개의 국제공항이 있다. 2009년 말부터는 Enfidha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이 문을 열었다. Tuni-

siair는 튀니지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55개국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Tunisiair의 자회사인 Tunisiair Express(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태리 남부, 트리폴리, 말타 운항)을 담당하며 Karthago Airlines(유럽-튀니지 및 Djerba 운항)이나 Nouvelair Tunisie(패키지 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았다.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리 회사(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유럽으로 활발한 전문서비스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는 STUDI 그룹과 SCET-TUNISIE 그룹 등이다.

투자장벽

2013년 튀니지에서 외국투자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 관광업 순이며 활동중인 외국기업은 3,162개(333,949명 고용)이며, 이중 완전 외국기업은 1,584개(183,380명 고용), 합작투자 기업은 1,578개(150,569명 고용)이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실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자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의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승인 없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투자자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등의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투자는 기업지분의 66%까지 허용된다.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은 기업 지분의 50% 미만은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도 튀니지 기업의 유가증권 획득이 가능하지만 50% 이상인 경우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관련사항은 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반 제조업, 식물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자본투자가 기업지분의 50%를 초과할 경우 고등투자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 내 투자자에게는 통신, 우편, 도·소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

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는 투자수익의 35%내의 재투자 면세, 튀니지 비생산 기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및 튀니지 비생산 투자 필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임.
- 특별 인센티브는 완전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 내 기업(농업 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완전수출기업: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제품 운송장비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면세, 세금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지 현지시장 판매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조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본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디나까지), 15%(60만디나까지), 25%(100만디나까지)의 보조금(premium)지급
 - 농업개발: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자액의 7%의 보조금 지급, 기후약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 등에 관련, 다단계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 시간)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52개 OECD 회원국들과 ‘투자보호 및 이종과세의 방지 협약’



에 비준하였고, 세계 54개 국가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 간 협약’에 비준하였다.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2012.5월)에 가입하였다.

수출진흥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지역·세대·계층 간의 공정 분배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책이다. 민간자본투자 장려책(민영화, 양도, 기업창설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발은 국가 우선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요 관련분야는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나 이외에도 안전성과 자급자족량 생산을 도모하는 농업정책, 자국민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업 정책도 수출전략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자본의 튀니지 국유 농경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임대로만 가능하며 구매가 불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0년까지이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본국송환 금지 및 튀니지은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튀니지에서는 법률상 모든 재화·용역의 가격을 자유경쟁에 의해 정하고 있으나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 독점운 영서비스업,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크게 3등급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 A등급 :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변동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부류이다.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및 커피 ; 종이, 교과서 및 학습지 ; 휘발유, GPL ; 전지, 가스, 수도물 ; 교통이용료 ; 의약품 및 진료 ; 우편 및 통신 이용료 ; 담배, 성냥, 주류 ; 향만이용료) 등이 해당된다.
- B등급 :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으로 주로 소금, 베이킹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반, 압력가스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들이 포함된다.
- C등급 : 생산원가에 정부가 지정한 이윤을 첨부한 가격을 기업이 유통과정에서 적용하는 등급으로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계란, 제분품 및 버터, 토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럭, 버스, 견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이 포함된다.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자유경쟁 및 정당한 상업활동의 방안으로 가격표통보의 의무 및 손해판매·판매거부·최저가강요·차별대우·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사, 비밀거래 등)의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독점 분야가 많은 이유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식품산업, 화학, 장비 및 주거,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비스업(전기, 수도물,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관리, 항공운항 통제, 향만, 우편서비스)등이며 성냥, 담배, 놀이카드, 화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한다.

국가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점 수입하며 옥수수과 사료용 대두는 민간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 튀니지상업청(OCT: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설탕의 독점 수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점수입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의 1차 식료품에는 도매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석유공사(ETAP: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Pétrolières):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석유제품(GPL: Gasoil 등)을 독점 수입하며 튀니지정유산업회사(STIR: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를 수출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주류 수입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 튀니지 전기·가스회사(STEG: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Transport Urbain de Tunis): 수

도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우편·금융서비스 관련 국가에서 독점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민영화 정책

튀니지 정부가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2010년 말까지 민간 기업으로 전환된 국영기업은 219개이다. 기업의 생산수단과 관리절차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과급효과를 얻지 못했다. 24년간의 민영화정책으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디나이며 민영화의 90%는 외국자본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219개 기업 중 완전히 민간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116개(53%)이며 41개(19%)는 파산대상 기업이고 나머지는 부분매각 및 양도조건으로 민영화 되었다.

분야별 민영화 분포는 서비스업(53,9%), 공업(37,8%), 농·수산업(8,3%)로 나뉘며 수익금 분포는 서비스업(84,5%, 약 50억디나), 공업(17,6%, 10억디나), 농업(4천백만디나) 순이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1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 중 튀니지 교통부에 한국면허증을 보관하고 튀니지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튀니지에서는 행정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튀니지 거주 6개월 이후부터 튀니지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 시 서류와 함께 수속비로 11디나를 지불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발급기관 주소는 다음과 같다.



Agence Technique pour la Transport Terrestre(ATTT)
Avenue du Japon -6 impasse n°1
Montplaisir El Borgel
1073 Tunis

금융시장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보험업계를 제외한 튀니지의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튀니지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1개의 상업은행, 2개의 기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8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외국은행 지사,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2개의 투자은행(Banques d'affaires)과 튀니지 채신청과 같은 재정관련 기관이 13개 있다.

이외에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투자 보호를 관할하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증권 보상·예치전문회사(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ô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튀니지에는 21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가 있는바, 이중 전문 보험회사로는 Hayett, Maghreb Vie, Amina(생명보험), Assucredit(대출보험), Cotunace(수출대출보험), MAE(교육보험) 등이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의 새로운 보험법으로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제도가 폐지되었고 튀니지 보험위원회(Conseil des Assurances)에 재정적 독립권

이 부여되어 중재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의 외환관리법은 튀니지 내의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에게 외환송금, 입금 및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8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은 비상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비상주 기업에도 적용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종류로는 튀니지법에서 정의하는 주식회사, 해외에 본사를 두고 거래영역이 비상주 기업에 국한 된다는 것을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승인한 기업 등이며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 은행과 상주 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주 기업이 비상주 은행을 통해 외국 자본을 차용할 시 외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차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연간 천만 디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예치도 총 예치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신용저당서비스 또한 허용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승인가준(외국투자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자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